

# 창조경제 선도지역 조성 기본계획

최종보고서

2015. 4





---

# 제출문

---

경상북도지사 귀하

이 보고서를 경상북도에서 우리 연구원에 의뢰한 「창조경제 선도지역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 4

대구경북연구원장 김 준 한





# 연구진

---

## 연구책임자

김병태 대구경북연구원 창조산업실 연구위원

## 참여연구원

나중규 대구경북연구원 창조산업실 연구위원

류형철 대구경북연구원 상생협력실 연구위원

박현정 대구경북연구원 창조경제실 책임연구원

## 자문위원

박성진 포항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



---

# Contents

## 목 차

---

###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3
1. 연구배경 .....	3
2. 연구목적 .....	4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5
1. 연구범위 .....	5
2. 연구방법 .....	5

### 제2장 창조경제 선도지역 개념 및 필요성

제1절 창조경제 선도지역 개념 .....	9
1. 창조경제 .....	9
2. 창조경제 생태계 .....	10
3. 창조경제 선도지역 .....	13
제2절 창조경제 선도지역 조성 필요성 .....	15
1. 국가적 차원 .....	15
2. 지역적 차원 .....	16

### 제3장 창조경제선도지역특별법 검토

제1절 제정배경 및 추진경과 .....	21
1. 특별법 제정배경 .....	21
2. 특별법 제정 추진경과 .....	22
3. 의원 입법 절차 .....	23

<b>제2절 특별법 주요내용</b> .....	<b>25</b>
1. 법안구성 및 주요용어 .....	25
2. 법안 주요내용 .....	27
3. 특별법 비용추계 .....	28
<b>제3절 관계기관 검토의견 분석</b> .....	<b>31</b>
1. 관계 부처 검토의견 .....	31
2.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검토보고서 .....	34
3. 공청회 의견 .....	37

## 제4장 APGC 현황 및 설문결과

<b>제1절 APGC 현황</b> .....	<b>43</b>
1. APGC 개요 .....	43
2. APGC 주요 활동 및 추진 계획 .....	46
<b>제2절 APGC 설문결과</b> .....	<b>48</b>
1. 설문조사 개요 .....	48
2. 설문결과 .....	48
3. 설문조사 결과 종합 .....	55

## 제5장 지역여건 및 잠재력 분석

<b>제1절 연구기반</b> .....	<b>59</b>
1. 국가연구개발비 현황 .....	59
2. 연구개발 인프라 .....	61
3. 연구 역량 .....	69
<b>제2절 산업 기반</b> .....	<b>75</b>
1. 일반 현황 .....	75
2. 산업 현황 .....	76
3. 산업 발전방향 .....	80
<b>제3절 정주여건 및 광역교통 인프라</b> .....	<b>82</b>
1. 정주여건 .....	82
2. 광역교통 인프라 .....	88

## 제6장 유사사례 및 차별성 검토

<b>제1절 국내외 유사사례</b> .....	<b>93</b>
1. 연구개발특구 .....	93
2. 창조경제혁신센터 .....	97
3. 미국 실리콘밸리 .....	99
<b>제2절 유사제도와 차별성</b> .....	<b>103</b>
1. 핵심 성과와 투입·산출·과정 측면 .....	103
2. 지정공간과 기대효과 측면 .....	104
3. 추진주체 측면 .....	105
<b>제3절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협력</b> .....	<b>106</b>

## 제7장 기본 구상 및 주요사업

<b>제1절 기본 방향 및 비전</b> .....	<b>111</b>
1. 기본 방향 .....	111
2. 비전 및 전략 .....	112
<b>제2절 전략별 사업 도출</b> .....	<b>114</b>
1. 창조인재 및 벤처창업 활성화 .....	115
2. R&D 창조역량 강화 .....	120
3. 창조경제 기반 창조기업 육성 .....	126
4. 창조생태계 구축 .....	133
<b>참고문헌</b> .....	<b>141</b>
<b>부 록</b> .....	<b>143</b>
1. 창조경제 선도지역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145
2. 창조경제 선도지역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	167
2. 창조경제 선도지역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서 .....	171
4. APGC 설문조사표 .....	187

---

# Contents

## 표 목 차

---

<표 3-1> 연구개발특구육성 사업 예산(2010 ~ 2014년) .....	30
<표 3-2> 1개 선도지역에 대한 정부 예산 추정액 .....	30
<표 4-1> APGC 회원사 주요 품목 및 기술 .....	44
<표 5-1> 경북 및 포항의 국가연구개발비 현황 .....	59
<표 5-2> 포항 전체 산업별 현황 .....	77
<표 5-3> 포항 대·중소기업 현황 .....	78
<표 5-4> 포항 업종별 기업 현황 .....	78
<표 5-5> 포항 R&D기관 창업보육 현황 .....	78
<표 5-6> 포항 산업단지 조성 현황(완료 단지) .....	79
<표 5-7> 포항 산업단지 조성 현황(추진중 단지) .....	80
<표 5-8> 포항 주거여건 관련 주요 지표 비교 .....	83
<표 5-9> 포항 교통여건 관련 주요 지표 비교 .....	84
<표 5-10> 포항 의료여건 관련 주요 지표 비교 .....	85
<표 5-11> 포항 교육여건 관련 주요 지표 비교 .....	86
<표 5-12> 포항 문화시설 및 사회보장 여건 관련 주요 지표 비교(1) .....	87
<표 5-13> 포항 문화시설 및 사회보장 여건 관련 주요 지표 비교(2) .....	88
<표 6-1> 연구개발특구 현황 .....	95
<표 6-2> 창조경제혁신센터-대기업간 연계 현황 .....	98
<표 6-3> 유사제도와 차별성(지정공간과 기대효과 측면) .....	105
<표 6-4> 유사제도와 차별성(추진주체 측면) .....	105
<표 7-1> 창조경제 선도지역 주요 사업 .....	114
<표 7-2> 성장단계별 경영닥터 관련 세부 사업내용(안) .....	129
<표 7-3> APGC 기업연구소 누적 유치계획(안) .....	130

---

# Contents

## 그림 목 차

---

<그림 1-1> 연구방법 .....	6
<그림 2-1> 창조경제,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 변화 .....	9
<그림 2-2> 창조경제 개념 .....	10
<그림 2-3> 창조경제 생태계 구축 .....	12
<그림 2-4> 창조경제 선도지역 개념 .....	13
<그림 2-5> 기술주도형 강소기업 육성 생태계 조성(국가적 차원) .....	15
<그림 2-6> 기술주도형 강소기업 육성 생태계 조성(지역적 차원) .....	17
<그림 3-1> 의원 입법 절차 .....	23
<그림 3-2> 창조경제 선도지역육성 종합계획 수립 절차 .....	26
<그림 4-1> 상근 직원수 및 연구개발인력 .....	49
<그림 4-2> 연구개발 파트너별 기술사업화 건수 .....	50
<그림 4-3> 타 기관과의 협력 활동 현황 .....	51
<그림 4-4> 타 기관과의 협력 활동 의사 및 희망 활동 유형 .....	52
<그림 4-5> 창조경제 선도지역 지정시 도움 정도 .....	52
<그림 4-6> 창조경제 선도지역으로 발전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 .....	53
<그림 4-7> 기술주도형 강소기업이 보유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 .....	53
<그림 4-8> 창조경제 선도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 .....	54
<그림 4-9> 경영상 애로사항 .....	55
<그림 5-1> 주요 도시 국가연구개발비 현황 .....	61
<그림 5-2> 포항의 연구개발 인프라 .....	61
<그림 5-3> 지역별 발표논문수 및 1편당 피인용횟수 .....	69
<그림 5-4> 지역별 특허출원 건수 및 비중 .....	70
<그림 5-5> 지역별 네트워크부문 및 성과부문 지수 .....	72
<그림 5-6> 지역별 연구개발인력 및 연구원 수 .....	73
<그림 5-7> R&D의 생산유발효과 .....	74
<그림 5-8> 포항시 산업구조 및 제조업 현황 .....	76

<그림 5-9> 포항시 제조업체 및 종사자수 현황 .....	78
<그림 5-10> 통계청 포항시민 사회조사 결과(2013) .....	82
<그림 5-11> 포항시 광역교통 인프라 현황 .....	90
<그림 6-1> 연구개발특구육성 기본방향 .....	94
<그림 6-2> 연구개발특구사업 체계 .....	96
<그림 6-3> 창조경제혁신센터 역할과 기능 .....	97
<그림 6-4>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대기업과의 연계 방안 .....	99
<그림 6-5> 실리콘 벨리 창업환경 .....	101
<그림 6-6> 유사제도와 차별성(핵심 성과와 투입·산출·과정 측면) .....	103
<그림 6-7>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협력(1) .....	106
<그림 6-8>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협력(2) .....	107
<그림 7-1> 창조경제 선도지역 개념도 .....	112
<그림 7-2> 창조경제 선도지역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	113
<그림 7-3> 강소기업 R&BD 네트워크 현황 .....	116
<그림 7-4> 가속기 연관 R&D 비즈니스단지 운영 모형 .....	123

# 제1장

## 연구 개요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제1장 연구개요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1. 연구배경

-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실천전략 뒷받침
  - 창의적 인재 양성,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만으로도 도전이 가능한 건강한 창업 생태계 구축
  - 기존산업의 강화와 대체산업의 발굴·육성을 통해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패러다임 확산
  - 기술혁신이 가능한 지역 강소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지역 차원에서 스스로 강소기업 육성 생태계 조성
  - 2013년 11월 포스코, 포항상공회의소, APGC(Association of POSTECH Grown Companies: POSTECH 동문기업 협의체), 포스텍, 이병석 국회의원, 경상북도, 포항시 7개 기관이 강소기업 육성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서 체결
  - 포항을 중심으로 한 환동해권에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강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창업·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
  - 창조경제의 지역 선도모델을 구현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
- 2014년 5월 「창조경제 선도지역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함) 이병석 의원 입법 발의
  - 법률 제정에 앞서 선도 지역 지정 신청을 위한 선제적 대응 필요
  - 2014년 11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특별법안 소위 상정
- 포항지역의 첨단 과학연구 역량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산업과 융합을 통해 창조적 연구개발 거점을 실현할 창조경제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포항지역의 창조경제 선도지역 지정의 당위성 및 타당성을 제시하고, 지역의 우

- 수한 R&D 성과를 사업화로 연계할 수 있는 창조생태계 구축 방안 마련
- 창조경제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국내외 학계, 중앙부처 관계자, 국회 및 대국민 대상 설득을 통한 기본 논리 마련
  - 국회 입법과정, 미래창조과학부 입법 대응과정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 2. 연구목적

- 특별법 제정에 앞서 창조경제 선도지역 지정 대응전략 조기 마련
  - 특별법에 명시된 지정요건을 고려한 지역의 여건 및 잠재력 분석
  - 창조경제 선도지역 조성 방향 제시
- 국회 법률 검토과정에서 지자체(안)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 지역의 강점 및 잠재력 중심으로 객관적 지표 분석
  - 관계 중앙부처 법률 검토의견 작성시 활용
- 정부가 추진 중인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점지구 및 선도 모델 정립
  -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기술주도형 강소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선도 모델 마련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1. 연구범위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14년
  - 목표연도 : 2015년
- 공간적 범위
  - 경상북도 포항시 일원 등
- 내용적 범위
  - 창조경제 선도지역 개념 및 필요성 검토
  - 특별법 검토 및 관계기관 검토의견 분석
  - APGC 현황 및 설문결과
  - 지역 여건 및 잠재력 분석
  - 유사사례 및 차별성 검토
  - 기본구상 및 주요사업 제시

### 2. 연구방법

- 특별법 검토 및 관계기관 검토의견 분석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국회 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관계 부처 특별법 검토의견
- 지역여건 및 잠재력 분석
  - NTIS<sup>1)</sup>, 한국은행 등 통계자료, 문헌조사
- 유사사례 및 차별성 검토
  - 문헌조사, 해외출장
- 기본구상 및 주요사업 제시

1)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www.ntis.go.kr](http://www.ntis.go.kr)

- APGC 대상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 입법과정 모니터링 및 대응
  - 중앙부처 및 국회 의원실 관계자 대상 방문



<그림 1-1> 연구방법

# 제2장

## 창조경제 선도지역 개념 및

제1절 창조경제 선도지역 개념

제2절 창조경제 선도지역 조성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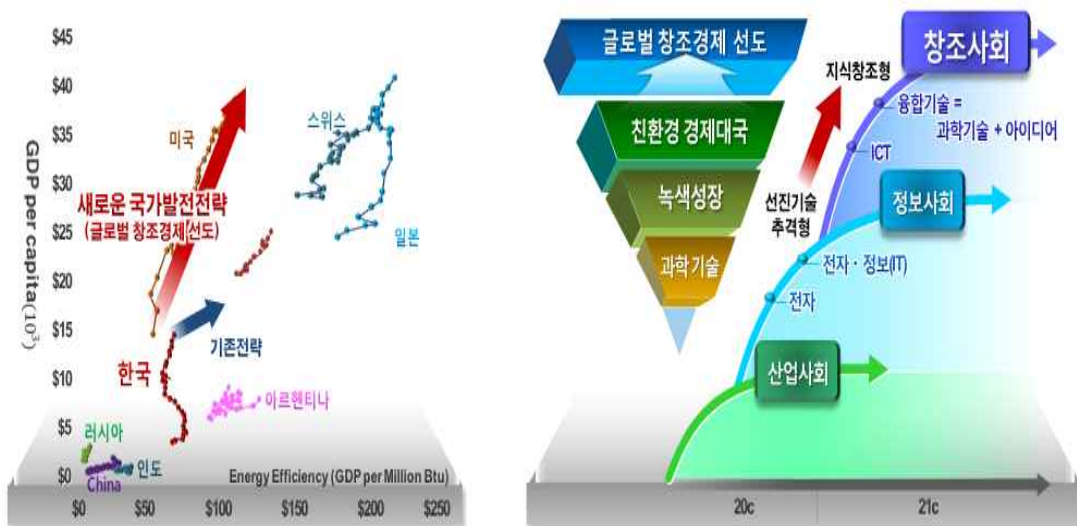


# 제2장 창조경제 선도지역 개념 및 필요성

## 제1절 창조경제 선도지역 개념

### 1. 창조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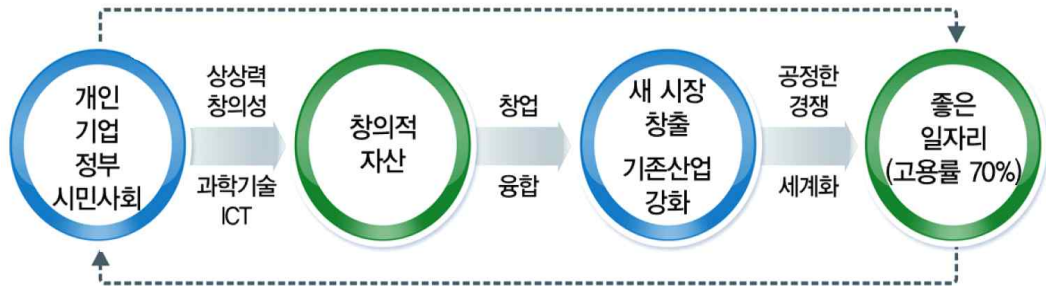
- 세계는 산업화시대, 정보화시대, 지식기반경제를 잇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서 창조경제(Creative Economy) 부상
  - 세계경제침체 극복을 위한 신성장동력 창출과 일자리문제 해소를 위한 새로운 경제체제 모색
  - 주요국 과학기술 경쟁 심화와 자국 기술 보호 정책 강화 등에 따른 새로운 성장동력 모색



<그림 2-1> 창조경제,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 변화

-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 상상력과 창의력에 기반을 둔 경제운영으로 새로운 시장,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 사람들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ICT에 접목하여 신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산업을 강화함으로써 일자리를 만들고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 창의성, 과학기술, 정보통신(IT)를 기반으로 경제를 운용하여, 기존산업 고부가가치화, 신성장동력·신시장 및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장패러다임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2013), 업무보고자료

<그림 2-2> 창조경제 개념

○ 특별법상 정의

-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가치로 두고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과 융합하여 신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산업을 강화
-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 및 국가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경제체제

## 2. 창조경제 생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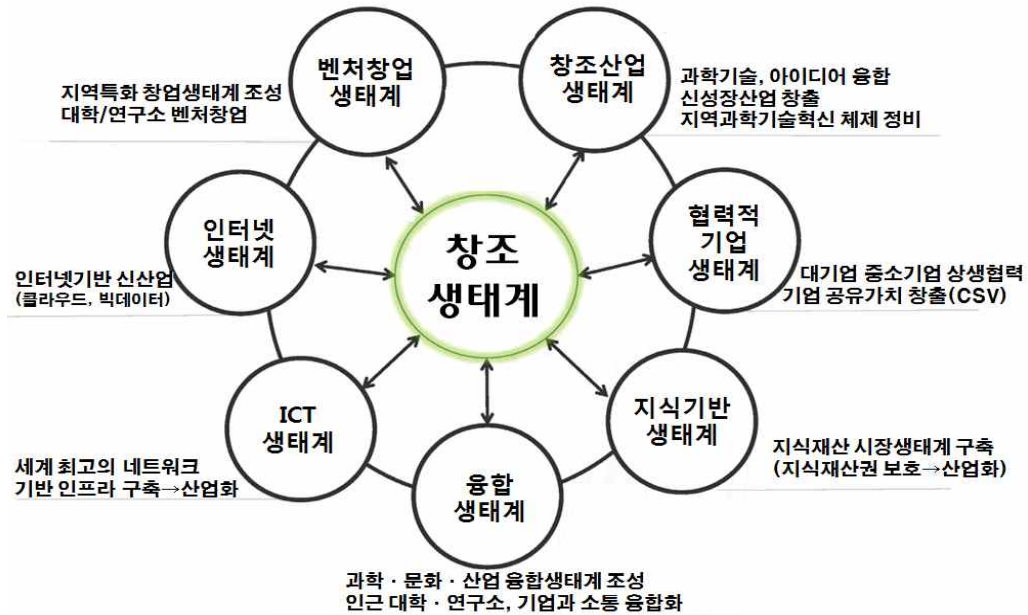
### ■ 창조경제 생태계

- 창조 생태계<sup>2)</sup>란 창조산업, 창조인력, 창조도시 등 창조 경제 패러다임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
  -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스템적인 수용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는 틈새분야를 의미, 새로운 아이디어를 인정해 주는 것이 주요 특징(Howkins)
  - 경계가 분명하여 하나의 산업분야에만 집중하던 과거 산업구조와는 달리, 최근 IT융합 중심 창조산업의 경우 여러 산업간 밸류체인을 연계한 비즈니스 생태계 특징을 가짐
- 창조산업이란 창의성과 지적 자산을 투입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제작, 생산, 유통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며, 창조기업 활성화를 통해 창조클러스터

2) 생태계는 식물생태학자인 탄슬리(A.G. Tansley)에 의해 제시된 개념으로 특정 자연환경과 그 속에서 생존·번식·진화하는 유기체(organism)와의 관계를 의미함

## 구축 지향

- 창조기업이란 자신만의 창조성, 기술 및 재능을 기반으로 신시장을 개척함으로써 경제적 가치와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기업을 의미
- 창조 클러스터란 창조산업 관련 기업체, 인재,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집적하여 R&D, 상품화, 판매·유통에 이르는 전 산업의 밸류체인 포괄하는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 극대화
- 창조인력은 과학, 산업, 기술, 건축, 디자인, 교육, 예술, 음악, 엔터테인먼트 등에 전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으로서 새로운 아이디어, 기술, 콘텐츠를 창출하는 기능을 담당
  - 창조적 업무 종사자로 신상품과 소비재 개발 능력을 지닌 집단(Super Creative Core)과 복잡한 지식체계에 의존하여 특정문제를 해결하는 창조적 문제해결집단(Creative Professionals)로 구분
  - 전자는 과학자와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교수, 시인, 소설가, 예술가, 연예인, 배우, 디자이너, 건축가 등이며, 후자는 관리, 경영, 회계직, 법률직, 금융직, 전문의와 보건의료직, 하이테크 업종 등 광범위한 지식집약형 산업 종사자 등을 포함
- 박근혜정부는 R&D-산업-인재양성에 기반한 창조생태계 조성
  - R&D, 산업, 인재양성 등 산업구조와 연구역량에 따른 특성화된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하되 기존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추진
  - 과기특성화대학 등 대학을 중심으로 지식생태계(클러스터)를 육성하되, 지역의 역량 등에 따라 중점분야를 선정하고 맞춤형으로 지원
  - 기술인재 배출(연구조직) + 산학연 협력창구(산학협력단) + 창업인프라(대학 내)



재정리 : 차두원 외(2013), 창조경제 개념과 주요국 정책 분석, KISTEP

<그림 2-3> 창조경제 생태계 구축

## ■ 창조경제혁신센터

- 대기업 연계형 사업화기술·창업 플랫폼 구축
  - 창의적 아이디어에 새로운 기술을 융합해서 신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혁신을 이끌어 가기 위한 창조경제 전진기지
  - 창의적 인재의 활발한 창업 도전, 중소·벤처에서 중견기업을 거쳐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 제품과 서비스의 경쟁력 제고와 세계시장 개척 지원
- 대기업의 강점을 활용하여 지역내 지원기관의 미흡한 역량을 보완·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창업, 중소기업 육성 지원
  - 대기업이 지역 내 창업, 벤처기업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구체화
  - 사업모델 및 상품 개발, 판로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
  - 우수기술을 직접 매입하거나 해당 기업에 지분투자 등을 시행함으로써 전 단계에 걸쳐서 지원
- 창조경제혁신센터 주요기능
  - (창업 허브) 창업·사업화 아이디어부터 가치창출(idea to value)까지의 원스톱 플랫폼기능 구축에 역점

- (지역 혁신 거점) 각 부처의 지역센터·사업을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클러스터화 또는 연계하여 창업허브·혁신거점으로서의 기능 강화
- (협력성장의 엔진) 대기업의 강점을 활용하여 지역 내 지원기관의 미흡한 역량을 보완·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창업, 중소기업 육성 지원

### 3. 창조경제 선도지역

#### ○ 창조경제 선도지역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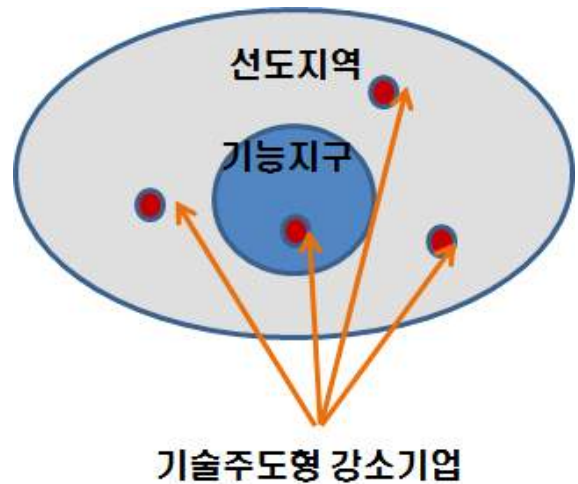
-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창조경제를 선도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지역으로서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점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법 제5조(창조경제 선도지역 지정요건)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

#### ○ 기능지구 정의

- 창조경제 선도지역 안에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 개발연구 및 사업화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법 제5조(창조경제 선도지역 지정요건)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

#### ○ 기술주도형 강소기업 정의

- 선도지역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에 기반을 두고 기술 집약도가 높은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서 특별법 제11조(기술주도형 강소기업의 지정요건)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업



<그림 2-4> 창조경제 선도지역 개념

#### ○ 창조경제 선도지역 지정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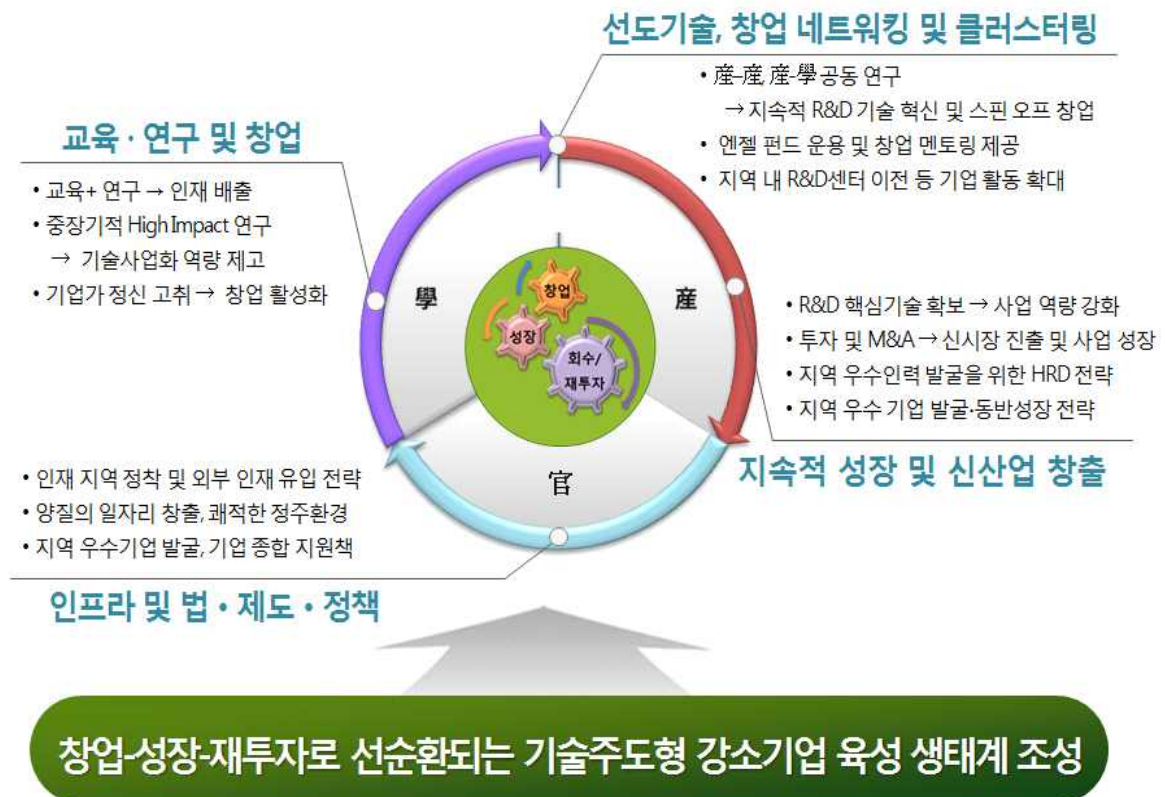
-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연구소·기업의 집적(集積)·연계되어 있을 것
-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연구소·기업이 산출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벤처기업의 창업을 하기에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
-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기반이 구축되어 활용이 가능한 지역일 것
- 창조경제를 지원할 광역교통망·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 그 밖에 글로벌 연구소의 집적 등 전문인력 확보, 지속발전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기술주도형 강소기업 지정요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분야의 국내외 특허권을 보유할 것
  - 특허권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할 것
  - 연간 총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 및 특허권에 따른 생산·판매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창조경제 선도지역에 입주하고 있을 것

## 제2절 창조경제 선도지역 조성 필요성

### 1. 국가적 차원

- 기술주도형 강소기업 육성 생태계 조성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하여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기술주도형 강소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
  - 개인, 1인 창조기업, 벤처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이 복합된 생태계를 기반으로 상생과 협력의 선순환 경제를 실천할 수 있는 창조경제 선도지역 조성 필요
- 현 정부의 국정목표인 창조경제 지역 선도모델 제시
  -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강소기업 육성 생태계를 조성
  - 한국형 창조경제의 지역 선도모델을 만들어 지역 선도를 넘어 국가 선도모델로 정착



<그림 2-5> 기술주도형 강소기업 육성 생태계 조성(국가적 차원)

- 연구중심대학의 연구개발 성과·인프라·인력과 기술주도형 중소기업이 상생·협력하여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
  - 연구중심대학 교육·연구 → 창업 → 지속적 성장 → 신산업 창출 및 글로벌화
- 창업-성장-회수/재투자로 선순환되는 기술주도형 중소기업 육성 생태계 조성
  - 산·학·연·관이 협력하여 민간 주도의 추진체계 구축
  - 국내외 우수 기술 인력의 벤처·창업 유입 촉진

## 2. 지역적 차원

- 지역의 창조경제 구현의 거점지구
  - 창의적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을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이 창출될 수 있도록 창조경제 기반을 확충하고 가시적 성과 도출
  - 지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활용하여 지역 인재의 창업활성화, 기업 경쟁력 제고, 제품·서비스의 세계시장 개척 등을 통해 지역경제 혁신을 이끌어 갈 지역 단위의 창조경제 거점지구
- 연구개발-창업 클러스터 구축 실행
  - 산·학·연 연계하여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과 창업·일자리 창출로 재투자되는 선순환되는 창조경제 생태계 구축
  - 중소기업이 기술-창업-성장(확장)에 이르기까지 대기업과 업무협약을 통해 끝까지 지원하는 지역형 창조경제 패러다임 확산
  - 교육·연구 및 창업, 기술·창업 네트워크 및 클러스터링, 사업의 지속적 성장 및 신산업 창출, 사회 간접자본 및 제도가 선순환되는 환경 구축
- 지역 인재 중심의 선순환적 생태계 조성
  - 연구개발 인프라, 지역 산업기반, 산학연 협력을 통하여 연계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모델 제시
  - 지역에 내재되어 있는 기존 자원의 효과적인 연계·활용을 통해 지역 주도로 지역 맞춤형 발전 모델 발굴



<그림 2-6> 기술주도형 강소기업 육성 생태계 조성(지역적 차원)



# 제3장

## 창조경제선도지역 특별법

제1절 제정배경 및 추진경과

제2절 특별법 주요내용

제3절 관계기관 검토의견 분석



# 제3장 창조경제선도지역특별법 검토

## 제1절 제정배경 및 추진경과

### 1. 특별법 제정배경

#### ■ 포항 강소기업 육성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

- 창조경제 지역 선도모델-포항 강소기업 육성 생태계 조성
  - 2013년 11월 국회 이병석 의원실, 경북도, 포항시, 포스코, 포항상공회의소, 포스텍, 포스텍 동문기업협의체(APGC)가 참여하는 업무 협약
  - 창조경제 지역선도모델 구축 추진체계 구성을 시작으로 연구 및 창업 시스템 구축, 종합 지원책 마련, 도시계획 및 정책수립까지 창조경제 실현 전반을 논의
- 일자리 창출 견인을 위해서 대기업 중심 성장패러다임의 변화 제시
  - 강소기업육성 생태계조성은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중소·중견기업이 견고한 국가들이 글로벌 성장을 주도
  - 창업 중소기업의 강소기업화를 통한 산업재구조화와 신산업 창출 경제성장으로 변화하고 창업 및 강소기업의 육성은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

#### ■ 특별법 제안시 입법 취지

-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개인의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를 활성화하여 경제성장률보다는 고용률을 지향하고,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을 추구
- 새로운 경제체제인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개인, 1인 창조기업, 벤처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이 복합된 생태계를 기반으로 상생과 협력의 선순환 경제를 실천할 수 있는 창조경제 선도지역을 조성하여 그 구심점 역할 필요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선도지역을 지정하고 이를 육성·지원함에 필요한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기술 및 정보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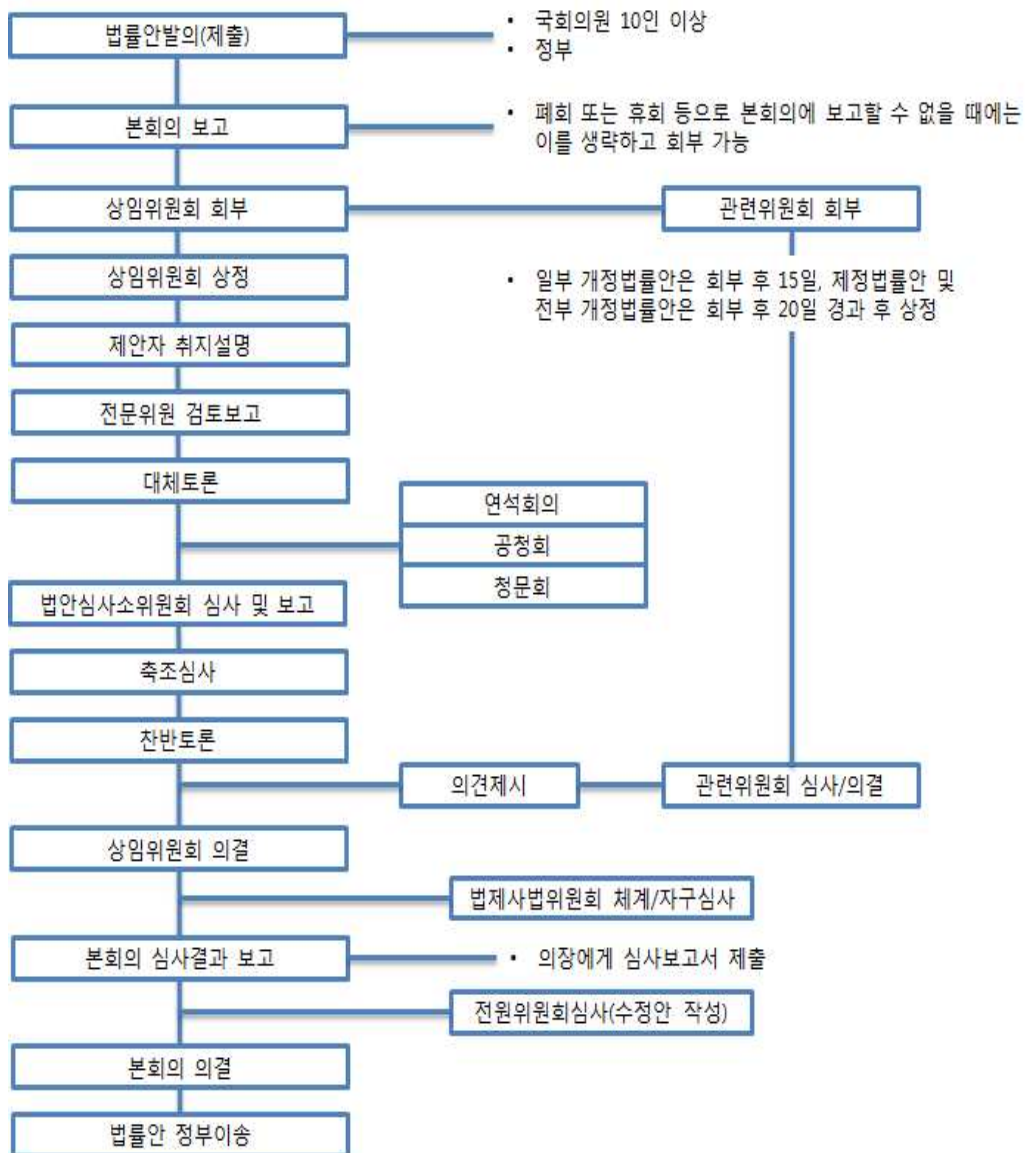
신기술을 기반으로 기술주도형 강소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 2. 특별법 제정 추진경과

- 포항 강소기업 육성 생태계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위한 TF 구성
  - 2013년 4월~10월 : 총 8회 회의 개최, 이병석 의원실·포스텍·APGC 참여
- 포항 강소기업 육성 생태계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 2013년 11월 6일 : 국회 이병석 의원실, 경북도, 포항시, 포스코, 포항상공회의소, 포스텍, APGC 업무 협약 참여
- 특별법 초안 작성
  - 2014년 4월 30일 :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진
- 특별법 발의
  - 2014년 5월 19일 : 이병석 국회의원 등 31인 발의
- 특별법 제정 심포지엄 개최
  - 2014년 6월 23일 : 미래부 국장·대구경북연구원 주제 발표
- 특별법 관계부처 의견 수렴
  - 2014년 7월 29일 : 미래부 주관, 미래부·국토부·법제처·국방부·행자부·기재부·산업부 의견 수렴
- 정책보고서 발간
  - 2014년 7월 31일 : 창조경제 선도지역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대구경북연구원)
- 특별법 제정 공청회 개최
  - 2014년 11월 19일 : 미래부·산업부 차관, 국회 미방위 위원장 등 참석, 대구경북연구원 주제 발표
- 특별법 검토보고서 작성
  - 2014년 11월 21일 : 국회 미방위 전문위원
- 특별법 미방위 법안 소위 상정

### 3. 의원 입법 절차

- 의원 개인의 입법동기, 지역구민의 법률관련 민원제기 등 문제 제기 시 법안을 기초하여 10인 이상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sup>3)</sup>
- 접수된 법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후 국회의장이 이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고, 회부된 안건은 소관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



<그림 3-1> 의원 입법 절차

3) 입법과정은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의 주체가 되는 의원입법과정과 정부가 법안제출의 주체가 되는 정부입법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음. 본 보고서는 의원 입법 발의에 한정하여 입법 절차를 기술함

- 소관위원회에 상정된 법안은 발의자의 제안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심사, 축조심사, 찬반토론 등을 거친 후 의결
-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소관 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
- 본회의는 회부된 법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보고를 듣고, 의원들의 질의·토론을 거쳐 법안에 대한 표결

## 제2절 특별법 주요내용

### 1. 법안구성 및 주요용어

#### ■ 법안 구성

- 법안 명칭
  - 창조경제 선도지역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법안 구성
  - 총 9장, 53개 조항, 부칙 2조항으로 구성
- 세부 법안 구성
  - 제1장 총칙 : 4개 조항
  - 제2장 창조경제 선도지역 및 기능지구 지정 : 5개 조항
  - 제3장 창조경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 : 7개 조항
  - 제4장 창조경제 기반 구축 및 비즈니스 환경 조성 : 4개 조항
  - 제5장 선도지역 개발사업의 시행 : 8개 조항
  - 제6장 선도지역 관리 : 11개 조항
  - 제7장 창조경제 선도지역진흥재단 : 9개 조항
  - 제8장 보칙 : 2개 조항
  - 제9장 벌칙 : 3개 조항
  - 부칙 : 2개 조항

#### ■ 주요용어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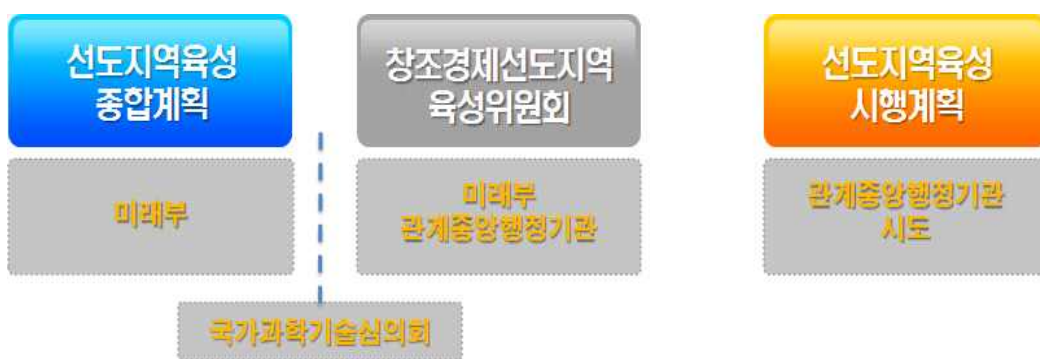
- 창조경제, 창조경제 선도지역, 기능지구, 기술주도형 강소기업(제2조)
  - 제2장 제1절 참조
- 창조경제 선도지역 지정 요건(제5조), 기술주도형 강소기업 지정 요건(제11조)
  - 제2장 제1절 참조

### ■ 창조경제 선도지역 지정 시 인센티브

- R&D 성과 사업화 촉진
  - R&D 성과의 사업화 기반 구축(제10조)
  - 기술주도형 강소기업 지원(제11조)
  - 글로벌 연구소 특화단지 조성(제15조)
  - 창조경제 특성화 대학 지정(제16조)
- 국제적 비즈니스 환경 조성
  - 세제 및 자금 지원(제17조)
  - 외국인학교 설립 및 운영 지원(제18조)
  - 외국인 진료병원 지정 운영(제19조)
  - 교육, 문화예술, 관광시설 지원(제20조)
- 창조경제 선도지역진흥재단 설립(제40조)

### ■ 창조경제 선도지역육성 종합계획 수립

- 수립 절차
  - 선도지역육성종합계획 수립 →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협의 → 창조경제선도지역육성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확정 → 창조경제 선도지역육성시행계획 수립



<그림 3-2> 창조경제 선도지역육성 종합계획 수립 절차

- 주요 내용
  - 선도지역 육성의 기본방향
  - 선도지역의 대학·연구소·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및 지식재산권 관리의 지원

- 선도지역의 전문인력 양성
- 선도지역의 대학·연구소·기업 간 교류와 협력 활성화
- 선도지역의 체계적인 개발 및 지원
-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 여건 조성
- 창조경제 인프라 구축
-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능적·공간적 연계성 강화
-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확대 및 재원 조달·운영

## 2. 법안 주요내용

- 이 법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선도지역을 조성함으로써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기술주도형 강소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 창조경제의 정의를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가치로 두고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과 융합하여 신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산업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 및 국가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경제체제로 함(제2조)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창조경제선도지역육성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도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5조)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선도지역 지정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등 사유가 있으면 선도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제6조)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선도지역의 육성을 위하여 선도지역육성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창조경제선도지역육성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함(제7조)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제8조)
- 선도지역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

- 학부장관 소속으로 창조경제선도지역육성위원회를 두도록 함(제9조)
- 선도지역에서의 창조경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과 기술주도형 강소기업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둠(제10조~제13조)
  - 선도지역의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동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특례, 글로벌 연구소 특화단지 조성, 창조경제 특성화 대학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둠(제14조~제16조)
  - 창조경제 기반 구축 및 국제적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입주기관에 대한 세제 및 자금 지원, 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외국인 진료 병원 등의 지정·운영, 교육·문화예술·관광시설 지원 등의 규정을 둠(제17조~제20조까지)
  - 선도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지정취소 및 대체 지정, 실시계획의 승인, 허가 등의 의제, 개발사업의 착수,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비용의 부담에 관한 규정을 둠(제21조~제28조까지)
  - 선도지역의 관리를 위하여 선도지역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의 용도를 주거구역, 상업구역, 녹지구역,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산업시설구역으로 구분함(제29조 및 제30조)
  -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 입주하려는 자의 입주승인, 입주기관의 부지의 양도제한, 경매 등에 따른 건축물 등의 취득, 건축 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둠(제31조~제36조까지)
  - 선도지역 육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선도지역에 선도지역진흥재단을 설립하도록 함(제40조)

### 3. 특별법 비용추계

#### ■ 재정수반 요인

- 제정안 제40조(설립)에서 선도지역진흥재단을 설립하여, 선도지역의 개발 및 관리·운영 사업, 선도지역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사업 등 제42조

(사업)에 규정된 사업을 수행

- 제7조(선도지역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0조(창조경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기반 구축), 제13조(기술주도형 강소기업 지원), 제15조(글로벌 연구소 특화단지 조성), 제16조(창조경제 특성화 대학의 지정 등), 제17조(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및 자금 지원 등), 제18조(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제20조(교육·문화·예술·관광시설의 지원), 제26조(선도지역 개발사업의 착수) 및 제28조(비용의 부담) 등
- 제정안 제9조(창조경제선도지역육성위원회)에서 선도지역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무원 및 민간으로 구성된 창조경제 선도지역육성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속으로 설치
- 회의참석 수당 및 자료검토비 등

####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

- 제정안에서 규정한 각종 사업에 대한 구체적 계획 등을 추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현재의 시점에서 동 제정안 시행에 따른 소요비용은 기술적으로 추계 곤란<sup>4)</sup>
- 다만 동 제정안에서 규정한 사업과 유사한 사례인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을 정리하여 보여줌으로서 제정안 시행에 따른 소요비용을 대략적으로 추정

#### ■ 연구개발특구사업 현황

-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특구사업’은 2005년 1월 제정된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추진 중
- 법률 제정당시에는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개발사업이 추진되었으며, 2011년 1월 대구 및 광주를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고, 2012년 11월에는 부산을 추가로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

4)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단서 중 제3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표 3-1> 연구개발특구육성 사업 예산(2010 ~ 2014년)

(단위 : 백만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연구개발특구육성(R&D)	33,116	33,116	34,706	34,706	38,706
연구개발특구육성	10,602	13,502	29,046	52,909	16,839
추가연구개발특구육성(R&D)	-	10,000	14,000	27,000	30,000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투자지원	-	-	10,000	10,000	5,000
합 계	43,718	56,618	87,752	124,615	90,545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 예산정책처 작성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R&D)은 대덕지구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추가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R&D)은 대덕지구 이외 부산, 대구 및 광주 지구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연구개발특구육성 및 연구개발특구기술사업화투자지원사업의 경우 4개 지구를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 ■ 국회 예산정책처 특별법 정부 예산 추정액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특구 이외의 지역에 별도의 선도지역을 지정하여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는 법률로 해석 가능
- 선도지역에 대한 예산지원액은 ‘추가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의 3분의1과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및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투자지원사업’의 4분의1 정도의 수준으로 예상
- 1개 선도지역에 대한 지원액은 연평균 201억 원 예상

<표 3-2> 1개 선도지역에 대한 정부 예산 추정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연구개발특구육성(A)	추가연구개발특구육성(R&D)(B)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투자지원(C)	합 계
2013~2014년 평균 예산	34,874	28,500	7,500	-
1개 선도지역 평균지원액	8,719(=A/4)	9,500(=B/3)	1,875(=C/4)	20,094

주 : 동 금액은 국비지원액만 고려하여 추정된 값임

## 제3절 관계기관 검토의견 분석

### 1. 관계 부처 검토의견<sup>5)</sup>

#### ■ 미래부

##### ○ 기능지구 명칭(법안 제2조)

- 창조경제 선도지역 안에 개발연구 및 사업화 등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고시된 지역
- 법안 심사시 수정 필요

법안	수정안	수정 사유
기능지구	연구·사업지구	과학벨트의 기능지구와 혼동 우려

#### ■ 국방부

##### ○ 선도지역육성계획 수립절차(법안 제7조)

- 미래부장관이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을 종합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선도지역의 연구개발, 인력양성, 산학연 협력, 인프라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 주무부처인 미래부 의견에 따라 법안 심사시 고려사항

법안	수정안	수정사유
미래부장관 작성 → <신 설> → 선도지역육성위원회 심의	미래부장관 작성 → 관계부처 협의 → 선도지역육성위원회 심의	군 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이 포함된 육성계획이 군 작전성 검토를 거치지 않 고 수립될 경우 군 작전에 지장 초래

##### ○ 실시계획 승인절차(법안 제23조)

- 주무부처인 미래부 의견에 따라 법안 심사시 고려사항

법안	수정안	수정사유
개발사업자 작성 → 선도지역 진흥재단 협의 → <신 설> → 시도지사 승인	개발사업자 작성 → 선도지역 진흥재단 협의 → 관계부처 협의 → 시도지사 승인	군 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이 포함된 육성계획이 군 작전성 검토를 거치지 않 고 수립될 경우 군 작전에 지장 초래

5) 미래부 내부자료(2014.7.29.)

## ■ 행사부

- 선도지역육성위원회 설치(법안 제9조)
  - 선도지역의 지정·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위원장 : 미래부장관, 위원(20명 이내) : 관계부처 차관 및 민간 전문가)
  - 주무부처인 미래부 의견에 따라 법안 심사시 고려사항

법안	수정안	수정사유
선도지역육성위원회 설치	기존 창조경제위원회 활용 - 창조경제 관련 관계부처 간 협의(위원장 : 미래부장관, 위원: 관계부처 차관)	- 기존 창조경제위원회와 기능과 성격이 유사 - 신설하더라도 자문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4조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원칙

- 국·공유재산 특례(법안 제17조)
  - 지자체 수입 감소보다 선도지역 지정에 따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현행 법안 유지 필요

법안	수정안	수정사유
지자체는 기능지구 입주기관에 대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	<삭 제>	- 지자체의 수입 감소 우려 - 기능지구 외에 위치한 기관과 형평성 문제

## ■ 산업부

- 선도지역 내 연구성과 사업화 주관부처(안 제10조)
  - 범부처 R&D사업 종합조정 기능을 가진 미래부가 주관부처 주관부처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현행 법안 유지 필요

법안	수정안	수정사유
미래부장관	정부	- 연구성과 사업화 기반 구축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사항 - 기술이전촉진법에서도 연구성과 사업화 주관부처를 정부로 규정

- 선도지역 관리(법안 제29조)
  - 선도지역 내 산단의 관리계획
  - 주무부처인 미래부 의견에 따라 법안 심사시 고려사항

법안	수정안	수정사유
미래부장관이 수립하는 <u>선도지역관리계획</u>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u>산단관리기본계획</u>	산단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정책혼선을 경감 필요

○ 선도지역 관리(법안 제37조)

- 선도지역 내 산단의 관리기관
- 주무부처인 미래부 의견에 따라 법안 심사시 고려사항

법안	수정안	수정사유
-국가산단 전체, 일반산단 및 도시첨단산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산단공 - 기타지역 : <u>선도지역진흥재단</u>	<u>전체지역 : 산단공</u>	산단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정책혼선 경감 필요

■ 기재부

○ 국·공유재산 특례(법안 제17조)

- 지자체 수입 감소보다 선도지역 지정에 따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현행 법안 유지 필요

법안	수정안	수정사유
국가는 기능지구 입주기관에 대해 <u>국유재산 임대료를 감면</u>	<u>&lt;삭 제&gt;</u>	- 국유재산의 적절한 관리와 국가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취지와 배치 -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국유재산특례는 「국유재산법」 및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 선도지역진흥재단 설립(법안 제40조~안 제48조)

- 주무부처인 미래부 의견에 따라 법안 심사시 고려사항

법안	수정안	수정사유
<u>선도지역진흥재단 설립</u>	<u>&lt;삭 제&gt;</u>	- 특구진흥재단과 역할이 중복 되므로 동 기관 활용 필요 - TP와 기능이 중복되어 정책 혼선을 야기할 우려

## ■ 국토부

- 선도지역 개발(법안 21조~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7조~제39조)
  - 주무부처인 미래부 의견에 따라 법안 심사시 고려사항

법안	수정안	수정사유
동 법안에 따른 개발 관련 諸 규정에 따라 추진	「도시개발법」, 「산업입지개발법」에 따라 개발하도록 규정	특구 등 기존과 유사한 지구를 신설할 경우, 토지이용규제 복잡화에 따른 국민 불편 가중 우려
선도지역을 국가산단·일반산단 또는 도시첨단산단으로 의제	<삭 제>	산업단지의 종합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산업입지개발법」에 따라 지정·개발 필요

## ■ 소결

- 법안 제정 취지를 반대하는 부처 의견은 없음
- 일부 부처에서 기존 유사법(연구개발특구법·도시개발법·산업입지개발법·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등) 활용
  - 법안 검토 시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일부 개발계획 조항은 재검토 필요
- 연구개발특구법과 일부 유사
  - 법안 제정 취지가 다르며, 차별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5장 제2절 참조

## 2.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검토보고서

### ■ 기술주도형 강소기업 정의 구체화

- 검토보고서
  - 기술주도형 강소기업이 연구개발특구법에서 명시한 첨단기술기업과 유사
- 검토의견
  - ① 강소기업 육성에 초점
    - 규모는 작지만 해당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건실한 기업 육성 강조
    - 대기업 중심의 성장 패러다임에서 창업 중소기업의 강소기업화를 통한 산업재구조화와 신산업을 창출하는 경제성장 패러다임으로 바뀌 창조경제 활성화, 고용

를 제고, 질적 성장을 추구 개념

② 기술주도형에 대한 개념 일부 보완 필요

- 창의성 기반 기술 융합형 개념으로 확대
- 창의성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과 융합하여 각 산업과 융합하여 신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산업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업에 초점

## ■ 창조경제 정의

### ○ 검토보고서

- 창조경제라는 용어의 개념이 다양하게 정의되어질 수 있고, 계속 진화하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으며, 또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영역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면, 해당 용어를 동 제정안에서 정의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지식기반경제<sup>6)</sup>라는 용어는 기존 법률에서 그 개념을 정의하지 않은 채 「산업발전법」 제1조 및 제3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제2항 등에서 해당 용어를 사용한 입법례가 있음<sup>7)</sup>

### ○ 검토의견

- 지식기반경제에 대한 개념 정의 없이 입법례가 제정된 사례와 같이 창조경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어려운 만큼 창조경제에 대한 개념 정의를 법안에서 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정의

6) '지식기반경제'란 199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용어로, 지식의 창출에 바탕을 둔 경제 또는 경제구조를 말하는데, 국제기구나 국가에 따라 개념에 대한 정의가 약간씩 다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지식기반경제를 '직접적으로 지식과 정보를 생산·배포하는 산업에 기반을 둔 경제'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는 '산업 전반에 걸쳐 지식을 생산·분배·이용함으로써 경제를 발전시키고, 부를 창출하며, 고용을 확대하는 원동력이 되는 경제'로 각각 정의하고 있음.(출처 : 두산백과사전)

7) 「산업발전법」 제1조 ( 목적 ) 이 법은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대응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 산업발전시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촉진(이하 생략)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조 ( 목적 ) 이 법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엔지니어링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산업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창의적인 지식기반사회의 실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저탄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 (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의 촉진 ) ② 정부는 정보통신·나노·생명공학 기술 등의 융합을 촉진하고 녹색기술의 지식재산권화를 통하여 저탄소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신속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 ■ 기능지구 명칭

- 검토보고서
  - 기능지구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으며 그 의미가 다르게 사용하고 있음
  - 연구 및 사업지구와 같이 다른 용어 활용 필요
- 검토의견
  - 추후 법안 심사시 수정 필요

## ■ 창업지원 등 규정 보완

- 검토보고서
  - 개인, 1인 창조기업, 벤처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이 상생과 협력의 선순환 경제를 실천할 수 있는 창조경제 선도지역을 조성하는 것을 그 핵심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업과 관련한 지원 내용은 기존의 다른 입법례에 비추어 보면 미흡
  - 개인, 1인 창조기업, 벤처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이 상생하고 협력하는 창조경제 선도지역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 안의 대·중소기업은 물론 산·학·연 간 연계 협력 필요
- 검토의견
  - 관련 법률 검토, 정부 부처 협의, 지역 산학연관 경제 주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추가
  - 중앙정부 주도가 아닌 지역 시군 단위에서의 산학연관 경제주체들이 지역 고유의 맞춤형 발전 전략에 대한 자발적, 주도적 추진 노력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

## ■ 국·공유재산 특례

- 검토보고서
  - 지자체는 기능지구 입주기관에 대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할 경우 지자체 수입 감소 우려
- 검토의견
  - 지자체 수입 감소보다 선도지역 지정에 따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현행

법안 유지 필요

### 3. 공청회 의견

#### ■ 특별법 제정 심포지엄

- 일시 및 장소
  - 2014년 6월 23일, 포항시청 회의실
- 주제발표
  -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실천 방향과 전망(미래부 최영해 국장)
  - 창조경제 선도지역 특별법 제정의 의미와 과제(대구경북연구원 김병태 연구위원)
- 토론자
  - 이재영 한동대 교수, 박성진 포스텍 교수, 광정식 포스코 상무, 이석우 펜타시큐리티시스템(주) 대표이사(APGC 회장), 이준택 (사)도시전략연구소 소장
- 주요 참석자
  - 이병석, 박명재 국회의원,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당선인, 최병곤 포항상공회의소 회장, 김용민 포스텍 총장, 장순홍 한동대 총장, 최영해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기획국 심의관 등
- 주요내용
  -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실천 방향과 전망
  - 창조경제 선도지역 특별법 제정의 의미와 과제
  - 창조경제 선도지역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과 추진 방향
  - 창조경제 선도모델, 포항의 경쟁력과 비전
- 주요 토론내용
  - 포스텍 졸업생이 포항지역에 취업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와 정주여건 마련 필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정부 의존도가 너무 높음.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민간 주도의 생태계 조성 필요(포스텍 총장)
  - 도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대학을 중심으로 좋은 일자리 마련하는 생태계 마련 필요(미국 시애틀 사례)(포스코 재단 관계자)

- 정부 창조경제 개념 마련하기 전부터 7개 기관과 함께 고민, 지역 차원의 상향식 법안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병석 의원)

## ■ 특별법 입법 공청회

### ○ 일시 및 장소

- 2014년 11월 19일, 국회 의원회관

### ○ 주제발표

- 창업국가 미래전략(KAIST 이광형 교수)
- 창조경제 특별법 제정 의미와 선도지역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방향(대구경북연구원 김병태 연구위원)

### ○ 토론자

- 이장우 경북대학교 교수,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관, 이기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선임연구위원, 박성진 포스텍 교수, 조용혁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원

### ○ 주요 참석자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홍문종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석준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 ○ 주요 내용

- 지역 중심의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과제
- 창조경제 실현과 벤처·강소기업 발전 방향
- 창조경제 선도지역 특별법 제정의 의미
- 창조경제 지역 선도모델의 실천과제 및 제도적 보완 방향
- 창조경제 선도지역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과 방향
- 창조경제 선도모델, 포항의 경쟁력과 비전

### ○ 주요 토론내용

- 지역정책 수립시 산업단지,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 거점기관간 연계 필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 방안 마련(산업부)
- 지역주도로 창조경제 선도하는 최초의 법안, 대학역할 중요, 선도지역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창업할 수 있는 틀(tool)마련 필요, 민간 주도로 지역에서 상향식 관점에서 제안한 법안임(포스텍)
- 기존 유사 법안과 차별성 중요, 창조경제 개념에서 문화산업 포함 여부 확인 필요, 지정 요건이 너무 엄격함, 글로벌연구특화단지 등 구역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 과학기술에 너무 편향된 경향, 연계·협력·차별화에 집중
-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법적 기반 마련이 되지 않아서 정권 바뀐 후 지속성 보장 어려움, 특별법안에 창조경제혁신센터 개념 포함 필요, 창조경제 개념에 문화산업까지 포함하기에는 한계(이병석 의원)



# 제4장

## APGC 현황 및 설문결과

제1절 APGC 현황

제2절 APGC 설문결과



## 제4장 APGC 현황 및 설문결과

### 제1절 APGC 현황

#### 1. APGC 개요

- APGC(Association of POSTECH Grown Companies)는 POSTECH 동문기업 협의체로 POSTECH 내 창업 활성화와 POSCO 등 대기업과의 교류 및 동반 성장을 위해 2012년 7월 발족

##### ■ APGC 목적

- 산업체 연계를 통한 APGC의 동반 성장
- POSTECH 자원을 확대하여 동문 벤처 활성화
- 창업 활성화 및 동반 성장을 통해 국가 발전에 이바지
- 창업 의식 고취를 통해 POSTECH 설립 이념(애국심, 도전정신) 실현

##### ■ 회원 자격

- POSTECH 교수, 학생, 졸업생, 교직원, 연구원이 창업한 기업 혹은 등기이사 이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기업
- POSTECH 창업보육센터 입주 및 졸업 기업
- POSTECH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 POSTECH에서 주식을 보유한 기업

##### ■ 회원 수

- 2012년 37개사, 2013년 49개사, 2014년 59개사로 매해 회원 수 증가

##### ■ 회원 현황

- 4개사 코스닥 상장((주)넥스트아이, (주)사이버다임, (주)알티캐스트, (주)ITX시큐리티), 5개사 상장 신청 중, 2개사 M&A
- 지역별 회원 현황 : 경북 24개사, 서울 20개사, 경기 13개사, 경남 1개사,

대전 1개사

- 업종별 회원 현황 : 제조업 26개사, S/W 22개사, 교육, 자문 및 사업지원 5개사, 연구개발 4개사, 엔지니어링 서비스 2개사

■ 회원사 주요 품목 및 기술

- APGC 59개 회원사의 주요 품목 및 기술을 다음과 같음

<표 4-1> APGC 회원사 주요 품목 및 기술

지역	기업명	주요 매출 품목 및 기술
경북 포항	지민	스마트 폰 겸용 블루투스형 전화기
	(주)누트파이브	폐열회수기술, 고효율 및 특수 유체기기
	(주)나이코	철강코일 포장자재
	(주)파워솔루션	전력용 반도체(Power MOSFET), IGBT
	(주)알씨씨	기후변화협약 대응 컨설팅, 에너지 관리 컨설팅
	(주)팜토펙	공진스펙트럼유전자분석기술, 미세 액적 의료 진단 기기
	(주)씨닉스	이기종 시스템 통합 솔루션, 철도 PSD 전용 운영 플랫폼,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용 소프트웨어 제어기
	팩트이엔씨	적외선열화상장치, 산업용 리튬 배터리
	(주)바이오엠펙	진단키트 및 산업용 효소, 치료용 의약품, 재조합 백신
	(주)글로벌에듀타운	전화영어, 화상영어
	(주)노바셀테크놀로지	바이오기능성엠펙, 바이오시밀러연구용역, 원료물질 공급
	(주)자이백	크레인전용모터제어장치, 중저온폐열을이용한 발전 시스템
	(주)베이다스	임베디드 기반 차량용 다채널 고해상도 지능형 영상처리 시스템, 영상기반 첨단운전자 보조 장치
	제위드	전력절감기, 솔루션 제공
	(주)씨비텍	쿠커비투릴(CB) 제조, 판매, 응용 기술개발
	(주)엔에스비포스텍	표면에서생분자간간격조절가능한NanoConesTechnology, 바이오칩 (coatingtechnology), NE-AFM(단분자 검출 가능)
	(주)압타머사이언스	연구용 압타머 서비스, 압타머를 이용한 assay 관련 kit 제품개발
	(주)다원이엔씨	풍력설비운영및유지보수, 산업설비 설치 및 정비 운영
	제노마인(주)	식물생명공학사업, 기능성화장품원료, 신장암 진단 조성물 진단키트, 인산단백질의 분획, 분리 방법 및 키트(연구서비스 및 용품)
	(주)엔픽스	반도체/디스플레이/전자/태양광/철강강판표면등 고속 나노입자빔 세정기술 및 장치(나노급 오염물 제거 기술)
백산시스템	음성인식서비스 플랫폼	
포항공과대학교기술지주(주)	자회사 설립 및 경영관리	
(주)동일알앤이	부정형 내화물 및 슬래그 조제제	
경북 울진	(유)야생초	저염도 기능성 야생초 전통 배추김치
서울	(주)사이버다임	기업용 지식 및 콘텐츠 관리 솔루션 (ECM, EDMS, KMS)
	(주)유먼더스	영상처리 및 증강현실 S/W
	(주)넷스루	온라인 마케팅 통합솔루션, 웹로그 분석, 모바일 앱 분석, 온라인 고객 분석, 개인화 추천 등 데이터 처리·데이터 마이닝 기술 (WiseLog/CustomerFocus/SmartOffer 등)

지역	기업명	주요 매출 품목 및 기술	
	(주)비원플러스	모바일 보안솔루션 (MoSE/CHAM-ID)	
	(주)웨이브엠	Car Infotainment 시스템, 차량증강현실 S/W, 화물차 전용 네비게이션 표준맵 S/W, 차량서비스 검증 S/W, 연료전자차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텔레매틱스, LBS, 유통정보 시스템 등) 등 차량 IT 융합사업관련 분야 소프트웨어 개발	
	(주)컨텍스트로직코리아	모바일 커머스 앱, '위시' 개발 및 서비스	
	(주)알티캐스트	양방향 디지털 방송 수신기 미들 웨어	
	(주)노매드커넥션	모바일 미디어 솔루션(미디어플레이어 Zimly, 전국미용실 검색 어플 Bookit)	
	(주)OSSLab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및 분석	
	(주)스키퍼	온라인평판관리	
	스탠퍼드 컨설팅 그룹	전문 연구, 경영컨설팅	
	(주)TX시큐리티	DSP기반 영상 저장 장치 기술, HD Resolution 카메라 개발 및 제조 기술, 비디오 매니지먼트 시스템, Video Analytics 관련 기반 기술, IP Surveillance 관련 프로토콜	
	(주)아이티엔지니어링	생산공정에 필요한 conveying system(정밀기어펌프, powder system, spinning nozzle 등 full line up)	
	먼데이코리아(주)	시설물 관제, 리조트 관리 시스템, 창고관리시스템 등	
	달리웍스	M2M( Machine to Machine)/IoT(사물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 및 솔루션	
	(주)국제선박투자운용	펀드 설정 및 운용 보수, 선박관리 및 신조관리비	
	펜타시큐리티시스템(주)	웹 방화벽, DB보안, 공개키 인증 및 암호화	
	펜타시스템테크놀로지(주)	솔루션 영역 매출(ECM, Big Data, MW, BI, APM, SMS, OSS, DB 보안 등)	
	심플렉스인터넷(주)	호스팅 센터/쇼핑몰 센터/마케팅센터 등의 IT 서비스, 빅데이터 활용 상품 분석 서비스	
	(주)미라지웍스	가상화솔루션, 그리드기반콘텐츠전송솔루션, 통합 백신 솔루션	
	경기	(주)인텔리코드	M2M 통신, Cloud Computing, Security
		(주)아데소	바이오센서 제조설비
		(주)넥스트아이	머신 비전 시스템(BLU 검사장비, 편광필름 검사장비, GECD 장비)
(주)올메티쿠스		혈당측정기, 혈당측정 시험지	
하이솔루션전기(주)		에너지 절감 고효율 솔루션 (양방향 모터 드라이브)	
(주)컴퍼니원현대드레드		모바일 웹 브라우저 및 게임서비스	
(주)피엠그로우		전기자동차 충전기 운영관제 시스템, 스마트 그리드 S/W	
(주)로보터스		로봇 및 메카트로닉스 기술, 마이크로버블 생성 기술	
(주)클리노믹스		유전체기반 진단 사업	
나노미래(주)		기능성 CNT-고분자 복합 소재	
(주)이즈텍		생명정보사업, DNA Chip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바이오SI사업, DNA칩 및 SNP칩 분석 서비스 등	
(주)뉴로메카		로봇소프트웨어, HRidevice 및 소프트웨어, 뇌정위전극삽입장치	
(주)티앤알바이오랩		3D 프린팅 기반 생분해성 의료용 재제 개발, 3D프린팅 장비 및 공정기술개발, 조직공학 및 재생의학기술 임상적용	
경남 사천		(주)세타텍	분말사출성형, 분말야금, 분말사출성형 및 분말야금공정 S/W
대전 유성	(주)넥스윌	광대역신호처리기술, DSP및CPU구현기술, 디지털 방송 시스템, 이동통신 시스템, 유비쿼터스 시스템 등	

## 2. APGC 주요 활동 및 추진 계획

### 1) 주요 활동

- APGC-Lab 신설 등 POSTECH 창업 활성화 지원
- APGC 1호 연구소기업 ‘엑스브레인’ 창업
- POSCO & Family 기업 협력 연계
- 지역사회 연계 성장(포항 강소기업 육성 생태계 사업 TFT 참여)
- 엔젤펀드 50억 결성 및 지역펀드 조성 중
- APGC 연구소 포항 유치 활동 중

### ■ APGC-Lab 개요 및 프로그램

- APGC-Lab은 POSTECH 구성원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POSTECH과 APGC 간의 공동 창업지원 조직임
  - POSTECH 구성원들의 스타트업의 성공을 도와주는 인큐베이팅 랩
  - POSTECH 구성원들의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APGC와 협업 프로그램 제공
  - 창업지원과 함께 Incubator & Accelerator 역할 수행
- 조직 구성: Director 및 Manager로 운영
  - Director: APGC에서 추천
  - Manager: POSTECH 졸업동문(전문 매니저)과 재학생(일반 매니저)으로 구성
- Tech+Innovation 프로그램 1기('14.9~'15.2)
  - 추진 경과
    - 2014. 8월 : 기업(APGC 회원사) 프로젝트 모집
    - 2014. 9월 : 지원자 모집(9.2~9.24) 및 최종 선발(팀 구성), 기업프로젝트 착수
    - 2015. 2월 : 기업 프로젝트 진행 및 결과 발표
  - 참여 현황 : 사이버다임 등 5개사 과제 참여, 재학생 7명 참여
- Tech+Star 프로그램
  - 프로그램 개요 : 포스텍 구성원이 창업한 스타트업팀을 위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으로 멘토링 서비스 및 스타트업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초기 성공적인 스타트

### 업 운영 지원

- 참여 모집 : 연중 상시
- 참여 자격 : 포스텍 구성원이 포함된 팀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
- 참여 방법 : APGC-Lab 홈페이지(<http://www.apgc-lab.org>)에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일주일 내에 개별 연락
- 지원 기간 : 6개월

## 2) 추진 계획

- APGC 연구소단지 조성 계획
  - APGC 기업들이 POSTECH 및 R&D기관, POSCO 및 지역 기업과 협력 연구개발 및 사업화 추진 가능한 집적 연구 인프라 구축에 대해 지속적으로 포항시 등과 협의 중
- APGC-Lab 창업 지원 확대 계획
  - 우수 예비창업자에 대한 초기 재정 지원과 사업화 협력 네트워크 및 투자 유치 연계 지원 확대를 통해 발전 계획 중 (포항시 지원 및 창조경제센터 등과 연계)
- 비즈니스 교류회 계획
  - APGC 및 동문기업들이 POSCO 패밀리사, POSTECH, 철강산업단지 내 기업 등과 연계사업을 위한 포항시 주관 정기 기술 및 비즈니스 교류회 계획 중
- 창업 portal 구축 계획
  - 기업이 기술사업화 관련 POSTECH 보유 특허, 기술, 연구 인력, 연구 장비 등 제반 사업화 활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을 구축 계획
- 지역 벤처 펀드 조성 제안
  - 포항 소재 벤처 캐피탈 설립 및 운영, POSTECH 예비창업자, 창업기업을 포함한 지역 벤처 집중 육성

## 제2절 APGC 설문결과

### 1. 설문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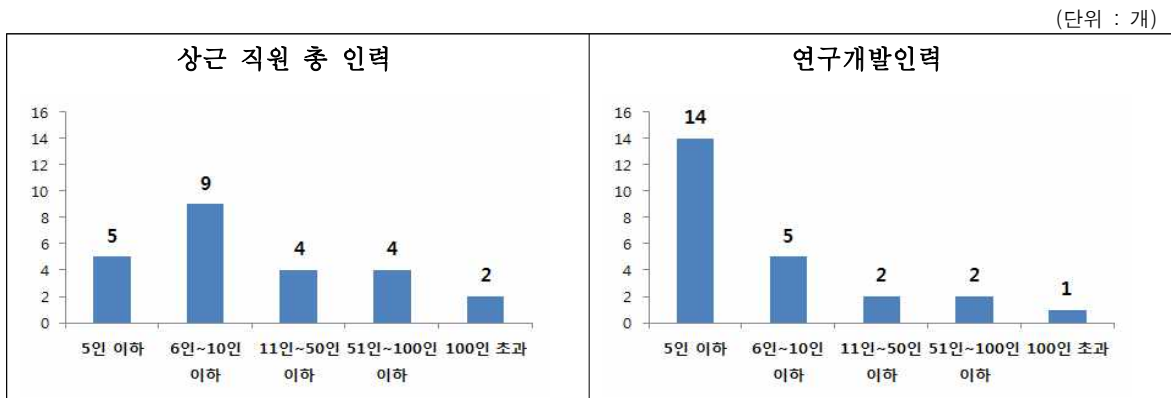
- 조사대상 : APGC 회원사 59개사
  - 응답기업 : 24개사
- 조사기간 : 2015년 2월 2일~3월 20일
- 조사방법 : E-mail로 설문지 배포 후 회수
- 조사 목적
  - POSTECH을 중심으로 포항이 대한민국의 창조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최적지라는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
- 조사 내용
  - APGC 일반 현황 : 업종, 벤처 및 이노비즈 기업 인증 여부, 직원수, 매출액
  - APGC 가입 이유와 창업 초기 애로사항
  - APGC 현황 및 제휴·협력 활동 : 연구개발 파트너별 기술사업화 건수, 제휴 및 협력활동 유형과 도움 정도, 협력활동 의사 및 희망 활동 유형
  - 창조경제 선도지역 조성 관련 의견 : 지정 시 창업/기업 육성 등에 도움되는 정도, 개선사항, 기술주도형 강소기업 요소, 창조경제 선도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 본사/지사 이전 의사
  - 경영상 애로사항

### 2. 설문결과

#### ■ APGC 일반 현황

- 응답기업의 업종 분야를 보면 IT분야 54.2%, BT분야 20.8%, NT분야 4.2%, ET분야 4.2%임
- 벤처인증기업은 응답기업의 69.6%이며, 이노비즈 인증기업은 35.0% 임

- 상근 직원수가 10인 이하인 기업이 14개사(58.3%), 11인~50인 이하인 기업이 4개사(16.7%), 51인~100인 이하인 기업이 4개사(16.7%), 100인 초과 기업이 2개사(8.3%)로 직원 수 10인 이하의 소규모기업이 50% 이상임
- 연구개발 인력수가 10인 이하인 기업은 19개사(79.2%)임



<그림 4-1> 상근 직원수 및 연구개발인력

- 2014년 매출액을 조사한 결과 10억 미만인 기업이 66.7%, 10억~50억 미만 기업이 12.5%, 50억 이상인 기업이 20.8%임

**■ APGC 가입 이유와 창업 초기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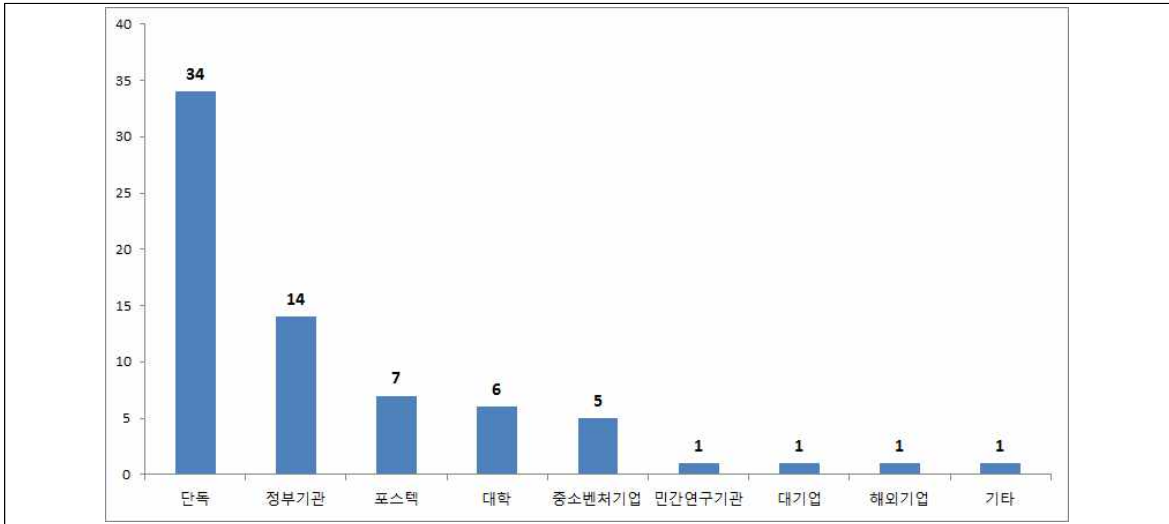
- APGC를 가입한 이유로는 ‘POSTECH 동문과의 네트워크’를 위해서 가입하였다고 응답한 기업이 78.3%로 가장 많음
- 창업 초기 가장 어려웠던 점은 ‘투자자금 확보’라고 응답한 기업이 58.3%, ‘우수 인력 확보’라고 응답한 기업 16.7%, ‘마케팅 판로개척’이라고 응답한 기업 16.7%, ‘사업화 모델 개발’이라고 응답한 기업 8.3%로 창업할 때 자금 확보와 관리부분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 APGC활동 및 제휴·협력 현황**

- 최근에 수행을 완료하였거나 현재 수행 중인 연구개발 과제에서 ‘단독’으로 기술사업화를 진행한 건수가 34건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정부기관’과의 기술사업화 건수 14건, ‘POSTECH’과의 기술사업화 건수 7건 순임

창조경제 선도지역 조성  
기본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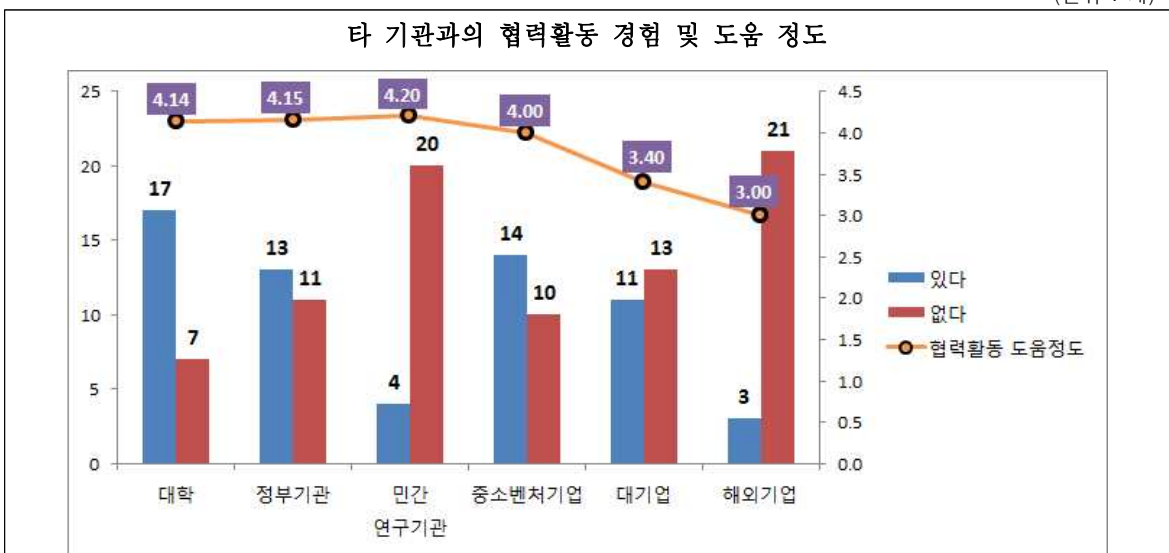
(단위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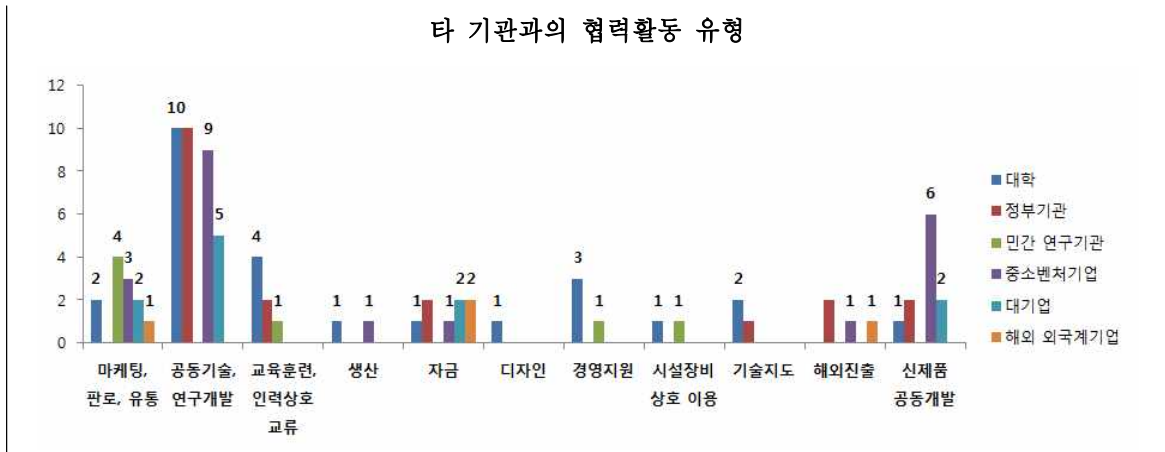


<그림 4-2> 연구개발 파트너별 기술사업화 건수

- 타 기관과의 협력활동 경험 및 도움정도를 보면 대학과의 협력활동이 가장 많고, 기업경영에 가장 많은 도움이 되었던 협력활동은 민간 연구기관과의 협력활동임
- 타 기관과의 협력활동 유형을 보면 공동기술·연구개발분야에서 협력 활동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단위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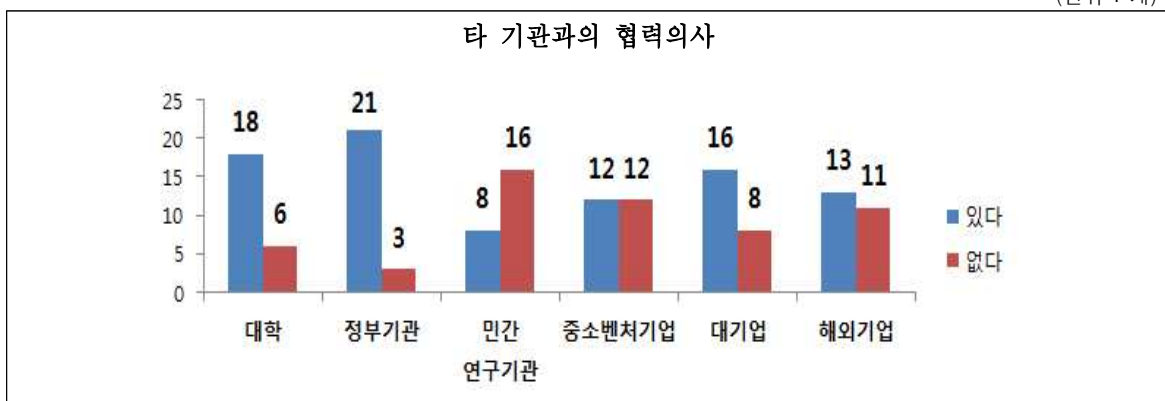


주 1. 협력활동 유형에 대한 문항은 복수응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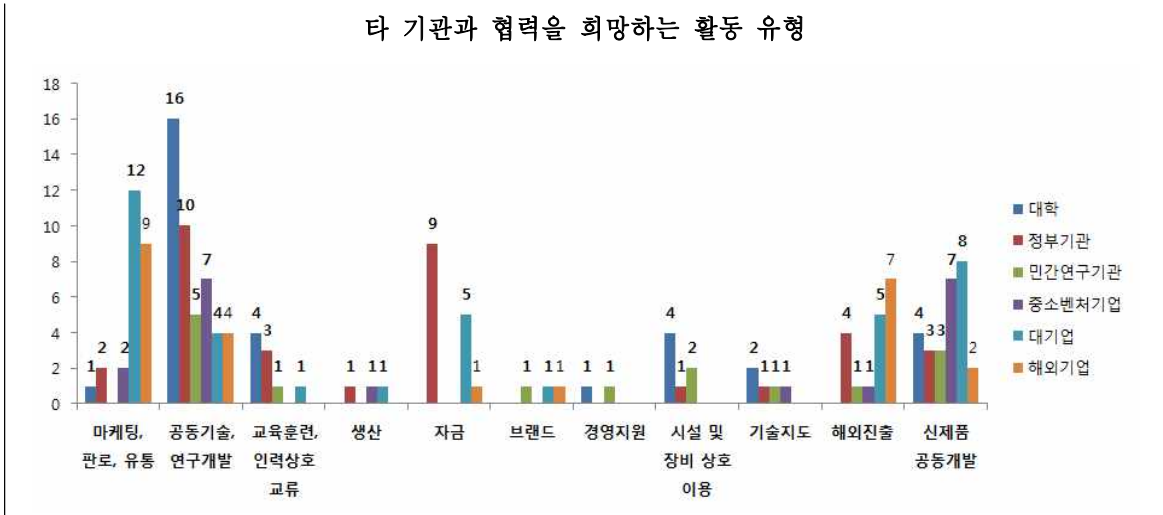
<그림 4-3> 타 기관과의 협력 활동 현황

- 타 기관과의 향후 협력의사를 보면 정부기관과의 협력의사가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대학, 민간연구기관 및 대기업 순임
- 타 기관과의 향후 협력을 희망하는 활동 유형을 보면 대기업과는 마케팅 판로, 유통 협력활동을 가장 희망하며, 대학과는 공동기술·연구개발 협력 활동을 가장 희망하며, 정부기관과는 공동기술·연구개발 협력활동과 자금 지원 활동을 희망함

(단위 : 개)



창조경제 선도지역 조성  
기본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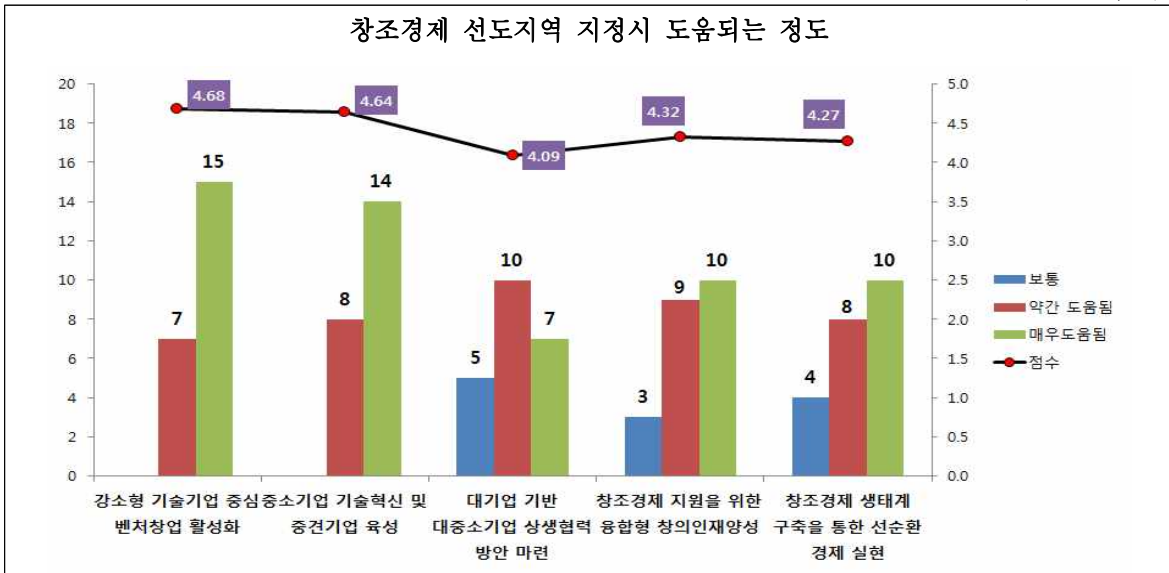
주 1. 협력을 희망하는 활동 유형에 대한 문항은 복수응답 가능

<그림 4-4> 타 기관과의 협력 활동 의사 및 희망 활동 유형

### ■ 창조경제 선도지역 조성 관련 의견

- 창조경제 선도지역이 조성되면 ‘강소형 기술기업 중심 벤처창업 활성화’ 부분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응답함

(단위 : 개,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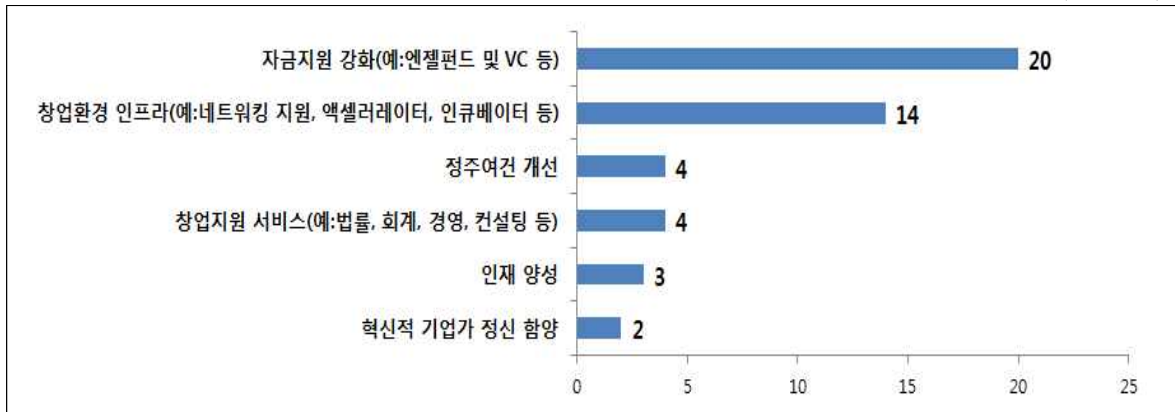


주 1. 무응답 2개

<그림 4-5> 창조경제 선도지역 지정시 도움 정도

- 창조경제 선도지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엔젤펀드 및 VC 등의 ‘자금지원’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사항임

(단위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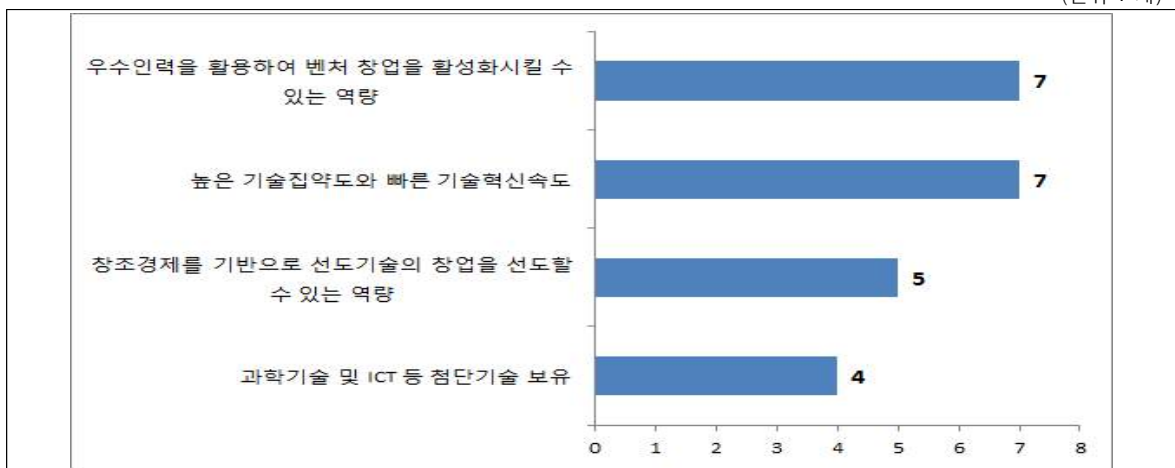


주 1. 복수응답

<그림 4-6> 창조경제 선도지역으로 발전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

- 기술주도형 강소기업이 보유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수인력을 활용하여 벤처 창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역량’과 ‘높은 기술집약도와 빠른 기술혁신 속도’라고 응답한 기업이 많음

(단위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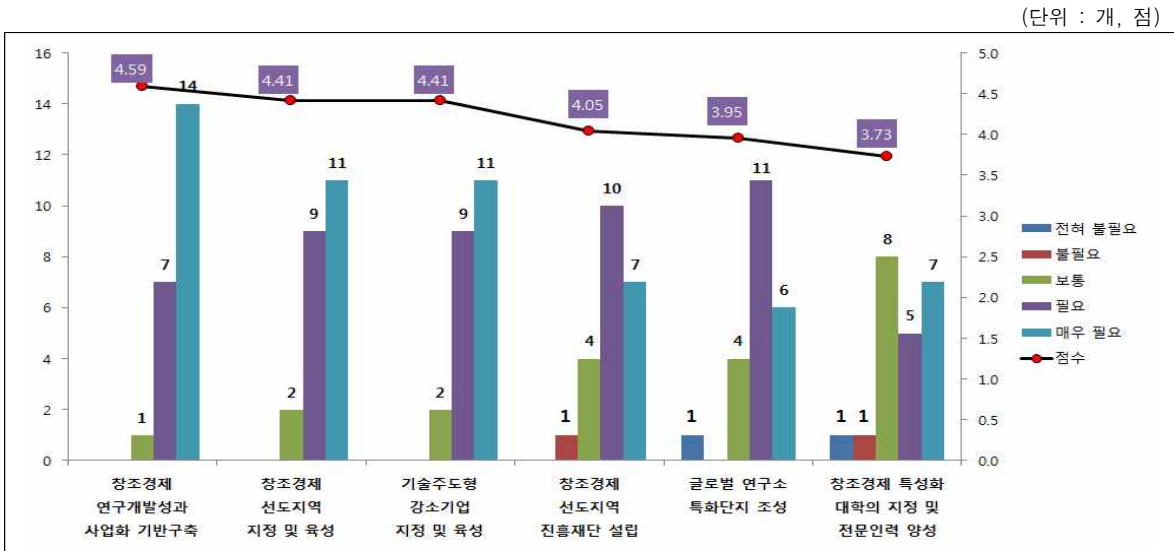


주 1. 무응답 1개

<그림 4-7> 기술주도형 강소기업이 보유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

창조경제 선도지역 조성  
기본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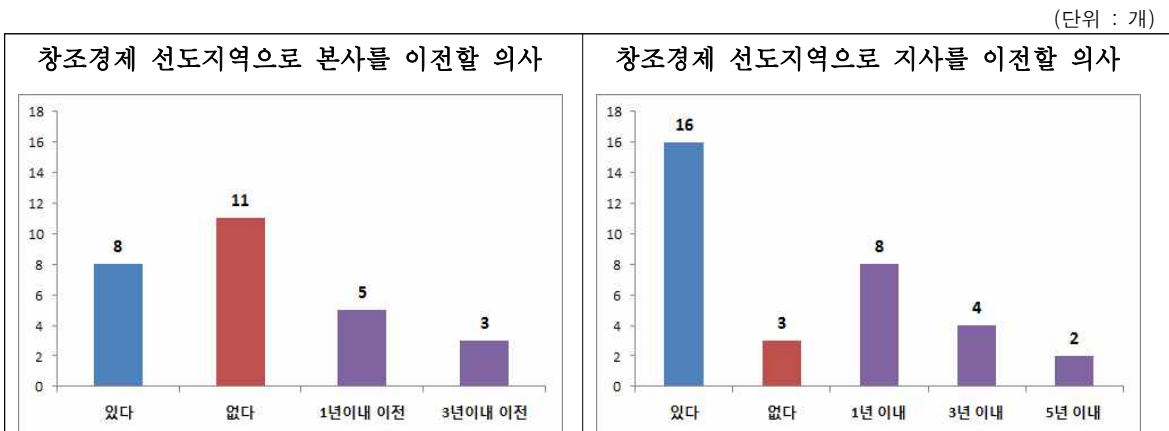
- 창조경제 선도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조경제 연구개발성과 사업화 기반 구축’이 가장 필요함



주 1. 무응답 2개

<그림 4-8> 창조경제 선도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

- 창조경제 선도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할 의사가 있는 기업은 33.3%이며, 지사나 연구소를 이전할 의사가 있는 기업은 66.7%로 본사보다는 지사나 연구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이 더 많음
- 현재 본사 이전 의사가 없지만 시설투자와 해외진출에 대한 용이성 및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지원, POSTECH 학생, 연구원의 공동 연구 지원, 정주환경 개선 등이 이루어지면 본사를 창조경제 선도지역으로 이전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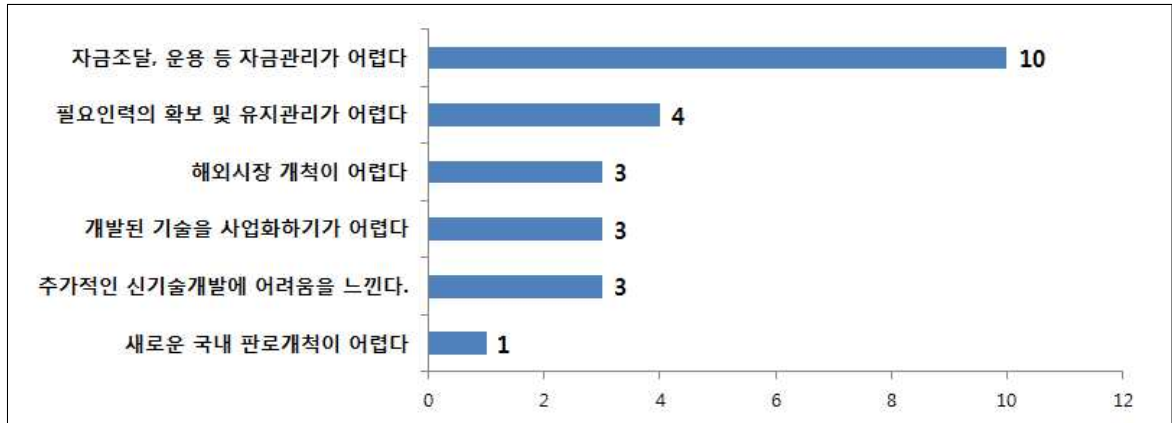


주 1. 본사 이전의사에 대한 문항 무응답 5개, 지사 이전의사에 대한 문항 무응답 2개

### ■ 경영상의 애로사항

- 기업 경영에 있어 자금조달, 운용 등 자금관리 분야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며, 그 다음으로 인력 확보 및 유지 관리에 어려움을 느낌

(단위 : 개)



&lt;그림 4-9&gt; 경영상 애로사항

### 3. 설문조사 결과 종합

- APGC회원사의 대부분이 POSTECH 동문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APGC에 가입
  - POSTECH과의 네트워크가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됨
  - 창조경제 선도지역이 조성되면 POSTECH과의 연계 협력을 지원하는 정책을 개발하여 이를 통해 강소형 기술기업들을 유치
- 대학, 정부기관, 중소벤처기업과의 제휴 및 협력활동이 활발히 진행 중임
  - 제휴 및 협력활동 중 공동기술 및 연구개발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 중임
  - 공동기술 및 연구개발에 있어서의 협력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향후에도 대학, 정부기관, 중소벤처기업 등과의 협력활동 의사가 높은 편임
- 창조경제 선도지역 조성 초기에는 기업의 지사나 연구소를 타깃으로 유치
  - 응답기업의 66.7%가 창조경제 선도지역으로 지사나 연구소를 이전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본사를 이전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33.3%에 불과
  - 본사 이전은 현재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

로 매우 어렵고 중요한 결정이므로 상대적으로 이전시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소 낮은 신규 연구소나 지사를 타깃으로 유치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 지사나 연구소에서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 줌으로써 창조경제 선도지역을 활성화 할 수 있음
- 창조경제 선도지역에 입지한 기업에 대한 경영 자금지원 필요
  - APGC 회원사들은 기업 경영상 자금관리 부분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므로 창조경제 선도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강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하여야 함

# 제5장

## 지역여건 및 잠재력 분석

제1절 연구기반

제2절 산업기반

제3절 정주여건 및 광역교통 인프라



# 제5장 지역여건 및 잠재력 분석

## 제1절 연구기반

### 1. 국가연구개발비 현황

#### 1) 경북 및 포항의 국가연구개발비 현황

- 2011~2013년 경북과 포항의 국가연구개발비는 매년 증가함
  - 경북의 연평균 증가율(2011~2013년) : 11.12%
  - 포항의 연평균 증가율(2011~2013년) : 11.20%
- 경북의 국가연구개발비 중 포항의 국가연구개발비 비중이 50.5%로 높은 비중을 보임
  - 경북의 2013년 국가연구개발비는 6,448억 원, 포항의 2013년 국가연구개발비는 3,255억 원
- 포항은 경북 내에서 높은 연구개발 수준을 보임

<표 5-1> 경북 및 포항의 국가연구개발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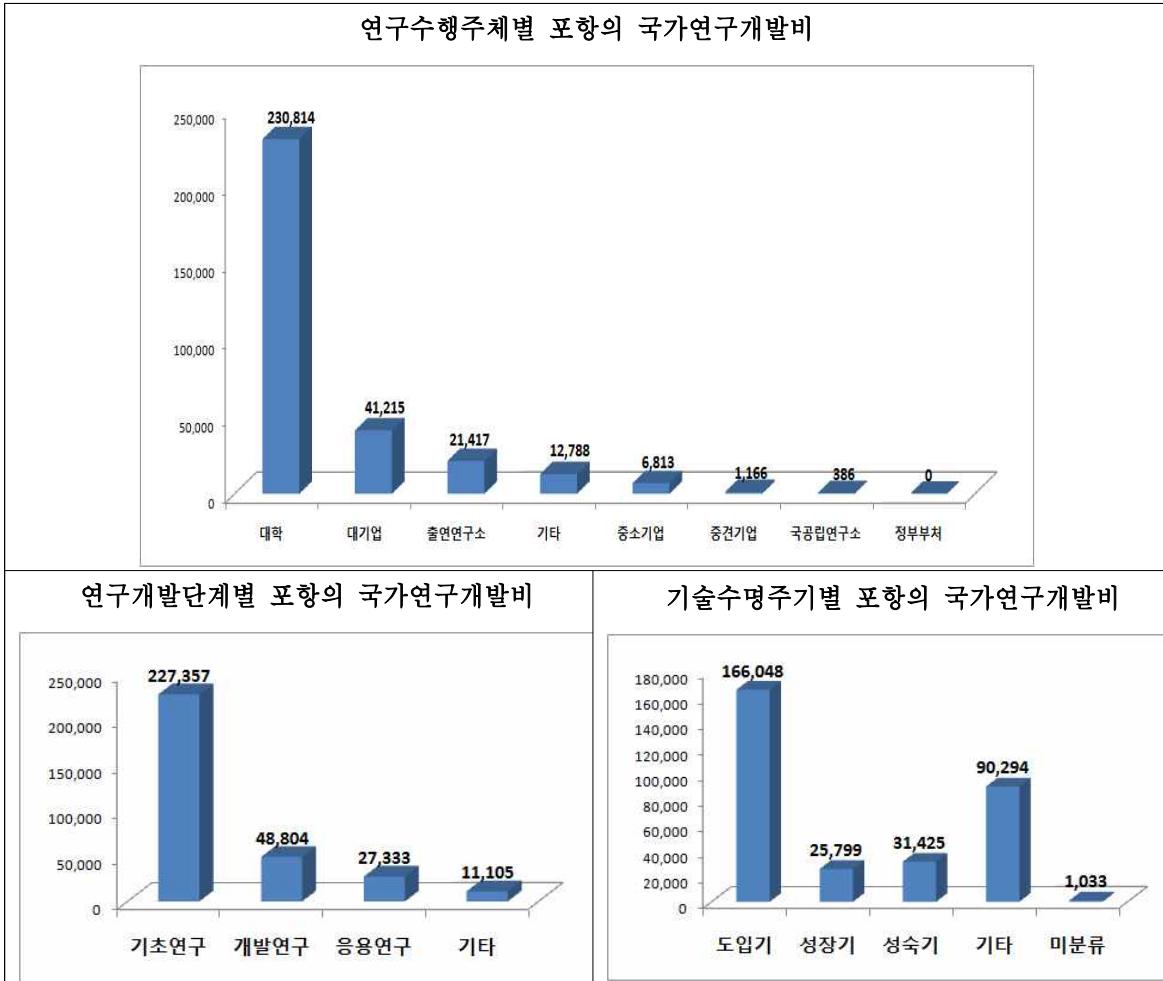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

지역	2011년	2012년	2013년	연평균증가율
경북(A)	522,336	622,907	644,911	11.12
포항(B)	263,274	266,586	325,552	11.20
비율(B/A)	50.40	42.80	50.48	

- 주 1.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 자료를 재가공하여 자체 제작  
 2. 보안과제 연구비는 일반과제가 경북에서 차지하는 연구비 비율에 따라 배분  
 3. 백만원 단위로 환산

- 세부적으로 포항의 국가연구개발비 분포를 살펴보면 연구수행주체별로는 ‘대학’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비가 가장 많으며, 연구개발단계별로는 ‘기초 연구’ 단계의 연구개발비가 가장 많고, 기술수명주기별로는 ‘도입기’의 국가 연구개발비가 가장 많음

(단위 : 백만원)



- 주 1.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 자료를 재가공하여 자체 제작  
 2. 보안과제 연구비 제외  
 3. 백만원 단위로 환산

## 2) 타 지역 대비 포항의 국가연구개발비 현황

- 포항의 국가연구개발비는 광주광역시 대비 87.4%, 인천광역시 대비 81.1%, 울산광역시 대비 174.9%
  - 포항시 325,552백만원, 광주광역시 372,546백만원, 인천광역시 401,393백만원, 울산광역시 186,167백만원
- 포항은 기초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비율의 국가연구개발 과제 수행 중임

(단위 : 백만원)



- 주 1.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 자료를 재가공하여 자체 제작
- 2. 보안과제 연구비는 일반과제가 경북에서 차지하는 연구비 비율에 따라 배분
- 3. 백만원 단위로 환산

<그림 5-1> 주요 도시 국가연구개발비 현황

## 2. 연구개발 인프라

- 포항에는 국제연구소, 대학,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 과학기술연구기관, 기업연구소, 기업지원기관 등 우수한 연구개발 인프라가 집적되어 있음



<그림 5-2> 포항의 연구개발 인프라

## 1) 글로벌 연구기관

### ■ 막스플랑크 한국연구소

- 기초과학 분야 세계 최고의 연구기관으로서 노벨상 사관학교로 불리는 독일 막스플랑크 재단(Max Planck Gesellschaft)과 POSTECH이 공동으로 설립한 연구소로 글로벌 협력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연구 개발(R&D) 허브 구축과 세계적 연구 성과 창출을 위해 2010년 개소
- 2014년까지 아토초 과학, 복합물질 분야에 358억원(한국측 305억원, 독일측 310만 유로) 투자
- 기초에서 산업까지 소재분야의 기초원천 기술 창출을 통해 포항이 우리나라 과학산업 거점이자 세계적 소재분야의 중심지로 도약 가능할 것으로 기대

### ■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

- 이론물리학 분야의 요람으로 불리어지는 국제적인 비정부기구로 현재 13개 회원국이 참여
- 2001년 4월 서울에서 포항으로 센터를 이전함
- 포항지능로봇연구소, 나노기술집적센터 등 연구센터들과 꿈의 장비로 일컬어지는 가속기가 각각 건립되어 있어 기초 이론물리학의 성과가 배가될 것으로 예상

## 2) 대학

### ■ POSTECH

- 국내 최초 민간 주도 연구중심 대학으로 1986년 설립
- 대학 11개 학과 1개 학부, 일반대학원 11개 학과 4개 학부 5개 협동과정, 특수대학원 1개 학과, 전문대학원 3개 학과, 17개 법인연구소, 55개 대학 연구소로 구성
- POSTECH 내에 세계적 수준의 R&D 인프라가 집적
  - 독일 막스플랑크 한국연구소,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 포항가속기연구소, 생명공학연구센터, 나노융합기술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등 위치

- 전문인재 양성과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전문대학원 설치
  - 엔지니어링전문대학원, 철강대학원, 창의IT대학원 등 산업 핵심기술 연구
  - 전문인재 양성 및 산업체 인력 육성

### ■ 한동대학교

- 1944년 설립하였으며, 대학 11개 학부(인문사회계열 5개, 이공학계열 6개), 대학원 13개(일반대학원 7개, 특수대학원 5개, 전문대학원 1개)로 구성
- 학생은 4,300여명(학부생 3,901명, 대학원생 406명)이며, 교직원은 200여명(교원 127명, 직원 78명) 정도임
- 교육중심 특성화대학으로 선택적으로 집중화된 학부 교육을 바탕으로 실용주의적 교육중심대학을 지향하면서 소수 정예의 밀착형 교육을 실시

## 3) 국책연구기관

### ■ 포항가속기연구소

- 범국가적 공동연구시설인 방사광가속기 활용 촉진으로 과학기술의 선진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학제간 연구와 국제 공동연구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
  - 기초연구의 다부문 종합연구화, 대형과제화 요구에 따른 종합 연구기능 수행
- 포항방사광가속기는 성능향상 사업을 통해 2011년 최신형 3세대 방사광가속기(PLS-II) 장치 설치가 완료 되었으며, 2011년 4월 착공한 4세대 방사광가속기가 2015년 9월에 완공될 예정
  - 4세대는 기존 3세대 보다 100억배 밝은 광원을 갖고 펄스폭이 1천배 짧아 살아있는 세포의 동적현상을 실시간으로 관측할 수 있음
  - 4세대 가속기를 이용하면 단백질을 결정화하지 않고도 단분자 단백질 등을 분석할 수 있게 돼 신약개발에 획기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신물질·신소재 분석을 통해 원천기술 확보 뿐 아니라 IT·반도체 소자산업과 의료분야 등 다양한 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시설 현황
  - 건설기간 : 1988년 4월~1994년 12월

- 소요예산 : 1,500억 원(정부 : 596, POSCO : 864, 기타 : 40)
- 규모 : 대지면적 126,800m<sup>2</sup>, 건물면적 45,377m<sup>2</sup>

### ■ 한국로봇융합연구원

- 2005년 포항지능로봇연구소로 출범하여 2012년 3월 산업기술촉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의 로봇분야 국내 최초 전문생산기술연구원으로 설립 전환
  - 주요 사업은 로봇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사업,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기업체 기술이전, 로봇 실증테스트 지원, 교육 훈련 및 기술지도 등 기업지원 사업, 과학문화 확산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임
- 2012년 수중건설로봇 기술개발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500억 원 이상을 확보하였으며, 주요 상용화 기술 개발 실적으로는 유리창 청소로봇, 수중청소로봇, 승마로봇, 간호서비스 로봇, 수중탐사로봇 등이 있음

### ■ 기초과학연구원 캠퍼스연구단

- DUP연합지역에 10개 캠퍼스 연구단 설치계획에 따라 POSTECH의 우수한 연구역량을 기초로 하여 4개의 연구단을 유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초과학분야를 육성하고 나아가 산업화 및 신성동력을 확보하고자 함
  - 수학분야 : 기하학수리물리 연구단
  - 물리분야 : 원자제어 저차원 전자계 연구단
  - 화학분야 : 복잡계 자기조립 연구단
  - 생명과학 : 면역 미생물 공생연구단
- 사업비는 1조 5천억원이며, 이 사업은 2011~2017년까지 7년간 진행됨

###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항분원

- 2012년 6월 설립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16,650백만원임
- 연구분야는 석유가스 자원조사, 가스하이드레이트 자원조사, 지구환경변화, 심부지열, 온실가스 저장, 광물자원 부가가치 연구 등임

#### 4) 기타 연구기관

##### ■ 나노융합기술원

- 2004년 POSTECH이 주관하여 정부, 지자체, 민간기관 등 136개 산학연관 컨소시엄으로 설립된 포항나노기술집적센터로 출범하였으며, 2013년 9월 나노융합기술원으로 명칭 변경
  - 나노기술 산업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나노 소재 및 재료 분야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며, 연구개발, 산업화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
- 1단계 구축사업(2004~2009년)과 2단계 활용사업(2010~2014년)을 추진
  - 1단계 구축사업은 중앙정부, 지자체, TP, 민간으로부터 1,129억원을 지원받아 진행되었으며, 시설과 장비도입을 완료하여 나노 인프라 거점 확보
  - 2단계 활용사업은 연구개발(20개 과제), 장비서비스(약 40억원), 인력양성 등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후 국가 NINT 2020계획에 따라 3단계 전략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 지역 부품소재 중소기업들을 고도화 및 전문화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글로벌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하여 2007년 8월 설립
  - 출연기관으로는 구 지식경제부, 경상북도, 포항시, POSCO와 조선내화 등 9개의 지역 중소기업이 출연하여 재단 설립
  - 2006년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 지역혁신기반구축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시험 및 분석장비 지원사업, 교육/훈련사업, 네트워킹사업, 공동연구 사업 등임
- 주요사업으로는 현장방문지원사업 연구장비 공동이용사업, 인력양성사업, 산연 공동 R&D사업 등이 있으며, 지역 신성장 산업 발굴을 위하여 연료전지와 관련된 기반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주요 연구장비로는 지역 특화분야인 표면코팅, 철강가공, 설비부품, 시험분석 분야를 중심으로 약 250여점 70억원의 장비를 구축하고 있으며, 지역 산학연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추진 중에 있음

- 2012년 KOLAS로부터 '국제공인 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아 역학시험, 화학시험 2개 분야 총 5개 규격에 대한 국제공인 시험평가 사업을 진행

### ■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 POSCO와 국가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POSCO가 전액 출연하여 설립한 실용화 기술 전문연구기관으로 철강을 비롯한 각종 소재와 환경에너지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연구기관으로 성장하였음
- 1977년 'POSCO 부설 기술연구소'로 출범하였으며, 1987년 '재단법인 산업과학 기술연구소'로 승격되었으며, 1996년 현재의 명칭인 '포항산업과학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 대표적인 연구결과물로는 세계 최초로 상업화한 차세대 제철기술 FINEX 공법, 쇳물에서 제품생산까지 연속적으로 진행하는 Strip Casting 공법, 마그네슘 판매양산 기술 등이 있음.
- 2011년 RIST에서 수행한 과제(595건)를 살펴보면, POSCO 234건(39%), 정부 176건(30%), 기관 자율과제 141건(24%), POSCO 그룹사 및 일반산업체 44건(7%)임
- POSCO 관련 연구과제가 대다수를 차지하며, 최근 친환경 에너지 관련 연구가 다수 진행되고 있음

### ■ 생명공학센터

- 2000년 POSTECH 생명공학 분야의 우수한 연구인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첨단 연구를 통한 국가 산업과 인류사회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POSCO와 함께 설립한 바이오 기술 전문연구기관
- 중점연구분야는 분자의약 분야, 식물바이오텍 분야, 나노바이오텍 분야임
- 분자의약 분야 : B/C형 간염, HIV/AIDS, 새로운 기능을 가진 면역 조절, 새로운 개념의 당뇨병과 비만 컨트롤러와 알츠하이머 같은 뇌질환에 대한 면역치료백신 개발
- 식물바이오텍 분야 : 바이오 매스 생산 및 작물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cytokinin, 옥신, brassinosteroid, 아브시 신산 및 살리실

산과 같은 다양한 phytohormones의 신호 네트워크에 중점을 둠

- 나노바이오텍 분야 : 바이오-AFM 연구팀은 단일 생분자 거동을 분석하고, 펩토 몰 농도 수준 아래로 DNA, RNA, 단백질 바이오 마커 검출에 관해 연구하며, 바이오 분석 기술팀은 생물 표본 분석을 위한 마이크로 칩과 바이오 센서 개발 및 단일 세포, 단분자의 분석에 관해 연구하며, 나노 바이오 촉매팀은 새로운 합성 촉매 개발을 연구함

### ■ 정보통신연구소

- 1991년 정보통신 분야의 첨단연구 지원을 위해 설립된 IT부문 중앙연구소로서, IT신기술 연구개발에 주력하는 산학연 협력체의 롤 모델 수립을 위해 기반기술 및 핵심기술의 확보, 세계를 선도하는 연구인력의 양성, 산업에 필요한 신기술의 개발 및 이전을 추진하고 있음
- 중점연구분야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보안, 차세대 네트워크, 지능형 소프트웨어, IT SoC임
  -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 ubiquitous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적인 핵심 기반 기술이므로 지속적인 기술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지역 산업계의 세계적인 기술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자 함
  - 보안 : 전자전기, 컴퓨터공학, 수학과의 연구자들로 구성된 정보 보호 연구 그룹에서 연구를 진행 중이며, 현재 정보보호 분야 관련 연구실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로는 암호학, 보안 프로토콜, 채널코딩, 시스템 보안, 네트워크 보안, 자료 보호 등이 있음
  - 차세대 네트워크 : 무선 네트워크에서의 통신을 바탕으로 하여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며 효율적인 프로토콜 및 시스템 개발, 4G 네트워크, 휴대 인터넷, RFID, 광대역 무선 네트워크 등의 분야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 IT Soc : 아날로그, 디지털, RF 집적회로 설계기술, CAD를 이용한 SoC 구현방법론과 이를 디지털 TV, 영상 및 speech 신호처리, XDSL, CDMA, RDID, Bluetooth, 코딩등의 유선 및 무선 통신시스템에 적용하는 연구 등이 진행 중임

### ■ 미래IT융합연구원

- 'IT명품인재양성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 설립되었으며 한국뉴욕주립대와 연계하여 10년간 총 350여명의 IT융합 분야 창의인재를 양성할 계획임

- IT명품인재양성사업 : 대학에 IT융합 분야 연구소를 설치하고 해당 연구소를 중심으로 기존 공학교육의 틀을 벗어나 연구 중심의 교육을 추진하여 미래 시대가 원하는 창의적 융합인재 육성
- 7개 핵심 연구분야는 휴먼웨어 컴퓨팅, 지능형 로봇, U-헬스, 지능형 융합 자동차, IT나노융합 디바이스, Life Dynamics(도시·에너지·식량 정보 불균형에 대한 솔루션 연구), HIT i-school(이미지 시각화 기술 및 상상력 디자인 연구)임

### ■ 포스코기술연구소

- 1976년 1월 포항제철 부설연구소로 발족한 이래 POSCO의 첨단기술 개발의 첨병 역할을 담당
- 철강 생산의 패러다임을 바꿔 놓을 것으로 기대되는 FINEX와 Strip Casting을 비롯해 많은 첨단 제품생산 기술 연구

### ■ 포항테크노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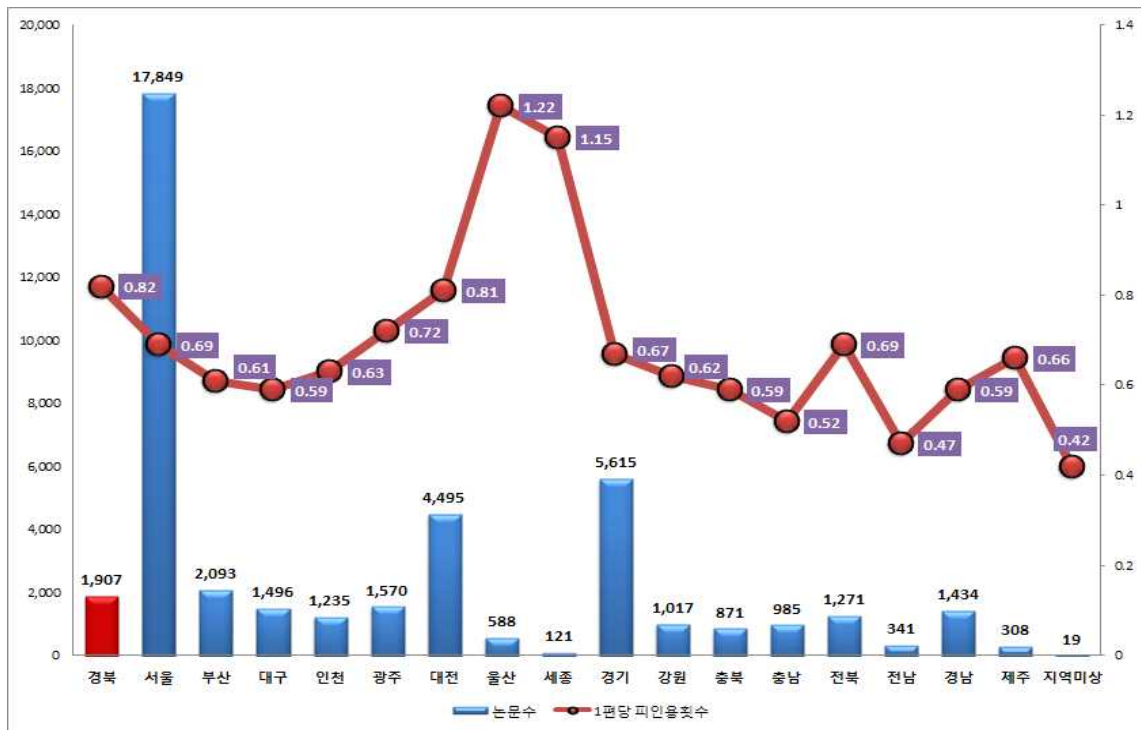
-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하여 2000년 3월 설립되었으며,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을 통한 지역산업의 기술혁신 촉진 및 기술집약형 기업 육성, 지역 산학연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산업기술의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
- 창업보육사업, 연구개발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장비이용사업, 교육훈련사업, 네트워킹 사업을 수행
- 지역의 창조경제 기반조성을 위하여 경북SW융합사업단을 설치하였으며, 중기청의 지원으로 1인 창조비즈니스 센터를 설립
- 지역혁신거점기관으로서의 예산의 75% 이상을 기업지원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설립이후 현재까지 재정자립도 100%이상을 유지
- 지역의 사업육성 및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정책/전략 개발을 위하여 포항정책연구소를 2010년부터 설립하여 운영중

### 3. 연구 역량

#### 1) 발표논문수 및 논문1편당 피인용횟수

- 경북에서 발표되는 논문 수는 1,907편으로 전국 5위, 9개도 중 2위를 차지
- 논문 1편당 피인용횟수는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써 경북에서 발표되는 논문의 1편당 피인용횟수는 0.82회로 전국 3위, 9개도 중 1위를 차지
  - 최근 10년간(2004~2013년) 논문 1편당 피인용횟수는 경북(10.05회), 서울(9.41회), 광주(9.28회), 대전(8.79회), 대구(8.47회) 순임
- 경북에서 해당 분야를 선도해 나가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논문의 질적 수준 또한 매우 높음

(단위 : 편,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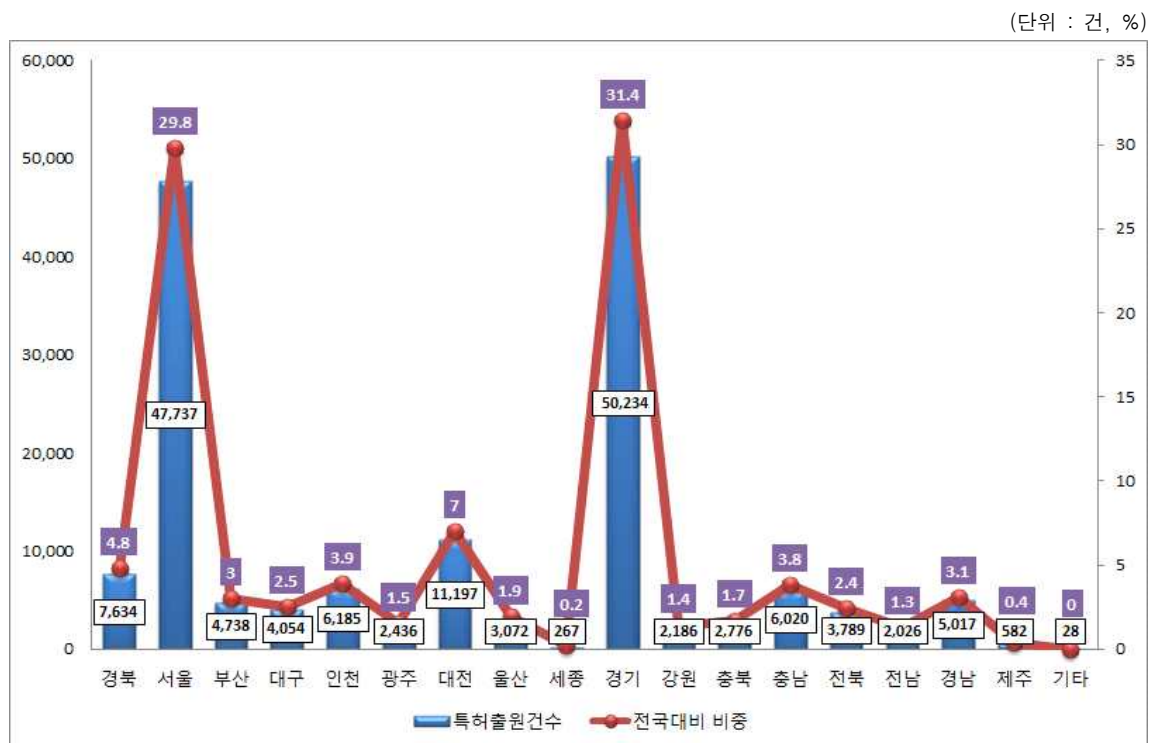


주 : 주저자 기준, 논문수 대비 점유율은 주저자 기준 발표 논문 43,215편에 대한 점유율임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2014.012.19, 13년도 우리나라 과학기술논문(SCI) 분석 결과

<그림 5-3> 지역별 발표논문수 및 1편당 피인용횟수

## 2) 특허출원 건수

- 경북의 특허출원건수는 7,634건으로 전국 4위, 9개도 중 2위를 차지
  - 경기(1위/50,234건), 서울(2위/47,737건), 대전(3위/11,197건), 경북(4위/7,634건), 충남(5위/6,020건)
- 경북에서 혁신적인 연구개발활동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주 1. 제1출원인의 주소지 기준, 국내출원에 한함  
 2. 기타는 제1출원인의 국적이 대한민국이면서 주소지(거주지)가 대한민국이 아닌 교포 등 포함  
 자료 : 통계청, 2013, 지식재산통계연보

<그림 5-4> 지역별 특허출원 건수 및 비중

## 3) 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지표

### ■ 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 국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별 경쟁력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 실시
  - 정부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종합적으로 진단·평가하기 위해 200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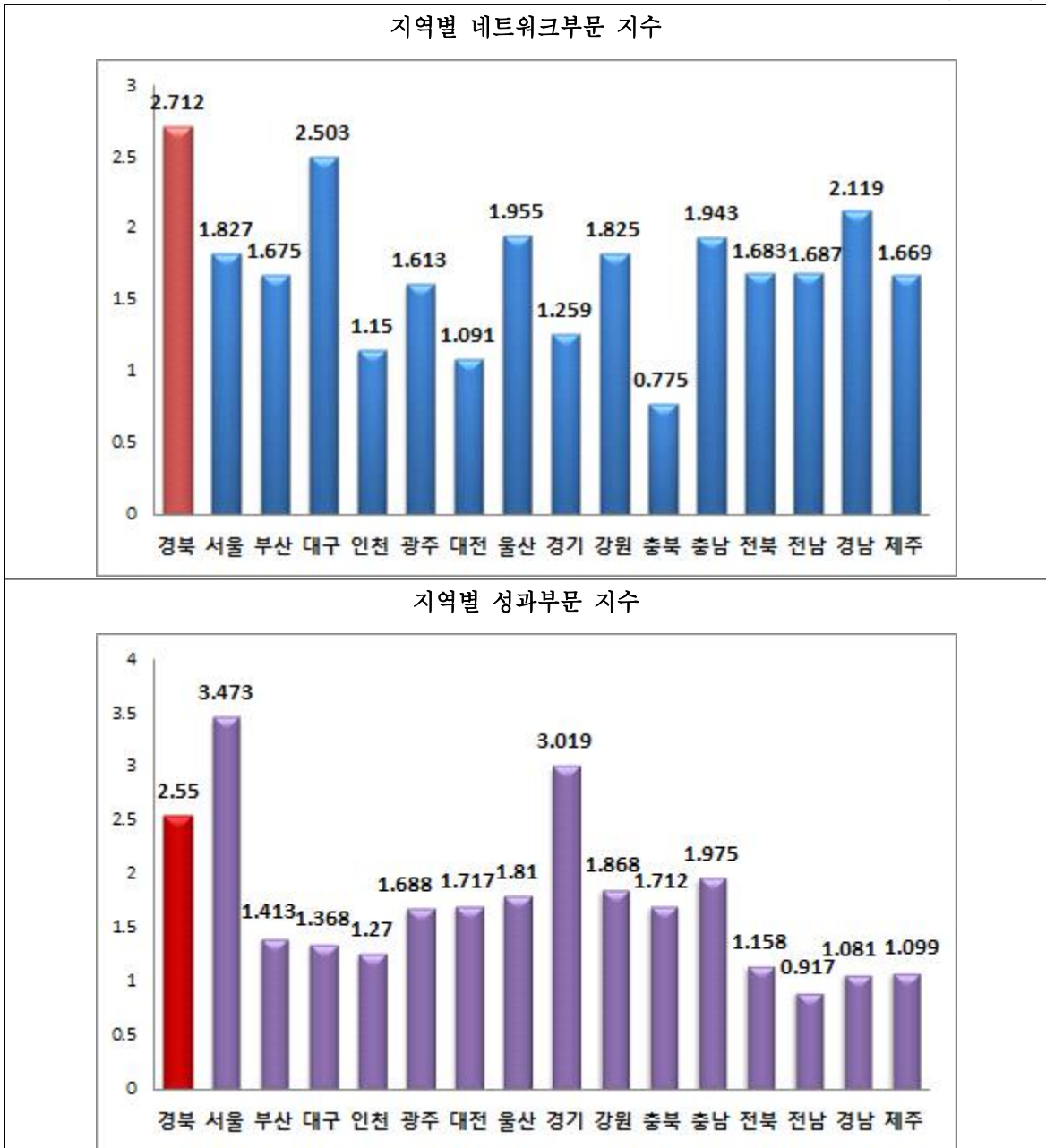
부터 OECD 30개국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국가과학 혁신역량평가 방법론을 응용해 평가

- 지역별 강·약점을 파악함으로써 과학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효율적 R&D 투자방향 등을 결정
- 평가지표는 ▲자원(인적자원, 조직, 지식자원) ▲환경(지원제도, 물적 인프라, 문화) ▲네트워크(산학연 협력, 기업간 협력, 정부간 협력, 국제협력) ▲활동(연구개발투자, 창업활동)▲성과(경제적성과, 지식창출)의 5개 부문과 31개의 세부지표로 구성
- 경북은 네트워크 부문<sup>8)</sup>에서 전국 1위로 산학연 협력, 기업/정부 간 협력, 국제 협력 역량이 뛰어난
  - 네트워크 부문 순위 및 점수 : 경북(1위/2.712점), 대구(2위/2.503점), 경남(3위/2.119점), 울산(4위/1.955점), 충남(5위/1.943점)
  - 경북은 산학연 협력 분야의 세부 항목인 연구원 1인당 산학연 협력 국내 특허등록 수(건) 전국 1위, 기업/정부 간 협력 분야의 세부 항목인 전체 정부연구개발사업비 중 기업 간 협력 정부연구개발사업비 비중이 전국 3위, 국제협력 분야의 세부 항목인 연구원 1인당 해외 협력 국내 특허등록 수(건)가 전국 1위
- 경북은 성과 부문<sup>9)</sup>에서 전국 3위로 경제적 성과, 지식 창출 역량이 높음
  - 성과 부문 순위 및 점수 : 서울(1위/3.473점), 경기(2위/3.019점), 경북(3위/2.550점), 충남(4위/1.975점), 강원(5위/1.868점)
  - 경북은 경제적 성과 분야의 세부 항목인 제조업 생산액 대비 하이테크산업 생산액 비중이 전국 1위, 지식창출 분야의 세부 항목인 논문 1편당 평균 피인용 횟수가 전국 2위

8) 네트워크부문 지표: 산학연 협력(연구원 1인당 산학연협력 과학기술논문 수, 연구원 1인당 산학연 협력 국내 특허등록 수, 전체 정부연구개발사업비 중 산학연협력 정부연구개발사업비 비중), 기업/정부간 협력(전체 정부연구개발사업비 중 기업간 협력 정부연구개발사업비 비중, 전체 정부연구개발사업비 대비 지자체대응투자 비중), 국제협력(전체 정부연구개발사업비 중 해외 협력 정부연구개발사업비 비중, 연구원 1인당 해외협력 과학기술논문 수, 연구원 1인당 해외 협력 국내 특허등록 수)

9) 성과부문 지표 : 경제적 성과(연구 1인당 총부가가치, 정부연구개발사업 당해 연도 기술료 징수액, 기술수출액, 제조업생산액 대비 하이테크산업 생산액 비중), 지식창출(연간 과학기술논문 수, 연간 국내 특허등록 수, 연간 R&D 투자 대비 과학기술논문 수, 연간 R&D 투자 대비 특허등록 수, 연구원 1인당 과학기술 논문 수, 논문 1편당 평균 피인용 횟수)

(단위 : 점)



자료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3, 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그림 5-5> 지역별 네트워크부문 및 성과부문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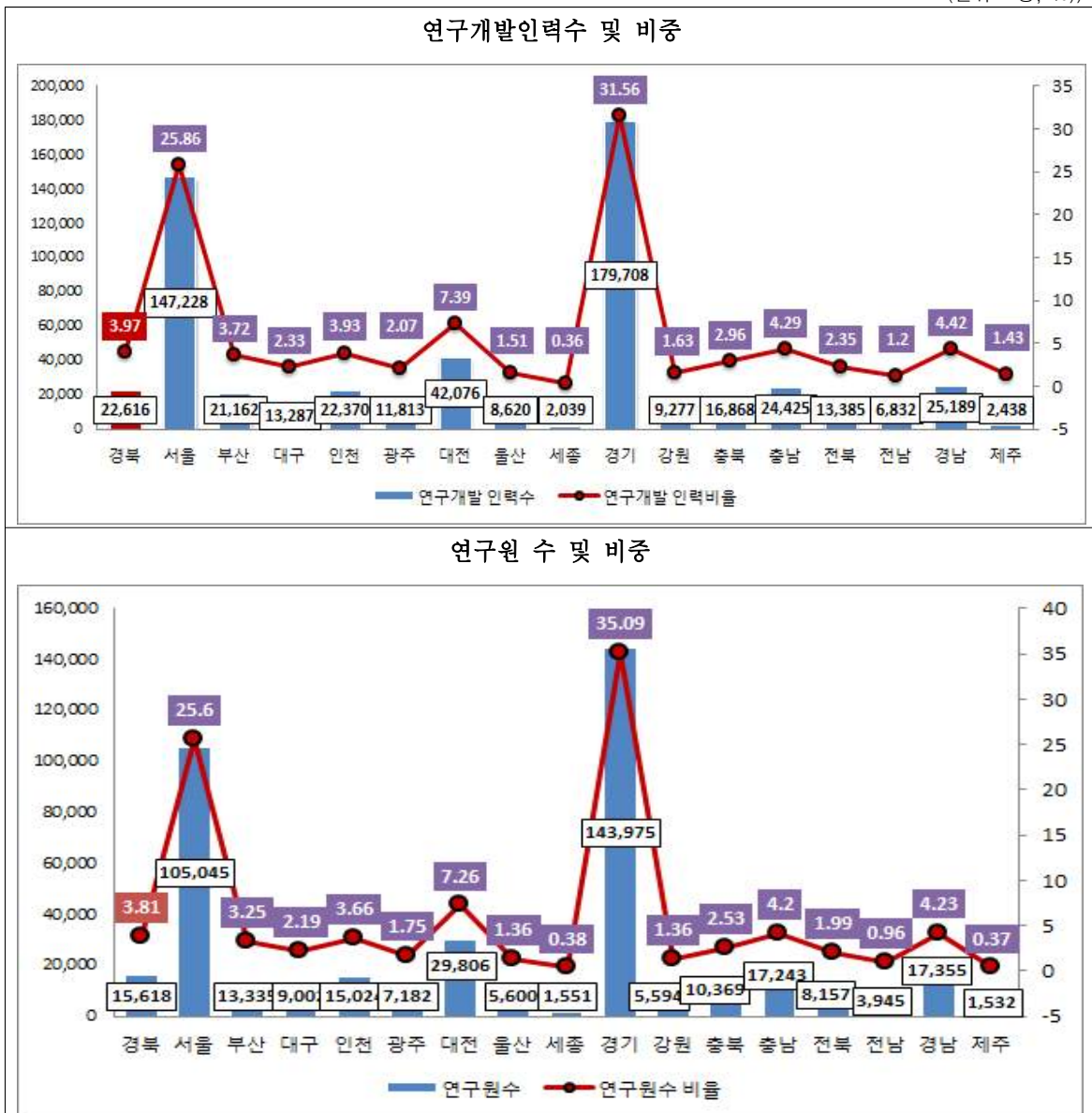
### ■ 연구개발 인력 및 연구원 수

- 경북의 연구개발인력수는 22,616명으로 전국 6위, 9개도 중 4위를 차지
  - 경기(1위/179,708명), 서울(2위/147,228명), 대전(3위/42,076명), 경남(4위)

/25,189명), 충남(5위/24,425명), 경북(6위/22,616명)

- 경북의 연구원 수는 15,618명으로 전국 6위, 9개도 中 4위를 차지
  - 경기(1위/143,975명), 서울(2위/105,045명), 대전(3위/29,806명), 경남(4위/17,355명), 충남(5위/17,243명), 경북(6위/15,618명)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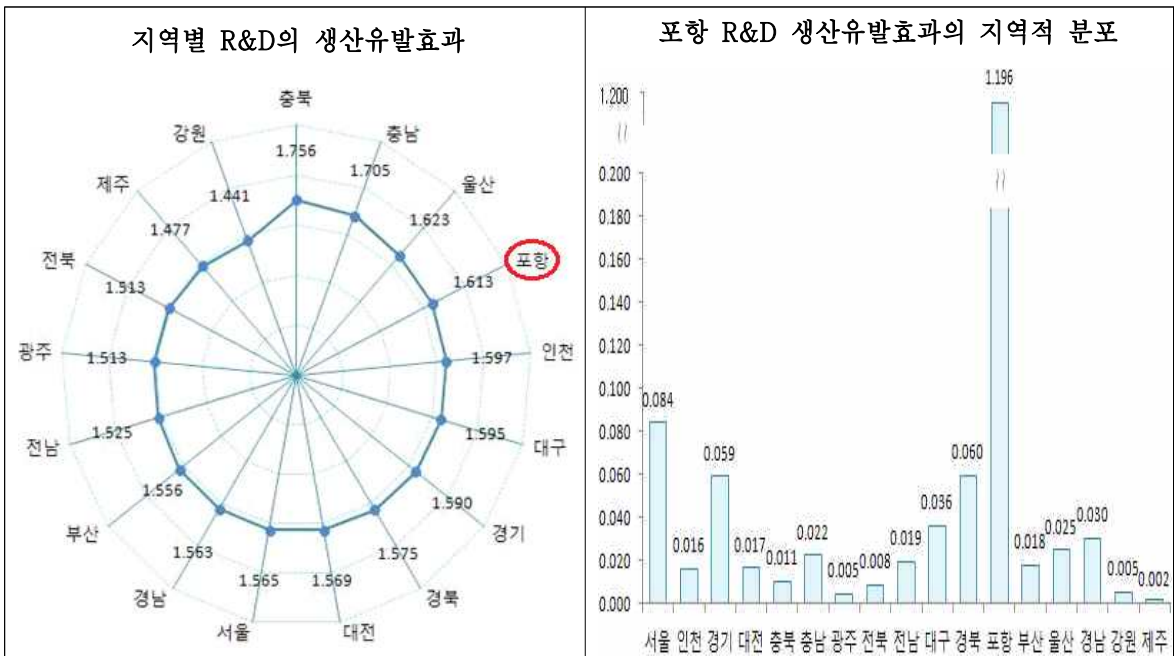


주 : 연구개발인력은 2013년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인력  
 자료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3, 2013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그림 5-6> 지역별 연구개발인력 및 연구원 수

#### 4) 포항 R&D의 생산유발효과<sup>10)</sup>

- 포항 R&D 생산유발효과는 1.613으로 전국 16개 광역시도와 기초자치단체 인 포항 1개를 포함해서 전국 4위<sup>11)</sup>
- 포항 R&D는 포항을 제외할 경우 수도권과 영남권의 생산을 크게 유발시킴



<그림 5-7> R&D의 생산유발효과

- 포항의 연구기관과 금융 및 보험 등 생산자서비스와 음식점 및 숙박과 육상운송서비스 등 서비스 부문과 포항의 주력 산업인 제1차 금속제품 등의 생산을 크게 유발시킴
- 서울의 서비스 부문과 경북의 공산품, 울산의 기초소재제품 등의 생산을 크게 유발시킴

10) 한국은행(2013), 「포항지역 연구개발의 경제효과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11) 충북 1.756(1위), 충남 1.705(2위), 울산 1.623(3위)로 이들 지역의 생산유발효과가 높은 것은 R&D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한 국산중간투입률이 높은 것이 주 요인임.

\* 국산중간투입률=국산중간투입액/총투입액

## 제2절 산업 기반

### 1. 일반 현황

#### ■ 인구 및 가구변화 추이

- 1955년 4만6천여 명에 불과하던 인구가 포항항 국제개항장 지정, 도입양곡하역, 해병대 주둔 등으로 1968년에 7만명(71,680명)을 넘어섬
- 1970년 4월 1일 포항제철이 착공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1973년에는 10만명(108,854명), 1980년에는 20만명(201,355명), 1988년에는 30만명(301,894명)으로 크게 증가하여 경북 최대의 도시로 부상
- 포항제철이 들어선 후 10년간은 매년 1만5천~2만명씩 늘어나 연평균 증가율이 10%선에 이르렀으나, 1990년대로 들어서 인구증가가 둔화되기 시작
- 1991년 이후 3년간 연속 2% 안팎의 증가율에 머무르다 1995. 1. 1 영일군과 통합되면서 당시 인구는 507,207명
- 그 이후 매년 소폭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오다가 2001년부터 약간 감소 또는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었으며, 2007년을 기점으로 반등하여 다시 약증가세로 전환기를 맞고 있음

#### ■ 세대 및 인구변화 현황

- 인구(2014년말 기준)는 524,276명으로 지난 19년간 연평균 0.01%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어 거의 정체 수준
  - 고령화율은 11.8%로 2000년대 중반부터 고령화 사회로 진입중임
  - 가구수는 1995년 150,762가구에서 2014년 207,525가구로 증가하여 가구당 인구가 3.39명에서 2.5명으로 낮아져 급격한 핵가족화 현상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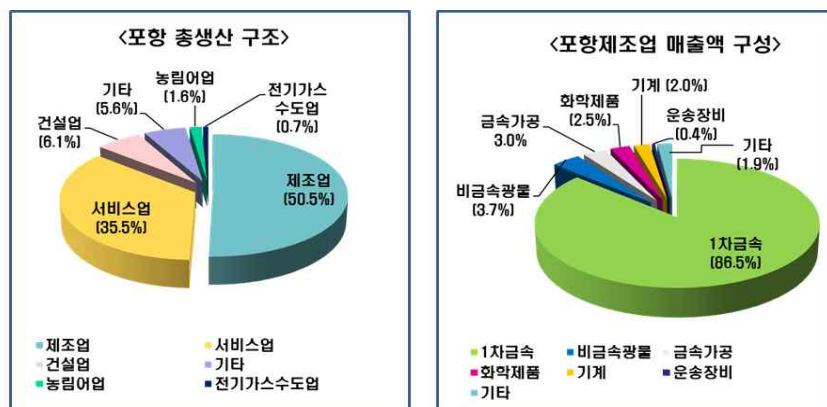
## 2. 산업 현황

### ■ 지역내총생산(GRDP)

- 2011년 포항시의 지역총생산액은 17조 409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059억원(2.9%) 감소(경상북도 전체 생산액 21%)
- 산업별로는 포항의 GRDP 상승을 이끌어 온 철강제품의 생산 감소로 제조업 생산이 전년도에 비해 6% 감소하여 전체 생산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설업 또한 전년도 대비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산업구조는 제조업 비중이 48%로 전년도에 비해 1.6% 감소하였고 교육, 예술, 스포츠, 보건복지 등 서비스업은 전년도에 비해 증가
- 경북 제1의 도시인 포항시의 지역 내 총생산액은 2002년 이후 구미시보다 작아졌으며, 이후 그 격차는 더욱 커짐(2011년 현재 구미의 66% 수준)

### ■ 포항 산업구조

- 포항의 전반적 산업구조를 볼 때, 철강산업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단일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 2011년 기준 포항의 전반적 산업구조는 제조업이 50.5%로 가장 높고, 서비스업이 35.5%로 그 다음을 차지
  - 제조업 중에서도 1차금속이 86.5%로 가장 높고, 그외 비금속광물(3.7%), 금속가공(3.0%), 화학제품(2.5%) 순으로 조사



\* 포항 총생산 구조는 2011년도 GRDP 기준

자료 : 경상북도 통계연보, 2012.

<그림 5-8> 포항시 산업구조 및 제조업 현황

- 포항의 전반적 산업구조는 전형적 제조업 도시로서 서비스산업이 전반적으로 영세한 것으로 조사
  - 포항 전체산업별 현황을 보면 사업체수 기준으로 도·소매업(27.5%)이 가장 높고, 종사자수 기준으로 제조업(20.8)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 포항의 철강산업은 해외에서 원자재를 100% 수입하여 철강을 생산한 후 국내에서는 포항지역 건설업종 및 국내 여타지역의 자동차, 조선, 건설업종에 공급하고 나머지는 해외에 수출하는 구조

<표 5-2> 포항 전체 산업별 현황

산업분류	사업체수	구성비	종사자수	구성비
제조업	2,359	6.1	39,347	20.8
도매 및 소매업	10,576	27.5	26,505	14.0
숙박 및 음식점업	8,886	23.1	21,229	11.2
건설업	1,381	3.6	14,806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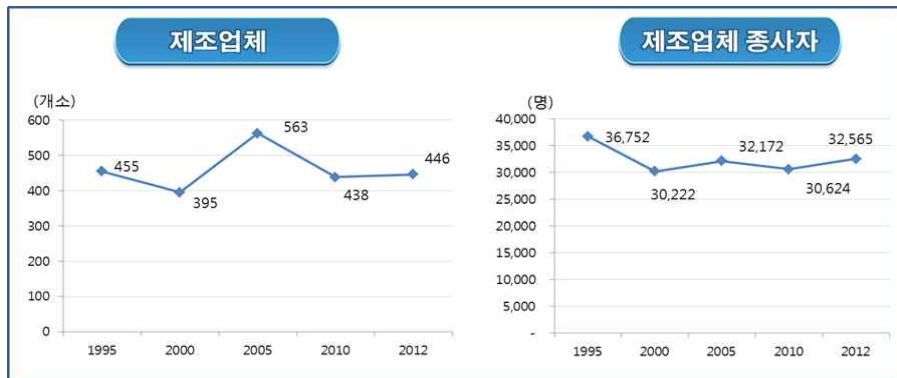
자료 : 포항시, 사업체조사보고서, 2013.



### ■ 포항 기업체 현황

- 제조업체 및 종사자수는 전반적으로 감소 내지 정체
  - 제조업체수 : 455개(1995) → 446개(2012)    종사자수 : 36,752명(1995) → 32,562명(2012)
- 여전히 높은 1차 금속제조업 생산 비중 : 89.0%(1995) → 86.4%(2012)

창조경제 선도지역 조성  
기본계획 수립



자료 : 포항시, 사업체조사보고서, 2013.

<그림 5-9> 포항시 제조업체 및 종사자수 현황

- 포항시 전체 사업체 수는 중소기업청 사업체 조사 결과(2012)로 볼 때, 2014년 포항시 전체 중소 기업수는 3,300여개로 추정되며, 2013년 통계청 사업체 조사 기준으로 볼 때, 포항시 전체 사업체수(1인 이상)는 39,424개로 조사

<표 5-3> 포항 대·중소기업 현황

전체	중기업	소상공인	소기업	대기업
33,351	1,049	29,989	2,281	32

자료 : 중소기업청,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 현황, 2012.

<표 5-4> 포항 업종별 기업 현황

전체사업체수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일반 서비스업
39,424	2,397	1,494	881	34,652

자료 : 포항시, 사업체조사보고서, 2013.

- 포항시 R&D기관의 창업보육 현황을 보면, 포항 TP가 186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한동대(26개), 포스텍(24개) 순으로 조사

<표 5-5> 포항 R&D기관 창업보육 현황

구분	R&D 기관 및 APGC(포스텍 동문기업 협회)							대학교		
	포항 TP	POMIA	KIRO	나노 융합	APGCLab 기술원	RIST	생명공학 연구센터	포스텍	한동대	포항대
전체	186	6	3	10	13	4	8	24	26	18
입주	166	3	3	3	5	4	6	12	24	15

자료 : 포항시, 창조도시포항 미래발전전략, 2014.

■ 포항 산업단지 현황

○ 2012년말 현재 포항은 국가산업단지 2개(포항국가산업단지, 포항블루밸리), 지방산업단지 9개, 농공단지 1개 등 총 12개가 지정 및 조성

- 이 중 포항블루밸리,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영일만항배후단지, 포항경제자유구역 등 5개의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가 조성 중신흥, 구룡포 등 전체 5개의 민간산업단지가 추진 중



<표 5-6> 포항 산업단지 조성 현황(완료 단지)

구 분		면적(천 ㎡)	입주사
합 계		24,561	384
소 계		22,438	366
POSCO		9,070	1
제1단지		3,930	78
제2단지		3,996	99
제3단지		2,611	72
제4단지		2,047	90
청림지구		588	4
청하농공단지		196	22
소 계		2,123	18
영일만 일반산업 단지	1산단	964	7
	2산단	719	6
	3산단	195	-
	용한지구	245	5

자료 : 포항시, 창조도시포항 미래발전전략, 2014.

<표 5-7> 포항 산업단지 조성 현황(추진중 단지)

구 분	면적(천㎡)	총사업비(억원)	사업기간	
합 계	20,104	33,263		
포항 블루밸리	6,119	7,360	'09~'19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	4,216	9,295	'08~'18	
영일만항배 후단지	1,264	1,088	'12~'20	
경제자유구역	3,756	6,426	'08~'20	
민간산단	신흥	112	128	'10~'16
	구룡포	995	1,370	'10~'16
	광명	728	1,356	'10~'15
	그린	871	1,207	'13~'16
	미남	384	420	미정

자료 : 포항시, 창조도시포항 미래발전전략, 2014.

### 3. 산업 발전방향

#### ○ 한국 산업화를 선도한 도시

- 철강산업을 주력업종으로 활발한 경제활동을 통해 국가경제에 중추적인 역할 수행
- 1967~1972년 포항철강단지 조성 → 세계 4강 철강강국, 중공업 발전 기반
- ※ 생산 16조원, 수출 40억불(전국 수출의 0.7%) - '13년 기준
- 자본과 기술이 전무한 황무지에서 POSCO 창업 → 영일만의 기적

#### ○ 글로벌 환경 변화와 경제적 여건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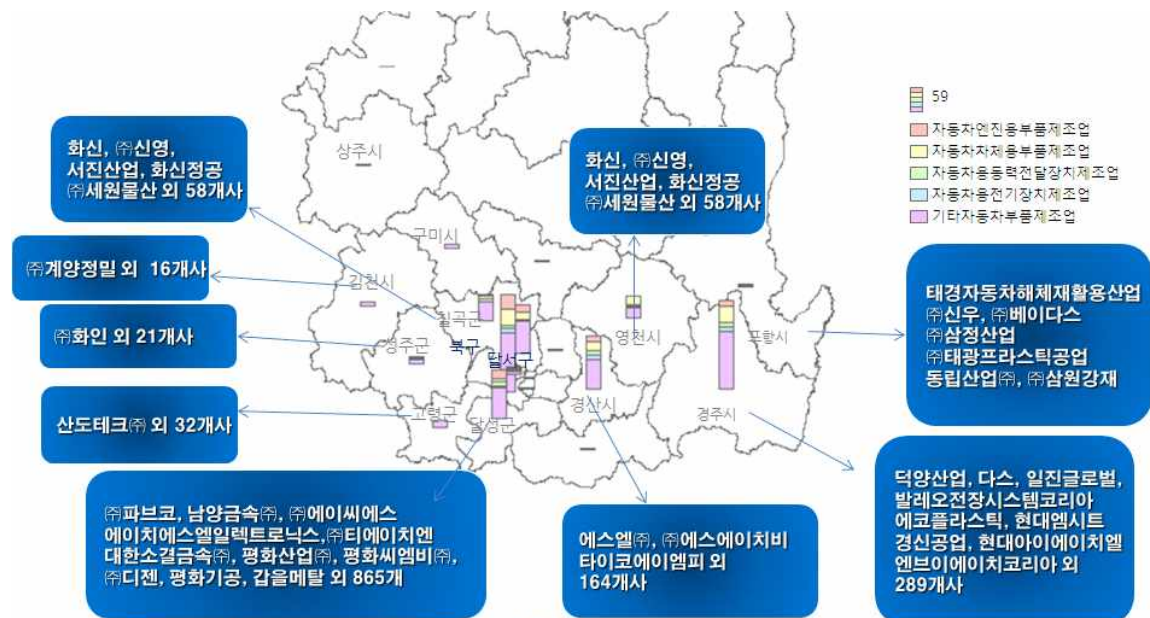
- 글로벌 경제위기와 신흥 산업국가의 등장으로 철강산업 성장 한계에 따른 지역 경제 장기 침체
- 변화를 통한 새로운 도약 요구 :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 ○ 포스트 철강시대를 준비하고, 새로운 신성장 산업 육성 필요

- 글로벌경제성장 모델도시 창출을 위해 철강산업의 고도화와 더불어 국제교역 및 차세대 성장엔진 산업의 집중 육성으로 지역산업구조의 다각화 및 기업하기 좋은 도시기반조성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음
- 지역의 우수한 대학, R&D 인프라, 대구경북 유일의 무역항인 영일만항, 수려한 해양관광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발전전략 필요

#### ○ 철강 위주의 단선적 산업구조를 다각화

- 포항시는 국내 산업의 근간을 담당하고 있는 POSCO를 비롯한 철강산업 단지 내 우량 기업들로 인하여 타 지역 어느 곳 보다 탄탄한 산업기반이 구축되어 있어 생산과 소비의 균형이 어느 정도 잘 이루어져 있음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POSCO 중심의 철강산업에 더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성장 동력을 더하여 외부환경의 변화에 흔들림 없는 도시경제 시스템 구축 선도
- 최근 포항-울산간 고속도로 계통에 따른 인근 지역에서 자동차부품관련 기업들이 입주 중
  - 울산의 완성차 기업 입지로 구미, 대구, 영천, 경주를 있는 자동차 부품 벨트 조성
  - 포항은 자동차부품 벨트에서 소외, 자동차부품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최근 교통여건 개선에 따른 자동차부품산업의 포항지역 내 입주가 본격화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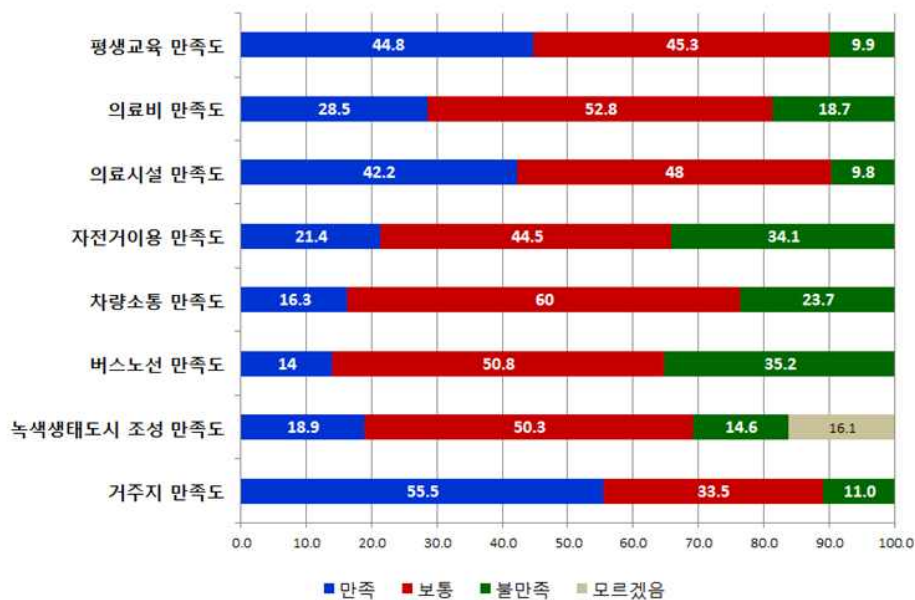
## 제3절 정주여건 및 광역교통 인프라

### 1. 정주여건

#### 1) 정주여건 일반

##### ■ 포항시민은 포항 거주에 대체적으로 만족

- 2013년 통계청 포항시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포항시민 응답자 중 과반 이상(55.5%)은 포항 거주에 만족한다고 응답함
  - 특히 포항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44.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의료시설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도 42.2%로 높게 나타나 다음을 차지
  - 반면 버스노선과 자전거이용 및 차량소통에 대해서는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35.2%와 34.1%, 23.7%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의료비와 녹색생태도시 조성에 대해서는 만족과 불만족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보통’이라는 응답이 52.8%와 50.3%로 높게 나타남



<그림 5-10> 통계청 포항시민 사회조사 결과(2013)

## 2) 주거여건

## ■ 전국 평균과 주요 도시들 보다 상대적으로 주택보급률이 저조

- 2010년 말 포항 총 주택수는 157,557호이고, 주택보급률은 2012년을 기준으로 할 때 108.6%로 조사됨. 이는 전국(115.4%)과 경상북도 평균(110.1%)보다 낮은 수치로서 포항의 주택보급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2013년 기준 주택유형을 살펴보면, 아파트 비중이 49.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다가구주택 23.2% 단독주택 19.7% 다세대주택 5.0%의 순서임
- 2012년 기준 포항 도시가스 보급률은 82.0%로서 전국 평균 76.5%와 경북 평균 51.5%에 비교해 볼 때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상·하수도 보급률은 2013년 기준 87.0%로 서울(100.0%)과 대전(98.6%) 등 특별시·광역시보다는 낮은 수치지만 경북 평균(82.8%)보다는 양호함
- 포항 거주여건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범죄발생 통계를 살펴보면, 2013년 총 17,846건의 범죄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하루 평균 48.9건의 범죄가 발생하였음을 의미함. 인구 1만 명 당으로 환산하면 범죄발생은 343.5건이라고 할 수 있음

&lt;표 5-8&gt; 포항 주거여건 관련 주요 지표 비교

(단위 : 호, %)

지역구분	총 주택수 (2010)	주택보급률 (2012)	도시가스 보급률 (2012)	상·하수도 보급률 (2013)
전국(서울)	13,883,571	115.4	76.5	(100.0)
경북	858,275	110.1	51.5	82.8
대전	409,602	110.5	92.2	98.6
<b>포항</b>	<b>157,557</b>	<b>108.6</b>	<b>82.0</b>	<b>87.0</b>

자료 : 경북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지역발전포털(redis.go.kr)

### 3) 교통여건

#### ■ 등록된 자동차 수가 많은 반면, 도로포장률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

- 포항시의 자동차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말 등록된 총 자동차 수는 225,261대로서 최근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2014년 기준 포항의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는 0.46대로서 서울 0.30대, 대전 0.41대보다 높고 경북 0.47대에 근접
  - 용도별로는 자가용이 212,190대(94.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포항 총 도로연장은 2013말 현재 871,125m로서 포장은 710,228m로 81.5%의 포장률을 나타내고 있어 전국 평균인 83.0%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미포장된 도로는 38,620m이며, 포항~울산 및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등 대규모 도로가 건설 중
- 2013년 말 기준 포항시의 자동차 천 대 당 교통사고 건수는 10.89건으로 서울 11.14건 보다는 적고 경북 10.88건과 유사함
- 포항시 관내에 시내버스 업체는 신안여객(주) 1개 업체와 시외버스 업체인 (주)금아여행 1개 업체가 있으며, 법인택시 업체는 육일교통(주) 등 16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음<sup>12)</sup>

<표 5-9> 포항 교통여건 관련 주요 지표 비교

(단위 : %, 대, 건)

지역구분	도로 포장률 (2013)	일인당 자동차 등록대수 (2014)	자동차 천대당 교통사고 (2013)
전국(서울)	83.0	(0.30)	(11.14)
경북	75.6	0.47	10.88
대전	100.0	0.41	8.45
<b>포항</b>	<b>81.53</b>	<b>0.46</b>	<b>10.89</b>

자료 : 경북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지역발전포털(redis.go.kr)

12) 포항시(2009), 『글로벌 포항비전 2020』. p.208.

#### 4) 의료여건

##### ■ 타 지역대비 보건수준 다소 미흡

- 2012년 기준 포항시의 의료시설 및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나타난 포항시민의 의료시설에 대한 만족도와는 달리 포항시의 타 지역대비 보건의료시설 및 인력 수준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포항시 의료기관 수는 총 561곳<sup>13)</sup>으로 조사되었으나, 이를 인구 천 명 당 의료기관 병상수로 환산해 보면 13.18개에 불과하여 전국 평균인 8.05보다는 높으나 경북 평균 13.67개 보다 낮은 수치
  - 의료인력도 1인당 담당 인구 및 병상 1개당 담당 인구수(2013)는 각 100.8명, 5,154명으로 조사되었는데, 포항시 인구 천 명 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수(2013)는 2.16명에 불과해 경북 평균 1.87명 보다는 다소 높으나 전국 평균 3.76명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

<표 5-10> 포항 의료여건 관련 주요 지표 비교

(단위 : 개, 명)

지역구분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병상수(2012)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수(2013)	흡연율* (2012)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2013)**
전국(서울)	8.05	3.76	23.0	45.9
경북	13.67	1.87	25.3	43.8
대전	13.79	3.02	23.9	51.5
<b>포항</b>	<b>13.18</b>	<b>2.16</b>	<b>41.1</b>	<b>41.1</b>

주) \* 흡연율 : 평생 5갑 이상 흡연한 사람 중 현재 흡연하는 사람, \*\* 주관적 건강수준을 “매우 좋음” 또는 “좋음”에 응답한 사람의 비율

자료 : 경북통계연보, 통계청 e-지방지표, 지역발전포털(redis.go.kr)

#### 5) 교육여건

##### ■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 포스텍 입지

- 2013년 말 포항시 교육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65개소(분교 4), 중학교 34개소(분교 2), 고등학교 28개소, 전문대학 2개소, 대학교 2개소가 있음

13) 종합병원 4곳, 병원 12곳, 의원 238곳, 요양병원 20곳, 치과병(의)원 126곳, 한방병원 2곳, 한의원 116곳, 부속의원 3곳, 보건소 3곳, 보건지소 14곳, 보건진료소 23곳

- 고등학교 : 일반계 18, 특수 목적고 3, 특성화고 5, 자율고 1, 국제학교 1
- 대학교 : 포스텍과 한동대는 4년제, 포항대학과 선린대학은 2년제 대학
- 포항시 고등학생의 대학진학률(2009) 경상북도 평균 대학진학률(일반계)인 94.2%보다 높은 95.3%로 조사<sup>14)</sup>

■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2007년 「포항시 평생학습조례」 제정

- 대학, 민간기관·단체를 중심으로 평생대학원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시민의 여가선용이나 문화와 학습기회 제공 등 평생학습을 추진 중
- 평생학습도시 사업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평생학습과(현 새마을평생학습과)를 신설<sup>15)</sup>

<표 5-11> 포항 교육여건 관련 주요 지표 비교

(단위 : 개, 명)

지역구분	대학교 (2013)	유치원수 (2014)	초등학교수 (2014)	초등학교 교원수(2014)	교원 일인당 학생수(2013)	천명당 시설 학원수(2013)
전국(서울)	340 (48)	8,826 (884)	5,934 (599)	182,672 (29,613)	(16.6)	(1.32)
경북	35	716	478	10,036	15.9	1.33
대전	15	265	143	5,976	17.54	1.41
포항	4	115	65	1,704	17.0	1.55

자료 : 통계청 e-지방지표, 지역발전포털(redis.go.kr)

6) 문화시설 및 사회보장 여건

■ 문화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확충 계획 필요

- 2012년 말 기준 포항시 문화시설은 공연시설 7개소, 전시시설 3개소, 도서관 시설 6개소, 지역문화복지시설 17개소, 문화보급/전수시설 1개소가 있음<sup>16)</sup>
- 인구 십만 명 당 문화기반 시설수를 볼 때, 포항시 문화시설은 전국 평균 3.19 개 대전 3.46보다 높으나 경북 평균 6.82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

■ 사회보장 시설도 지속적인 확충이 요망

- 2012년 통계청 e-지방지표에 따르면, 포항시 사회보장시설로는 노인여가

14) 포항시(2009), 『글로벌 포항비전 2020』. p.509.

15) 포항시(2009), 『글로벌 포항비전 2020』. p.510.

16) 포항시(2013), 『포항문화비전 2022』. p.86.

복지시설 582개 소, 여성복지시설 3개 소, 장애인복지 생활시설 9개소가 있음

- 포항시의 사회복지 시설수와 노인여가복지 시설수를 경상북도 수치와 비교해 볼 때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시설 확충이 필요

<표 5-12> 포항 문화시설 및 사회보장 여건 관련 주요 지표 비교(1) (단위 : 개, 명)

지역구분	십만명당 문화기반 시설수(2013)	십만명당 사회복지 시설수(2012)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수(2013)	노인 천명당 노인여가 복지시설수(2013)
전국(서울)	3.19	6.95	16.49	2.19
경북	6.82	14.82	19.98	12.71
대전	3.46	10.10	22.62	3.80
<b>포항</b>	<b>3.47</b>	<b>5.97</b>	<b>26.09</b>	<b>6.66</b>

자료 : 통계청 e-지방지표.

## 7) 환경여건

### ■ 시민 1인당 공원면적은 법률상 기준을 상회

- 포항 시민 1인당 공원면적은 22.18㎡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기준인 6㎡/인을 상회함<sup>17)</sup>
  - 2012년 말 기준 계획결정된 도시공원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어린이공원 184개소 404천㎡, 근린공원 58개소 11,840천㎡, 묘지공원 1개소 989천㎡, 체육공원 5개소 83천㎡임
- 2013년 말 기준 시민 천명 당 도시공원 조성면적은 25.95천㎡로서 경상북도 27.83천㎡에는 약간 못미치나 서울 13.9천㎡ 대전 18.19천㎡ 등을 상회함
  - 포항시 시설녹지(2012)는 총 208개소 1,261,187㎡이며, 완충녹지 115개소 766,753㎡ 경관녹지 93개소 494,434㎡임

17) 대구경북연구원(2010), 『뉴디자인 대구경북 : 동해안권, 과거와 현재』, p.20.

<표 5-13> 포항 문화시설 및 사회보장 여건 관련 주요 지표 비교(2)

(단위 : 천㎡, km, 개)

지역구분	천명당 도시공원 조성면적 (2013)	면적 (2012)	폐수 배출업소 (2012)
전국(서울)	(13.9)	100,266 (605)	50,138 (3,695)
경북	27.83	19,029	3,998
대전	18.19	540	983
<b>포항</b>	<b>25.95</b>	<b>1,130</b>	<b>596</b>

자료 : 통계청 e-지방지표, 지역발전포털(redis.go.kr)

### ■ 천혜의 해양관광자원 보유

- 포항에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일출명소인 호미곶 관광지, 해수욕장, 온천 등 자연자원이 162km의 수려한 해안선을 따라 분포하고 있음<sup>18)</sup>
  - 204km 포항만 해양관광벨트 : 화진~월포~죽도시장~포항운하~구룡포~호미곶
  - 형산강·낙동정맥의 생태자원과 경주, 영덕 등 특색있는 광역권 관광자원 보유
  - 포항만 먹거리 인지도 확산 : 과메기, 물회, 구룡포대게, 검은돌장어 등

## 2. 광역교통 인프라

### ■ 포항KTX 직결선 개통으로 수도권 접근성 획기적 개선

- 포항시 철도망은 부산진~포항, 연장 147.8km(복선 2.1km)를 운행하는 동해남부선이 통과하고 있으며, 이 구간은 총 32개의 역이 있고 이 중 포항시 행정구역에 여객을 담당하고 동해남부선의 종점인 1개의 포항역이 있음
- 2015년 4월 포항 KTX 직결선이 개통됨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 접근 시간이 2시간 30분대로 가까워짐
  - 2018년 동해남부선(포항~울산)과 동해중부선(포항~삼척)이 완공되면 광역철도 인프라가 대폭 개선될 전망

### ■ 사통팔달의 광역 도로망 구축 중

18) 대구경북연구원(2010), 『뉴디자인 대구경북 : 동해안권 중장기 발전계획(I)』, p.104.

- 포항시 광역가로망은 시가지를 중심으로 방사형 형태임. 건설 중인 포항~울산 간 및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포항은 동해안 사통팔달을 연결하는 교통의 허브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 고속국도는 1개 노선으로 익산~포항을 잇는 20호선이며, 대구~포항 구간 개통
  - 일반국도는 7, 14, 20, 28, 31호선 등 총 5개 노선임. 이중 20호선은 경남 산청을 잇는 도로로서 28호선과 함께 포항시와 경주시를 왕래하는 국도이며, 14호선은 포항과 울산을 연결하는 지역 간 간선도로 역할 담당
  - 국가지원지방도는 20, 68, 69호선이 있으며, 이는 시가지와 북부지역, 북부내륙지역과 해안지역의 생활권을 연결하는 역할 담당

#### ■ 포항 영일 신항만 개항으로 국제부역항으로 발돋움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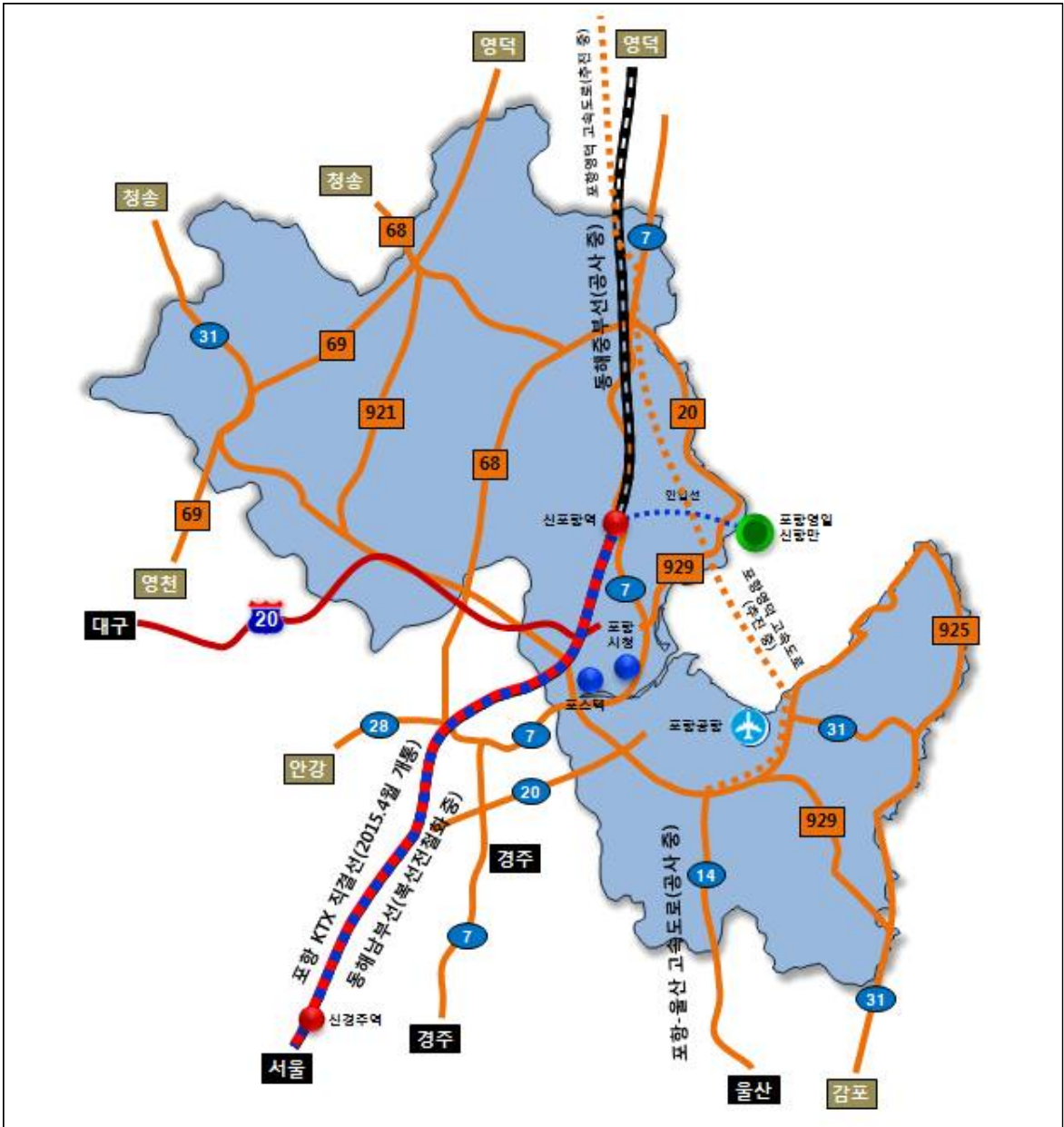
- 포항항(구항, 신항)은 모두 8개의 부두에 연간 하역능력 53,405천 톤이며, 2009년 8월에 개항한 컨테이너부두 4선식 영일 신항만은 연간 1,200만 톤임
  - 구항은 2,317천 톤 처리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포항~울릉 간 여객 및 화물을 운항하고 있고, 신항은 51,088천 톤으로 제철단지 물동량을 처리 중
- 포항영일 신항만은 국제무역항으로 건설 중임.
  - 2018년 영일만항 인입철도가 개설되면 도로수송이 어려운 중량화물 유치가 가능하게 되고, 타 항만에 비해 극동 러시아, 중국 동북3성, 일본과의 교역에 있어 지리적 강점을 보유하게 될 전망

#### ■ 공항

- 포항공항은 서울~포항 간 매일 4편, 포항~제주 간 주3회를 운항하였음<sup>19)</sup>
  - 이용객은 2012년 26만 2천 198명, 2013년 23만 9천 516명으로 일일 평균 687명 정도이며, 같은 기간 화물운송량은 2012년 886톤 2013년 909톤<sup>20)</sup>
  - 현재는 활주로 등 재포장 공사를 위해 2014년 7월부터 2015년 12월 말까지 약 18개월 간 임시 폐쇄 상태

19) 포항시(2009), 『글로벌 포항비전 2020』, p.128.

20) 매일신문(2014.6.12.), “포항공항 내달부터 18개월간 전면 폐쇄” 기사 참조.



<그림 5-11> 포항시 광역교통 인프라 현황

# 제6장

## 유사사례 및 차별성 검토

제1절 국내외 유사사례

제2절 유사제도와 차별성

제3절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협력



# 제6장 유사사례 및 차별성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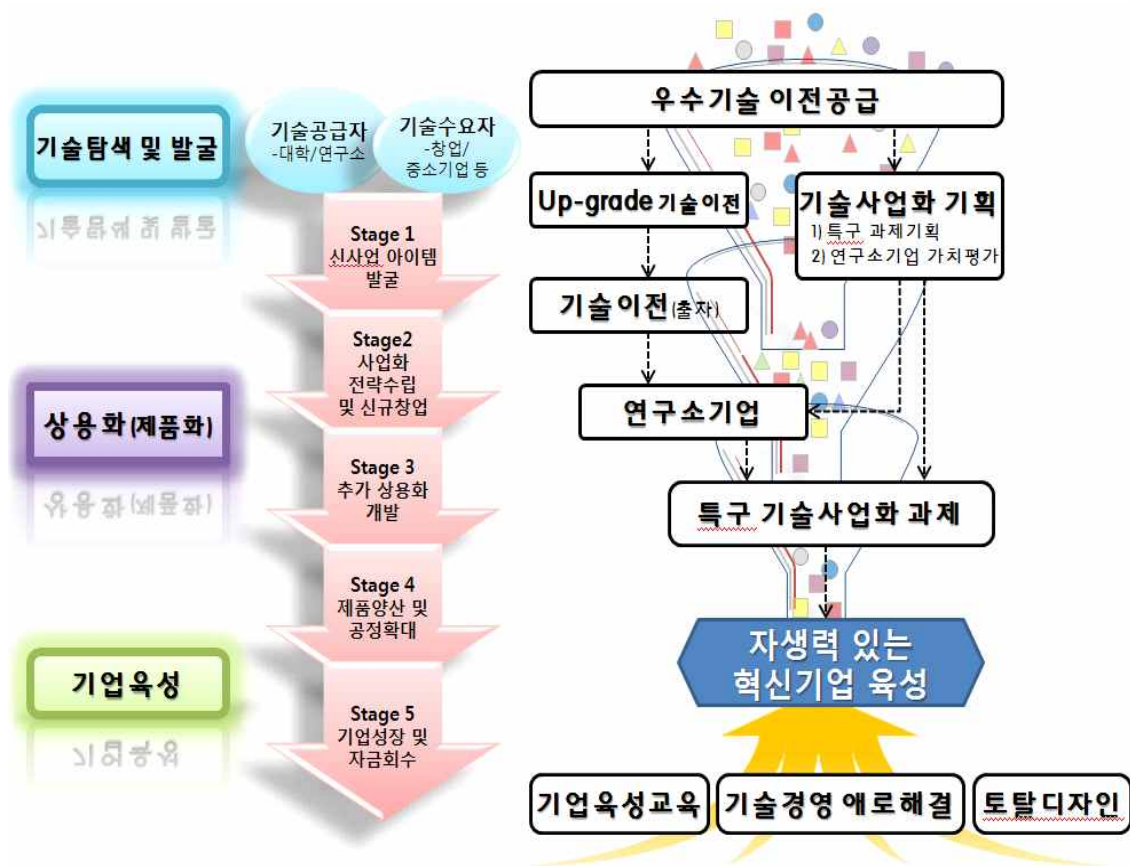
## 제1절 국내외 유사사례

### 1. 연구개발특구

#### ■ 개요

- 근거법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연구개발특구 개념
  - 지식·기술에 기반한 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혁신클러스터’ 정책을 강화 필요
  - 혁신클러스터는 기술·산업·지역 정책을 통합하여 구성원간 활발한 네트워킹을 통해 지식의 창출·확산·활용의 선순환 구조 형성
  - 개방형 혁신과 기술·산업의 융복합은 창업 활성화 및 기업·국가 차원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
- 연구개발특구 추진배경
  - 연구개발특구를 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하여 지식재산 창출 및 기술사업화 기능을 확충함으로써 국가성장동력의 전기 마련
  - 세계적인 과학기술역량을 보유한 대덕연구단지를 비즈니스 성과확산 중심의 대덕연구개발특구로 지정('05.7월)
  - 산업화 역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체 지식재산 산출 능력이 미흡한 대구·광주('11.1월) 및 부산('12.11월)을 추가특구로 지정
  - 대덕의 연구성과를 확산하고 광역경제권의 혁신역량 확충
- 연구개발특구 기본방향
  - 대덕연구개발특구: 국가R&D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추가특구는 광주·대구 및 광주를 포함한 지역 R&D의 기술공급지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중층적 구조로 상호 시너지를 창출

- 추가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단절구간의 연결과 가치창출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기술사업화 시스템 구축 및 패키지형 지원 강화, 특구별 특성을 반영하고 타겟 수요자 중심의 지원



<그림 6-1> 연구개발특구육성 기본방향

## ■ 현황

### ○ 지정 현황

-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2005. 7), 대구, 광주연구개발특구 지정(2011. 1), 부산 연구개발특구 지정(2012.11)

### ○ 지정요건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연구소 및 기업이 집적·연계: 국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분원 포함) 3개 이상,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40개 이상, 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사과정 이상의 교육기관 (이공계 학부를 둔 경우) 3개 이상, 대학·연구소 및 기업 상호간 협의기구가 있을 것

-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벤처기업의 창업을 하기에 충분한 여건: 그 지역 또는 인근에 대량생산을 위한 산업단지가 입지하고 있을 것
-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기여도가 다른 지역보다 우수: 연구개발투자비 및 특허등록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을 것
-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여건이 조성: 교통·통신·기반시설 및 생활여건 등에서 외국과의 교류 협력이 용이할 것, 그 지역에 있는 연구기관이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표 6-1> 연구개발특구 현황

구분	대덕연구개발특구	대구연구개발특구	광주연구개발특구	부산연구개발특구
범위	대전시 유성구, 대덕구 일원	-대구시 동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경북 경산시 일원	-광주시 광산구, 동구, 북구 -전남 장성군 일원	부산시 강서구, 금정구, 남구, 영도구, 사하구, 부산진구, 연제구 일원
면적	총 67.8km <sup>2</sup> -대덕연구단지 -대덕테크노밸리 -대덕산업단지	총 22.25km <sup>2</sup> -테크노폴리스지구 -성서첨단산업지구 -융합R&D지구 -의료R&D지구 -지식서비스R&D지구	총 18.73km <sup>2</sup> -첨단2지구 -나노산업단지 -진곡산업단지	총 14.10km <sup>2</sup> -R&D융합지구 -생산거점지구 -사업확충진지구 -첨단복합지구
특화분야	-IT융복합 -바이오의약 -나노융복합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IT기기 -의료용 융복합기기 및 소재 -그린에너지 융복합 -메카트로닉스 융복합	-광기반 융복합 -친환경자동차 소재부품 -스마트케어 가전 -차세대 전지	-조선해양플랜트 기자재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및 서비스 -그린해양기계
특징	출연연구기관 집적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	기술사업화 및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	조선해양분야 특화

## ■ 주요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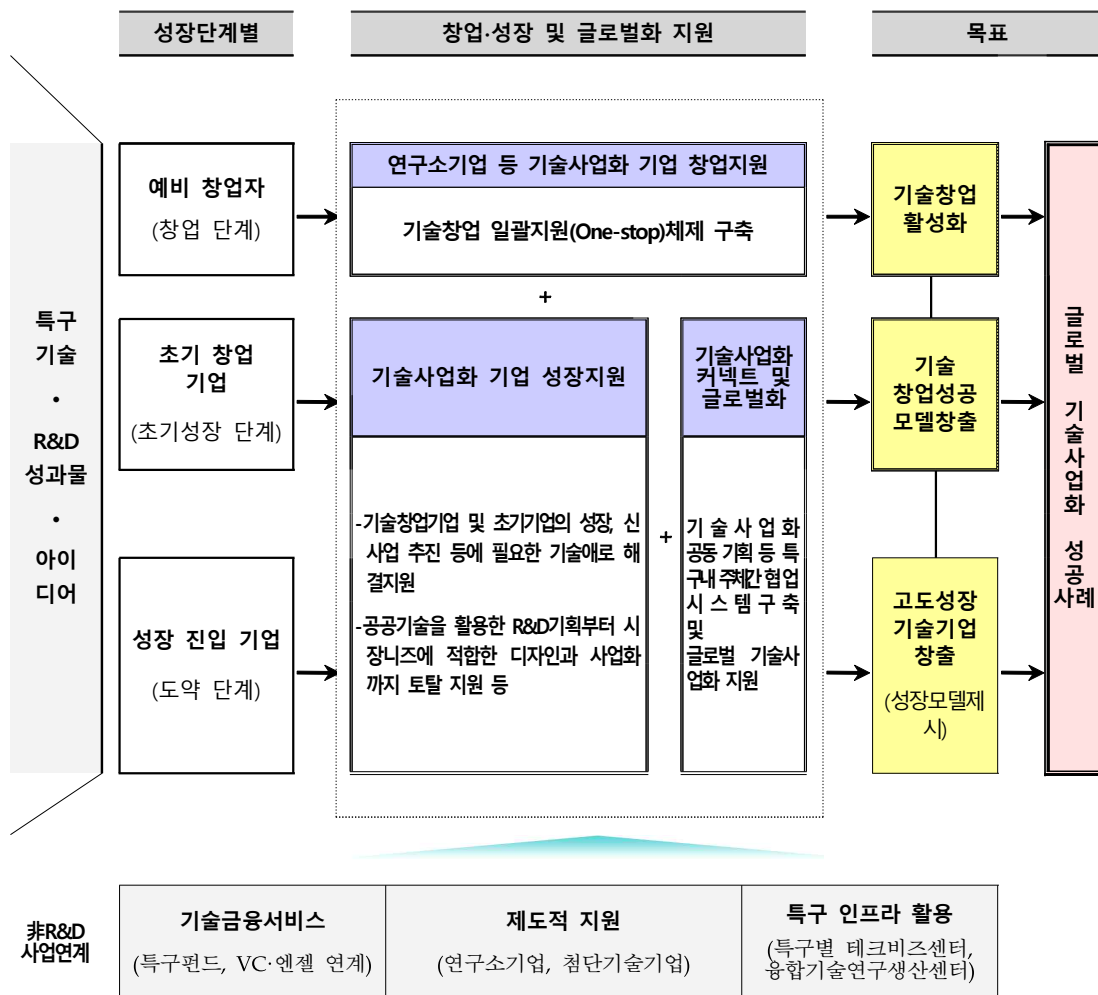
### ○ 연구성과 사업화

- 기술탐색 이전·공급: 기술수요기업이 상황별 필요기술을 특구 공공기술로부터 찾고, 해당 기술을 받아 조기에 기술사업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지원 및 관련 사업화기획에 필요한 사업
- 특구기술사업화: 시장중심의 특구별 특화산업 중심기술을 대상으로 ‘추가상용화 →기술패키징→시제품개발→사업화’에 이르는 R&BD 과제 지원을 위한 사업

### ○ 벤처생태계 조성

창조경제 선도지역 조성  
기본계획 수립

- 기술사업화 기업 창업·성장: 기술기업의 창업부터 도약까지의 성장단계별 지원사업으로 “기술-창업-성장”이 선순환되는 기술사업화 생태계조성을 위한 사업
- 기술사업화 커넥트 및 글로벌화: 특구내 또는 대덕과 추가특구의 기술사업화주체간 연계협력과제 도출, 대덕특구 특화산업 사업화 아이디어 공동도출 등 기술사업화 커넥트 강화와 대덕특구 연구성과의 글로벌화 사업



<그림 6-2> 연구개발특구사업 체계

## 2. 창조경제혁신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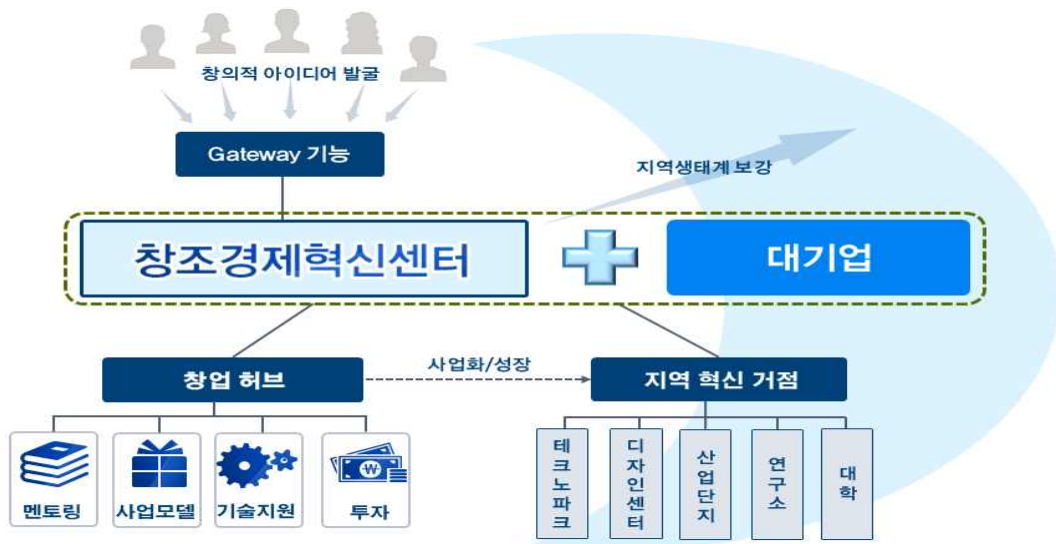
### ■ 역할과 기능<sup>21)</sup>

#### ○ 창업 허브

- 창업 교류 공간·프로그램 운영: 지역 내 창업·사업화를 원하는 인재·기업 및 혁신주체 간 소통과 협업을 촉진
- 창업 단계별 지원: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을 활용, 지역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구체화하여 창업·사업화로 연계
- 기업성장 지원: 창업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을 거쳐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밀착 지원

#### ○ 지역 혁신 거점

- 지역역량 연계: 지역의 창의적 인재, 창업지원기관, 기업지원기관, 대학·연구기관 등 지역의 역량을 네트워크화하여 통합 지원
- 시·도 지역발전 전략 수립 참여: 창조경제 관련 시·도 자체 또는 국가계획의 시·도 부문 계획 수립에 참여
- 지역 창조경제사업 기획: 기존사업을 창조경제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신규 사업을 기획·발굴하여 미래부 등 관련부처에 제안



<그림 6-3> 창조경제혁신센터 역할과 기능

21) 미래부 보도자료(2014.9.4.) 참조

○ 협력성장의 엔진

- 지역 혁신역량 보완: 대기업의 강점을 활용하여 지역내 지원기관의 미흡한 역량을 보완·강화함으로써 지역 창조경제생태계 형성에 기여
- 지역 생태계의 촉매제: 해당지역의 각종 지원기관의 역량을 분석하여 미흡한 점을 대기업 등을 활용하여 보완

■ 목표 및 구축 현황

- 창조경제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되기 위해 지역 현장으로의 창조경제 확산과 지역 주체들의 직접참여 유도
  - 지역 인재와 역량을 기반으로 하는 창조경제 모델을 확립하여 지역 현장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창조경제 플랫폼 구축
  - 생산·마케팅 역량과 자금·기술력을 갖춘 대기업이 강점을 활용하여 지역의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의 촉매제 역할 수행
- 2014년 3월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
  - 이후 8개 센터가 개소되었으며, 향후 9개 시도에 단계적으로 개소 예정

<표 6-2> 창조경제혁신센터-대기업간 연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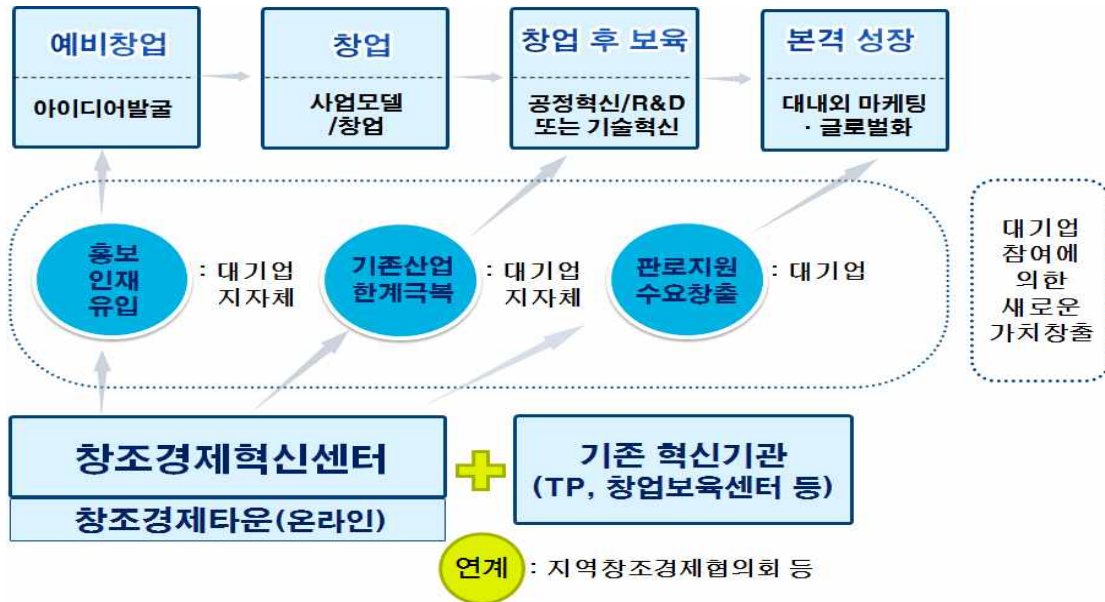
지역	대기업	업종	지역	대기업	업종
대전	SK	ICT	충북	LG	전자정보/바이오
대구	삼성	전자	충남	한화	태양광/ICT
부산	롯데	유통/관광	경북	삼성	전자
경남	두산	기계장비	강원	네이버	IT서비스
인천	한진	항공	서울	CJ	문화
경기	KT	IT서비스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기계
광주	현대자동차	자동차	제주	다음	IT서비스
전북	효성	탄소섬유	세종	SK	ICT
전남	GS	건설·에너지			

■ 운영방안

- 대기업과의 연계 활성화
  - 대기업-혁신센터: 혁신센터별로 전담 대기업이 역량·강점 등을 갖춘 분야를 중심으로 센터의 사업에 다양한 형태로 참여
  - 대기업-중소·벤처기업: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공동으로 이익을 창출\*하여

공유함으로써 함께 성장하는 상생과 윈-윈의 관계 형성

- 정부 지원: 생태계 조성에 대기업, 지자체 등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



<그림 6-4>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대기업과의 연계 방안

- 창조경제타운 및 지역 지원기관과의 연계
  - 창조경제타운 연계: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을 오프라인으로 확대하는 주요 채널 중 하나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활용
  - 유관기관 기능 연계·조정: IP 창조 Zone, TP, 중기지원 통합센터 등 다른 지역 지원기관들과의 기능 연계·조정 강화
  - 지역 혁신지원 허브: 혁신지원 코디네이터와 종합정보 포털 등을 구축·운영하여 지역 혁신자원에 대한 종합안내·연결기능 수행

### 3. 미국 실리콘밸리

#### ■ 개요<sup>22)</sup>

- 실리콘 밸리(Silicon Valley)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만 지역 남부

22) KOTRA Silicon Valley 무역관, Silicon Valley STARTUP GUIDE 참조

**창조경제 선도지역 조성  
기본계획 수립**

- Silicon Valley라는 명칭은 팔로알토 지역의 반도체 관련 주간 타블로이드 신문 Microelectric News의 Mr. Don Hoefler가 1971년 기사에서 최초 사용
- 실리콘은 반도체의 핵심소재이며, 벨리는 101번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좌우 높은 산악지형이 계속되어 계곡 형태를 형성
- Santa Clara 카운티, San Mateo 카운티, Alameda 카운티, Santa Cruz 카운티
- 주력분야: IT, BT
- 위치: 샌프란시스코 인근 10여개 도시로 구성
- 면적: 3,885km<sup>2</sup>
- 주요기관: Stanford대학교, 9,000여개 IT·BT 관련 기업
- 세계 100대 첨단기업 본사의 20%가 위치

○ 특징

- 혁신에 가치를 두고 위험을 감수 하는 모험정신
-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유능한 엔지니어와 사업가들
- 모험 자본 투자자들 (venture capital)
- UC버클리, 스탠포드 등의 교육연구기관
- 살기 좋은 날씨와 주변의 자연환경

○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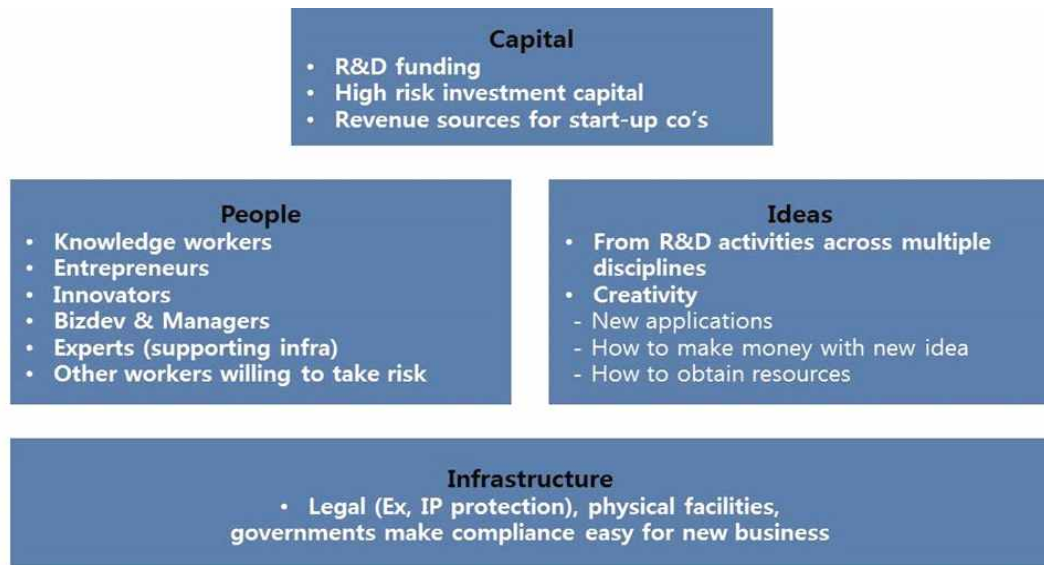
-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방위산업 R&D 예산 증가 및 NASA의 연구시설이 Moffet Field에 입주
- 1930년대 Palo Alto 의 한 차고에서 HP사 입주
- 1960년대 인텔사, 내셔널 세미콘덕터사 등 반도체 관련 기업 입주
- 1970년대 Oracle(소프트웨어산업), Apple(PC산업), Genentech(바이오산업) 등 관련 기업 입주
- 1980~1990년대 Cisco, Yahoo, Google 등 인터넷산업 관련 기업 입주
- 2000년대 Facebook, Twitter 등 Social Media산업 관련 기업 입주

■ **창업 생태계**

○ 우수한 인력

- R&D 인력, 엔지니어, 벤처 캐피털리스트, 법률·회계 전문가들이 활동

- Stanford, U.C. Berkeley 등 인접하여 원활한 산학협동
- Stanford 학생과 연구원이 발전시킨 기업이 6,000여개
- 독특한 기업가 정신
  - 위험을 감수하는 혁신 성향
  - From R&D activities across multiple disciplines
  - Creativity, New applications
  - How to make money with new idea, How to obtain resources
- 풍부한 자본
  - 엔젤투자자 : 창업기업의 비전과 아이디어 및 진행 중인 제품만으로 투자 결정
  - Venture Capital : 엔젤투자자의 뒤를 이어 창업 기업이 IPO(Initial Public Offering: 기업공개) 또는 매각될 때까지 투자
  - 미국 전체 Venture Capital 투자금액의 40% 이상이 실리콘밸리에 투자



<그림 6-5> 실리콘 밸리 창업환경

- 훌륭한 인프라
  - 우수한 액셀러레이터, 인큐베이터 환경
  - 보육-교육-투자-자문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스타트업 기관이 200여개 소재
  - 법률·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컨설팅 그룹 다양한 형태로 창업 지원

## ■ 성공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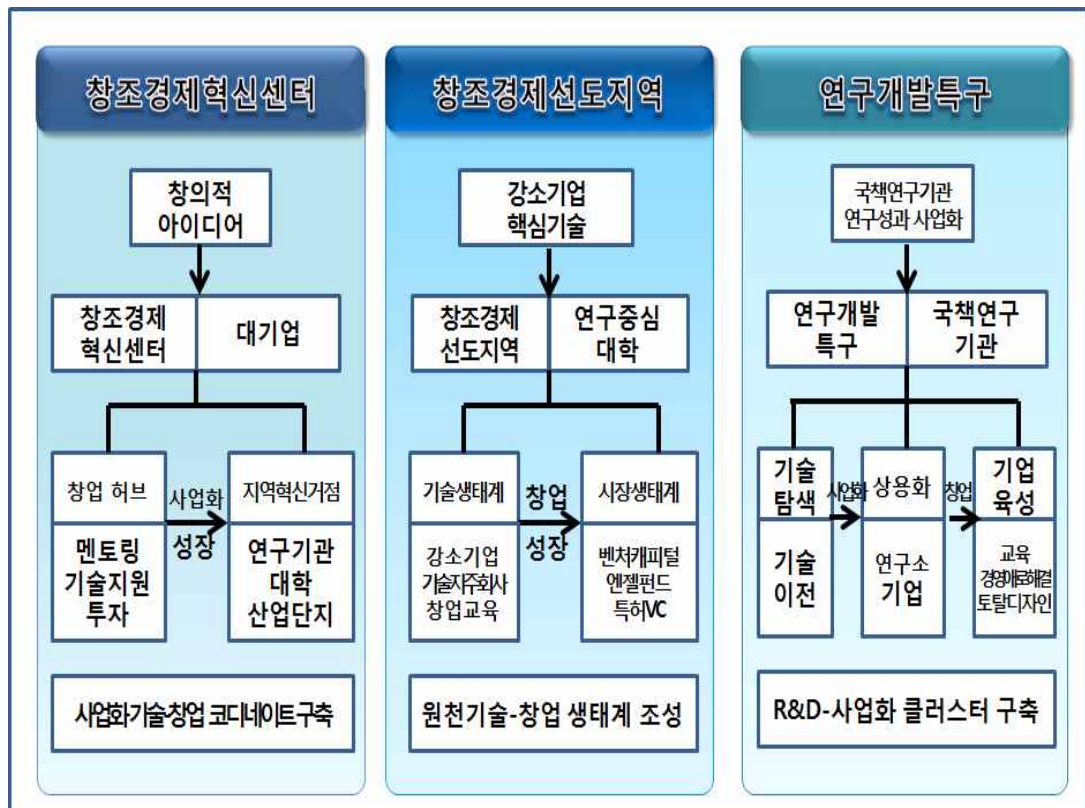
- 실리콘밸리 내 기업과 대학이 개방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긴밀한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
  - 연구기반 인프라의 요충지인 스탠포드 대학을 중심으로 개방적, 협력적 산학연 협력 모형을 구축
  - 이를 통해 기존 노하우의 전수, 기술 상업화를 위한 혁신, 인프라 확충,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리더십을 창출
- 혁신의 리더로서 스탠포드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에서 길러진 수많은 벤처 기업들이 지역 발전의 리더로서 역할
  - 과학기술 지식과 혁신, 일자리 등을 지역에 제공하는 것이 대학의 주요한 역할로 인식
  - 대학은 연구기반 인프라의 요충지로서, 기존 산업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하고, 상업화를 위한 기술혁신, 인프라 확충,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리더십 창출 등 다양한 노력
- 초기 성공적 산학연 협력모델(스텐포드 리서치파크) 구축
  - 초창기 대학의 연구 장비나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이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유도
  - 대학내 우수한 연구인력 공급을 통한 효율적 산학연 협력모델 구축
  - 스텐포드 산학연 협력모델은 선진 각국에서 다양한 형태<sup>23)</sup>로 적용되어, 외형적 측면에서 리서치파크 또는 사이언스파크와 같은 연구개발 집단화단지의 선도 모델

23) 영국의 캠브리지 사이언스파크, 스웨덴의 씨스타 사이언스파크, 프랑스의 소피앙티폴리스, 일본의 가나가와 사이언스파크나 교토 리서치파크 등 세계 각 국의 산학연 모델의 본보기가 됨.

## 제2절 유사제도와 차별성

### 1. 핵심 성과와 투입·산출·과정 측면

- 핵심 성과
  - 창조경제 선도지역: 생태계, 연구개발특구: 클러스터, 창조경제혁신센터: 플랫폼
- 투입·과정·산출과정(input-through-output)
  - 창조경제 선도지역: 강소기업 원천기술, 기술생태계-시장생태계, 원천기술-창업 생태계 조성
  - 연구개발특구: R&D 성과, 기술탐색-상용화-기업육성, R&D-사업화 클러스터 구축
  -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의적 아이디어, 창업 허브-지역혁신 거점, 사업화기술-창업 플랫폼 구축



<그림 6-6> 유사제도와 차별성(핵심 성과와 투입·산출·과정 측면)

-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기업 연계형 사업화기술·창업 플랫폼 구축
  - 창의적 아이디어에 새로운 기술을 융합해서 신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혁신을 이끌어 가기 위한 창조경제 전진기지
  - 창의적 인재의 활발한 창업 도전, 중소·벤처에서 중견기업을 거쳐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 제품과 서비스의 경쟁력 제고와 세계시장 개척 지원
- 연구개발특구는 국책연구기관 중심형 R&D 성과 사업화
  - 국책연구기관 R&D 성과를 상용화하여 연구소 기업으로 육성
  - 클러스터 내외부의 활발한 네트워킹을 통한 개방형 혁신과 기술·산업의 융·복합으로 벤처창업 활성화 및 기업·국가 차원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

## 2. 지정공간과 기대효과 측면

- 지정공간
  - 창조경제 선도지역: 광역단위보다 작은 지역, 연구개발특구: 4개 광역 단위, 창조경제혁신센터: 17개 광역 단위
- 기대효과
  - 창조경제 선도지역: 지역 대·중소·중견기업 연계·협력 생태계 조성, 기업 육성, 연구개발특구: R&D성과 사업화, 창조경제혁신센터: 일자리 창출
- 취지
  - 창조경제 선도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 경쟁력 강화(RIS+NIS), 연구개발특구: 국가기술 혁신 및 국민경제 발전 이바지(NIS),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경제 혁신 도모(RIS)
- 근거
  - 창조경제 선도지역: 법률, 연구개발특구: 법률,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통령령
- 지원기관
  - 창조경제 선도지역: 연구중심대학, 연구개발특구: 국책연구기관, 창조경제혁신센터: 대기업

<표 6-3> 유사제도와 차별성(지정공간과 기대효과 측면)

구분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조경제 선도지역	연구개발특구
추진주체	대기업 주도	강소기업·대학 주도	공공연구기관 주도
목적	지역경제 혁신 도모 (RIS)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RIS+NIS)	국가기술 혁신 및 국민경제 발전 이바지(NIS)
취지	벤처기업 육성	벤처 및 강소기업 육성	연구개발 성과 확산
근거	대통령령	법률	법률
주요 지원대상	창의적 아이디어	기술주도형 강소기업	연구소기업
기대효과	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지역 대·중소·중견기업 연계·협력 생태계 조성	R&D성과 사업화
지정공간	17개 광역단위	- (광역단위보다 작은 지역)	4개 광역단위 (대덕, 대구, 광주, 부산)

### 3. 추진주체 측면

- 창조경제 선도지역
  - 벤처·강소기업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정책연구기관은 상대적으로 약함
- 연구개발특구
  - 공공부문과 정책연구기관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민간부문·대기업·대학이 상대적으로 약함
- 창조경제혁신센터
  - 민간부문과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공공부문이 상대적으로 약함

<표 6-4> 유사제도와 차별성(추진주체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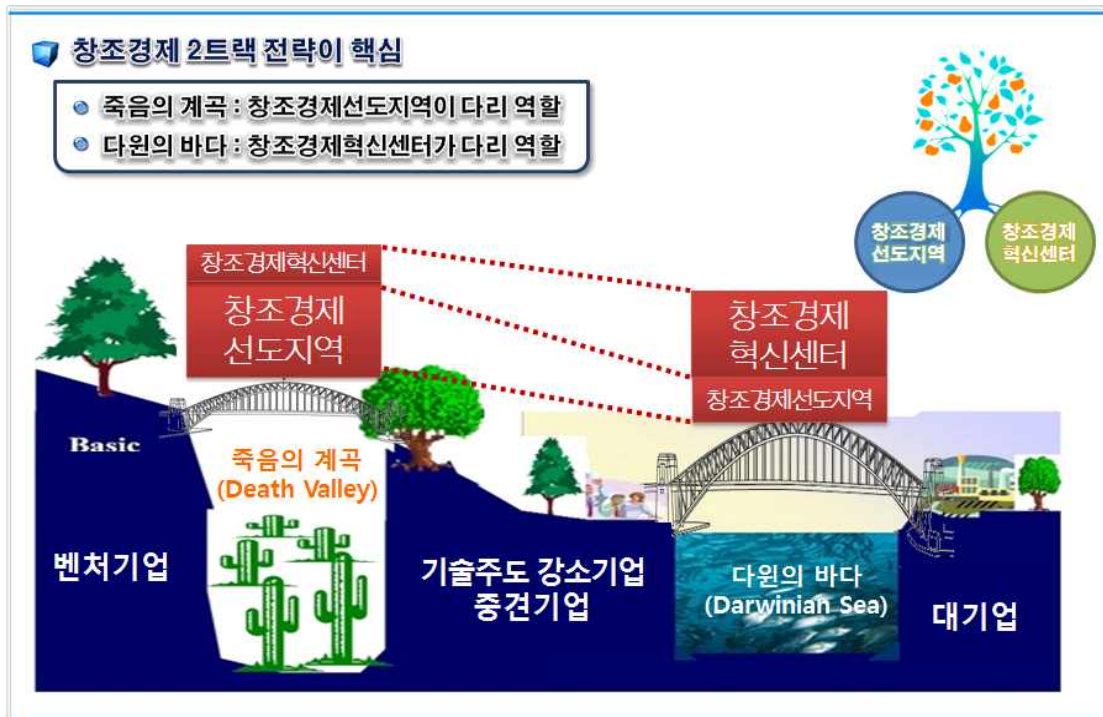
구분	민간부문	공공부문	대기업	벤처 강소기업	정책 연구기관	대학
창조경제혁신센터	●	△	●	○	○	○
창조경제 선도지역	○	○	○	●	△	●
연구개발특구	△	●	△	○	●	△

주 : ● 상대적으로 강함, ○ 상대적으로 보통, △ 상대적으로 약함

### 제3절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협력

#### ■ 죽음의 계곡과 다윈의 바다

- 창조경제 선도지역은 상대적으로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장벽을 극복
  - 벤처·강소기업이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원천기술의 창업 생태계 구축에 초점<sup>24)</sup>
  - 아이디어에서 기술개발, 제품 양산까지의 험난한 길을 극복
-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상대적으로 다윈의 바다(Darwinian sea) 장벽을 극복
  -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의 글로벌 마케팅과 협업하여 튼튼한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초점
  - 신제품 양산에 성공하더라도 시장에서 다른 제품과 경쟁하며 이익을 얻기까지의 장벽을 극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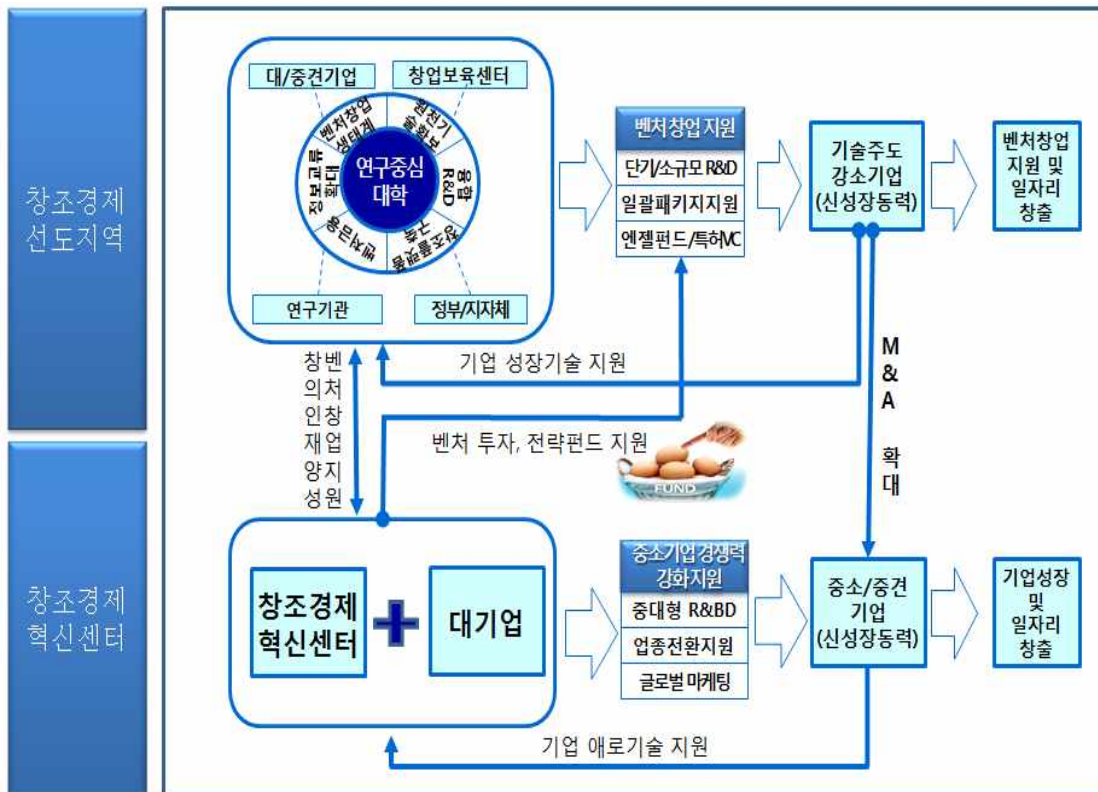
<그림 6-7>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협력(1)

24) '죽음의 계곡'은 생명체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미국 네바다주의 황량한 땅으로 아이디어에서 기술개발, 제품 양산까지의 험난한 길을 일컫는 용어. '다윈의 바다'는 악어·해파리 떼가 가득해 일반인 접근이 어려운 호주 북부 해변으로 신제품 양산에 성공하더라도 시장에서 다른 제품과 경쟁하며 이익을 내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을 이르는 용어

- 죽음의 계곡과 다윈의 바다를 극복하기 위하여 창조경제 선도지역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연계·협력 필요

■ 벤처창업과 인수합병 지원

- 창조경제 선도지역
  - 벤처창업 지원, 창의 인재양성 등 연계·협력
  -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여 중소·중소기업으로 성장
- 창조경제혁신센터
  - 인수합병, 대기업 지원 등 연계·협력
  - 대기업 지원을 통하여 기업 애로기술 지원으로 튼튼한 기업으로 성장



<그림 6-8>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협력(2)



# 제7장

## 기본 구상 및 주요사업

제1절 기본 방향 및 비전

제2절 전략별 사업 도출



# 제7장 기본 구상 및 주요사업

## 제1절 기본 방향 및 비전

### 1. 기본 방향

#### ■ 포항을 대한민국 창조경제 선도지역으로 선정

-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 포스텍의 원천기술을 창조경제의 불씨로 활용
-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포스코 경험과 세계 시장을 적극 활용
- 산·학·연 네트워크를 통한 창조경제 생태계 선도모델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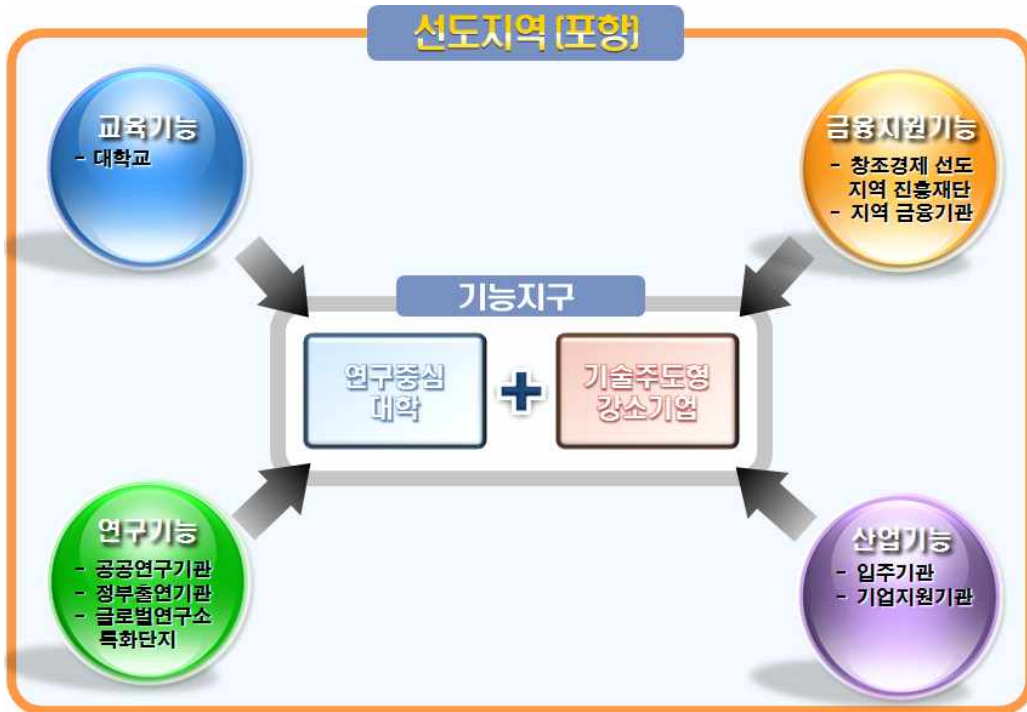
#### ■ 포스텍 일원을 선도지역 기능지구로 지정하여 기술주도형 강소기업 집중 육성

- 포스텍 첨단기술 개발연구의 벤처창업 및 사업화 촉진
- 기술주도형 강소기업 및 기업연구소 유치·육성 강화
- 창조인재 및 첨단기술 인력 유치를 위한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 ■ 산·학·연·관 창조생태계 형성을 위한 강소기업 육성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 산업기능 지원
  - 창조경제 선도지역 기능지구 내 입주기관 : APGC, 포항 강소기업 등
  - 기업지원 기관 : 포항테크노파크
- 교육기능 지원
  - 포스텍, 한동대, 포항대, 선린대 등 대학교
- 연구기능 지원
  - 공공연구기관·정부출연기관, 국제연구소 등 각종 연구개발 인프라 :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항분원, 막스플랑크 한국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이론물리센터, 포항가속기연구소, 나노융합기술원,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포항 산업과학연구원(RIST), 생명공학센터, 기초과학연구원 캠퍼스연구단 정보통신연구소, 미래IT융합연구원, 포스코 기술연구소 등
  - 글로벌연구소 특화단지

- 금융기능 지원
  - 창조경제 선도지역 진흥재단, 지역 금융기관 등



<그림 7-1> 창조경제 선도지역 개념도

## 2. 비전 및 전략

### ■ 비전

글로벌 창조경제 + 창조산업의 요람

- 포항을 대한민국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선도지역으로 조성함으로써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기술주도형 강소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
- 창조경제 선도지역의 비전은 「글로벌 창조경제 + 창조산업의 요람」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3대 기본목표와 4대 추진전략을 수립함.

### ■ 기본목표

- 벤처창업 촉진 및 창조기업 육성 지원시스템 구축
- 강소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선도
- 창조 인재양성 및 창조 생태계 구축

■ 추진전략 : 학(學)·연(研)·산(産)·인프라(環境)간 융합 지향

- 학(學) : 창조인재 및 창조인재 및 벤처창업 활성화
  - 정부의 창조경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창조 인재 양성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벤처창업 활성화 촉진
- 연(研) : R&D 창조역량 강화
  - 포스텍 등 연구중심대학을 중심으로 기술주도형 강소기업과 연계하여 창조경제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 산(産) : 창조경제기반 창조기업 육성
  - 창조경제 R&D 역량을 기반으로 창조경제기반 기술주도형 강소기업 중점 육성
- 인프라(環境) : 창조경제 생태계 구축
  - 창조경제 R&D-기술사업화-지원-인프라 등을 연계한 창조경제 생태계 구축

비전

**글로벌 창조경제 + 창조산업의 요람**

- 강소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선도
- 벤처창업 촉진 및 창조기업 육성 지원시스템 구축
- 창조 인재양성 및 창조 생태계 구축

추진 전략



<그림 7-2> 창조경제 선도지역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 제2절 전략별 사업 도출

<표 7-1> 창조경제 선도지역 주요 사업

추진전략	선도 및 연계사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창조인재 및 벤처창업 활성화	(선도) 강소기업 연구소 클러스터 육성	2015~2018년	50억원	· 강소기업연구소 유치 전용관 · 강소기업 기반 글로벌 연구소 특화 단지 조성 · 강소기업 파트너십(REP) 구축
	(연계) 벤처창업 기술사업화 선도	2015~2018년	30억원	· 창조경제 창업보육 지원 확대 · 창조경제 창업활성화 기반 구축 · 창업기반 중간 회수시장 활성화
	(연계) 창조경제 현장밀착형 창업인재양성	2015~2018년	20억원	· 창조경제 현장밀착형 인력양성 · 지역대학내 벤처창업 전문 아카데미 및 학과 운영 · 기술창업 캠프 운영 및 확대
R&D 창조역량 강화	(선도) 창조경제 R&D 거점 지구 조성	2015~2018년	50억원	· 창조경제 선도지역 R&D 거점지구 · 창조경제 글로벌 기업 전문연구소 유치 · 창조경제 특성화 대학 지정 및 육성
	(연계) 가속기벨트 연계 R&D 비즈니스 단지 조성	2015~2018년	50억원	· 가속기 융합 기업지원센터 구축 · 가속기벨트 R&D 비즈니스 단지 · 핵심 기술개발 연계 및 BS체계 구축
	(연계) R&D 서비스 연계협력 기능 강화	2015~2018년	10억원	· 기초과학 R&D 인프라 연계협력 발굴 및 추진 · R&D 서비스 지원 강화
	(연계) 자율형 창의 R&D 성과 극대화 시스템 구축	2015~2018년	20억원	· R&D 지원 프로그램 방식의 다양화 · R&D 기관 중소기업 기술 이전 촉진 · 지역R&D 지원기관 통합시스템 구축
창조경제 기반 창조기업 육성	(선도) 창조경제 강소기업 육성	2015~2018년	40억원	·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 · 강소기업 육성지원 센터 설립 · 본 글로벌(Born-Global) 기업 육성 ·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연계) 창조경제기반 중소기업 창조역량 강화	2015~2018년	20억원	· 중소기업 기술경영 닥터 사업단 · 강소기업 집중 육성 프로그램 운영 · 대·중견기업 은퇴전문직 기술전수 · 중소기업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
	(연계) 국내외 글로벌 강소기업 유치 및 지원	2015~2018년	30억원	· 포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 강소기업 지방투자유치공사 설립 · 강소기업 유치전략 마스터플랜 수립
	(연계) 중소기업 애로기술 지원 및 업종전환 유도	2015~2018년	25억원	· 중소기업 산업현장 애로기술 지원 · 중소기업 업종전환지원센터 운영 · 중소기업 융합기술 지원
창조경제 생태계 구축	(선도) 창조경제 선도지역 진흥재단 설립	2015~2018년	-	· 창조경제 선도지역진흥재단 설립 · 창조경제 산학연관 통합형 거버넌스
	(연계) 창조 금융생태계 구축	2015~2018년	10억원	· 기존 금융지원프로그램 연계 지원 · 기술주도형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 펀드 조성
	(연계) 과학·문화·예술 융합 창조도시공간 조성	2015~2018년	20억원	· 외국인 진료병원 지정·운영 · 외국인학교 설립 및 운영지원 · 글로벌 정주환경 조성
	(연계) 창조경제기반 글로벌 시장개척 프로그램 개발	2015~2018년	10억원	· 창조경제 국제협력지원센터 구축 · 해외시장 개척 프로그램 발굴 · 글로벌 시장개척 및 네트워크 구축

## 1. 창조인재 및 벤처창업 활성화

### 1) 강소기업 연구소 클러스터 육성(선도사업)

#### ■ 필요성 및 목적

- 정부의 창조경제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서는 대기업-첨단기술기업이 동반 성장 할 수 있는 생태계 기반과 전략산업 및 융합산업 육성 방안이 시급
- 포항은 기업연구소를 유치·집적할 수 있는 허브를 구축, POSTECH 및 R&D 기관, POSCO와 협력하여, 특허-기술이전-사업화 및 창업으로 이어지는 산학협동 선순환 구조의 지역 고유의 산업생태계 조성의 최적지
- 정부의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강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APGC 등 중견기업 연구소를 유치 및 산학협동 R&BD 활동을 통하여 신산업 클러스터 육성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 2020년
- 사업비 : 50억원 (국비 25, 지방비 25)
- 대상지역 : 포항시 포스텍 지구 내

#### ■ 사업내용

- 강소기업연구소 유치 집적 및 지원을 위한 전용관
  - 산학융합 전용관(입주공간) 건립 → 산학연협력 플랫폼 기능
  - 공동 실험 장비 구축 → 입주기업 공통 수요 도출 선별 · 구축
- 강소기업 기반 글로벌 연구소 특화단지 조성
  - APGC연구소 및 전략산업군 기업연구소를 우선 유치, 클러스터 성장 동력 확보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사업화 촉진 프로그램
  - 기업 유치 확대를 위한 초기 이전기업 우대 프로그램인 R&D 및 상주 지원금 운용(R&D연구소 별도 법인설립, 상주인력 규모, R&D성과물에 따른 매출, 신규투자 시 우대 등)
  - 대학-기업연구소-산업체 협력 공동 기술개발 과제를 통한 기술력 확보
  - 실증 및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기술개발 성과 사업화 촉진

- 강소기업 파트너십(Regional Enterprise Partnership, REP) 구축
  - 강소기업 창업관련 패키지 및 인프라 지원 : 강소기업이 효과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창업하고 기업이 착근하고 성장하기 좋은 환경 구축
  - 타 지역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진 산업에 집중 투자 및 지원 : 주요 강소기업에 충분한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경제성장을 가속화
  - 강소기업이 필요한 인력 공급 : 전문인력 부족 문제 해결
  - 강소기업간 협력체제 구축 : 중앙 및 지자체, 대학 및 연구소, 관련 지원 기관간 연계 협력체제 구축
- 강소기업 R&BD 협력 네트워크 구축
  - R&BD 활동 전주기 지원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 산학연관 합동 기업유치 설명회, 채용설명회, 비즈니스 및 기술 교류회



자료 : 신훈규, 강소기업육성추진계획, 2014.

<그림 7-3> 강소기업 R&BD 네트워크 현황

## ■ 기대효과

- 창조경제기반 성장단계 첨단벤처 기업 연구소 및 글로벌 기업 연구소 유치하여 전략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기술사업화 전주기 과정의 플랫폼 구축

- 기업연구소를 유치·집적, 산학연 협력 기반 기술혁신, 기술상용화, 신산업 육성 및 지역인재 정착·고용 창출 등을 통한 국가 경제 성장 동력 확보 가능

## 2) 벤처창업 기술사업화 선도(연계사업)

### ■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글로벌 경쟁 단위가 국가에서 지역으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등으로 낮아지고 있어, 세계 각국은 자국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벤처 및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
- 창조경제를 이끌어 갈 핵심동력원으로서 대학을 기반으로 하는 벤처 창업 및 이를 통한 기술창업의 활성화는 매우 중요
  - 대학 내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한 벤처창업 및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필요
  - ※ 지역 R&D 기관과 연관 있는 기업체 DB화 → 중소기업 지원
    - 포항 코스메틱 산업 육성(포항 TP) : 시제품 제작
    - 지역특산물 고부가가치화 사업(포항 TP) : 부추, 가시오가피 등
      - 식·의약 소재 개발 및 시제품 제작으로 사업화 연계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 2018년
- 사업비 : 30억원 (국비 15, 지방비 10, 민자 5)
- 대상지역 : 포항시 포스텍 지구 내 벤처창업 기업

### ■ 사업내용

- 창조경제 창업보육 지원 확대
  - 창조경제 창업보육 컨소시엄 구축 및 운영 : 포스텍, 한동대, RIST,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 포항TP 등과 연계한 창업보육센터 공간, 경영 및 기술지원 강화
  - APGC-Lab 등을 통한 창업지원 : 국내 최초 대학과 기업의 공동 창업 지원 조직 활성화 지원(기업 프로젝트 과제, 창업 지원)
  - R&BD 과제 지원 : 에너지, 첨단소재, 바이오 등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R&BD 과제 및 후속개발 과제 선정 및 지원

- 초기 창업자금 지원 확대 : 과제당 일정금액의 초기 창업자금 지원

○ 창조경제 창업활성화 기반 구축

- 창업아이템 검증센터(Proof-of-concept Center) 설립 및 운영 활성화 : 창업초기 투자 위험 감소를 위한 아이디어 실현 가능성 검증, 혁신적인 초기단계 연구에서 종자자금(Seed Money) 제공, 일정한 검증을 통한 예비창업공간 및 창업보육공간 제공 등 역할 수행



-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구축 및 1인 창업기업 성장 지원 : 포스텍 및 한동대 등 지역대학생들의 창조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창업지원 활성화
- 창업포털 구축 지원 : 포스텍, 한동대 등 지역대학의 연구 성과, 연구 인력, 특허 기술 및 사업화 실적 등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포털 구축 운영
- 창업아이디어경진대회 : 포항시 주관 산학연관민 협력을 통한 기술주도형 강소기업 발굴 및 초기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경진대회 개최
- 창업비즈니스교류회 : 창업관련 기업들의 포스코 및 협력사, 포스텍, 철강산업단지 내 기업 등과 연계하여 정기 기술 및 비즈니스 교류회 실시

○ 창업기반 중간 회수시장 활성화

- 청년창업 생태계 작동을 위한 중간 회수시장 활성화
- M&A 컨설팅 전문가 양성, 정기 M&A 순회 설명회, 민관 공동 M&A기구 설치, M&A 활성화 펀드 조성, M&A DB 구축 등

■ 기대효과

- 지역내 벤처창업 기술사업화를 통한 신지식산업 육성 및 지역산업 경쟁력 확보
- 지역경제의 중심으로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활동들을 수행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 수행 가능

### 3) 창조경제 현장밀착형 창업인재양성(연계사업)

#### ■ 필요성 및 목적

-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연구와 교육이 조화된 융복합 시대에 걸맞은 통섭형 창의인재양성 필요
- 창조경제를 견인 할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학제적으로 통합된 현장 중심형 전문인력과 신생융합기술분야 인력 필요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 2018년
- 사업비 : 20억원 (국비 10, 지방비 10)
- 대상지역 : 포스텍, 한동대 등 지역대학 및 관련 교육기관

#### ■ 사업내용

- 창조경제 현장밀착형 인력양성
  - 기업 맞춤형 나노 융합기술 인력 양성(나노융합기술원): 전국 최우수 연수기관 선정('12년)으로 지속적 지원
  - 미래 IT 명품인재양성 지원 : 포스텍창의IT융합공학과(학부59명, 대학원61명)
  - 지역 IT, SW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기술 인력양성(TP)
  - 3D, 고출력, 에너지, 나노 등 관련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마련 등
  - 에너지부품소재 인력양성 사업 : 신재생에너지 및 원자력 등 전문인력양성
- 지역대학내 벤처창업 전문아카데미 및 학과 운영
  - 산업별, 기술별 전문아카데미 운영 : 벤처창업 현장커리큘럼 개발 및 교육
  - 지역대학내 창의융합과정, 융합학과(대학원) 신설 또는 확충
  - 창조인재양성을 기반으로 한 창업 및 기술경영과목 개설 등
- 창조인재양성을 위한 기술창업 캠프 운영 및 확대
  - 기술인재 뿐만 아니라 기술경영 인재 육성을 위한 인문사회과학 교육 강화 및 MBA 정규교육 프로그램 도입
  - 지역 CEO의 도전정신과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강

소기업 육성 사례 강연 등 진행

○ 기회형 창업확대(한인)

- 지역 대학 내 글로벌 한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학부 프로그램 도입

○ 청년 기술보부상 육성

- 지역대학과 중소기업이 협력하는 청년 기술보부상 육성 시스템 구축
  - ※ 대학, Open Marketing 지원, 생산품 번역, 마케팅 전략수립 지원 등
- 강소중소기업 제품 수출지원을 위한 청년 기술보부상 인력양성
  - 1단계 : 청년 기술보부상 발굴 및 운영: 지속적 청년 기술보부상 발굴·육성 및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시스템화
  - 2단계 : 지역 중소기업과 청년 기술보부상 매칭
  - 3단계 : 창의적 청년 기술보부상 육성 교육훈련(대학 교과·비교과 과정 운영)

■ 기대효과

- 벤처창업 전문인력양성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및 일자리 창출 기여
- 벤처창업 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의 변화를 감안하여 신 시장 주도형 인력, 현장적합도가 높은 실무인력, 프로젝트 리더급 고급 전문인력 등 다양한 현장 맞춤형 창조적 인재양성 가능

## 2. R&D 창조역량 강화

### 1) 창조경제 R&D 거점지구 조성(선도사업)

■ 필요성 및 목적

- 창조경제 R&D 거점지구를 중심으로 기술주도형 강소기업과 연계하여 산학연관이 협력하여 민간 주도의 일체화된 집적지 조성이 필요
- R&D 등 혁신역량을 기반으로 현 정부의 국정목표인 ‘창조경제’의 선도모델 정립 및 구현을 위해서는 창조경제 R&D 거점지구 조성이 반드시 필요
  - 포함시는 2013년 강소기업 육성 생태계조성을 위해 산학연관민을 포함한 7개 기관대표들 간의 업무협약을 맺고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 2020년
- 사업비 : 50억원 (국비 25, 지방비 25)
- 대상지역 : 창조경제 선도지역 내

## ■ 사업내용

- 창조경제 선도지역 육성을 위한 R&D 거점지구 조성
  - 창조경제 선도지역 R&D 거점지구 조성 및 연구개발 클러스터 구축 : 연구개발-창업-성장(확장) 클러스터
  - 향후 강소기업 육성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및 선도지역 단·중·장기 계획 마련
- 창조경제기반 글로벌 기업 전문연구소 유치
  - 창조경제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해 글로벌 연구소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기업 전문연구소 유치 전략 마련

제15조(글로벌 연구소 특화단지 조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창조경제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선도지역에 글로벌 연구소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글로벌 연구소 유치 및 연계 사업
2. 글로벌 연구소와 선도지역 대학 및 연구소 간 교류 확대
3. 창조경제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선도사업 발굴 및 지원

- 창조경제 특성화 대학 지정 및 육성
  - 창조경제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선도지역내 대학·대학원 및 대학부설연구소 등을 창조경제 특성화 대학, 창조경제 특성화 대학원 및 창조경제 특성화 대학부설연구소 등 지정 육성
  - 이를 위한 구체적 마스터플랜 계획 수립 : 비전, 목표, 전략, 주요 사업 등

제16조(창조경제 특성화 대학의 지정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선도지역에 있는 대학·대학원 및 대학부설연구소 등을 창조경제 특성화 대학·창조경제 특성화 대학원 및 창조경제 특성화 대학부설연구소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창조경제 특성화 대학·대학원 또는 대학부설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창조경제 특성화 대학·대학원·대학부설연구소의 지정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기대효과

- 창의적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을 기반으로 창업→성장→회수→재도전·재투자 생태계 구축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기반 확충

- 교육·연구, 기술·창업 네트워크 및 클러스터링, 사업의 지속적 성장 및 신산업·일자리 창출, 사회간접자본 및 제도의 선순환 환경 구축

## 2) 가속기벨트 연계 R&D 비즈니스 단지 조성(연계사업)

### ■ 필요성 및 목적

- 20세기 초에 물질의 기본 단위를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가속기는 기초과학뿐만 아니라 응용과학, 산업 및 의료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 중<sup>2)</sup>
  - 국내에서도 의료용 가속장치는 독자적인 개발역량과 다양한 수요기반을 확보하고 있어, 연관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
- 포항내 3, 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포함하여 세계 유일의 가속기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첨단 R&BD(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단지를 조성하여 과학비즈니스 기반 구축
  - R&D 집적 단지 : 포항TP, 나노융합기술원, 포항가속기연구소, 생명공학연구센터, 포항금속소재진흥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한국산업과학연구원
  - 3세대 방사광 가속기 빔라인 증설('11~'15, 387억원), 4세대 방사광 가속기 건설('11~'15, 4,298억원) 등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 2018년
- 사업비 : 50억원 (국비 25, 지방비 25)
- 대상지역 : 포항시 포스텍 지구 내

### ■ 사업내용

- 가속기 융합 기업지원센터 구축 및 활성화
  - 가속기 융합 사업에 대한 원스탑 기업지원체제 구축
  - 3자간(강소기업/방사광가속기/양성자가속기) 기술개발 컨소시엄 구성 및 운영
- 가속기벨트 연계 R&D 비즈니스 단지 조성<sup>25)</sup>

25) 이석희·나종규(2014), 「방사광가속기 연관산업 비즈니스타운 조성 기본구상」, 대구경북연구원

- 가속기 Test-bed신약개발산업화센터, 질병조기진단센터, 산업기술융합센터, 국제기술협력센터와 연계하여 거대과학기술기반 중심의 연관산업 생태계 주도



<그림 7-4> 가속기 연관 R&D 비즈니스단지 운영 모형

- 산업화 핵심 기술개발 및 비즈니스체계 구축
  - 신산업 중심 기술개발과 산업화, 산업생태계 조성 및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추진
  - 일본의 SPring-8, 미국 SLAC, 독일 DESY 등 해외 연관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 및 공동기술협력체계를 구축
  - 관련 기업지원 컨설팅 및 비즈니스체계 구축
  -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로드맵 설정과 세부전략 마련
- 장기 기술융합 사업 발굴 및 추진
  - 가속기 활용 기술개발과 산업화가 가능한 강소기업을 중심으로 집적을 유도할 수 있는 바이오·의료산업, 소재·부품산업, 에너지산업을 중심으로 융합기술 개발

### ■ 기대효과

- 가속기 R&BD 비즈니스 단지 조성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속기 비즈니스타운으로 조성
- 기존의 기초연구 분야로 제한된 가속기 활용을 탈피하여 산업체의 가속기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

### 3) R&D 서비스 연계협력 기능 강화(연계사업)

#### ■ 필요성 및 목적

- 포항지역내 첨단 과학 R&D 인프라 서비스간 연계협력 강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
  - R&D 집적 단지, 3세대, 4세대 방사광 가속기 건설, 막스 플랑크 한국 연구소 지원('11~'15, 358억원),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 지원('08~'17, 210억원) 등
  - 과학벨트 DUP연합 캠퍼스(포스텍) 조성 : IBS 연구단 산하 4개 연구단 유치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 2018년
- 사업비 : 10억원 (국비 5, 지방비 5)
- 대상지역 : 포항내 연구 및 지원기관(포항TP 등)

#### ■ 사업내용

- 기초과학 R&D 인프라 연계협력 발굴 및 추진
  -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설 및 양성자가속기 조기 정상 운영
  - 막스플랑크한국연구소 연계 협력 : 국제 공동연구, 실험장치 구축 및 확대
  - 과학벨트 DUP연합캠퍼스 연구단 산하 4개 연구단과의 협력 강화: 연구 → 기술 개발 → 상용화
- R&D 서비스 지원 강화
  - 빅데이터, 고부가 지식컨설팅 분야, 연구개발, 엔지니어링 등

#### ■ 기대효과

- 지역 중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R&D 및 사업화 지원 촉진
- R&D 산업의 상용화와 산학연관 협력체계로 지역 산업 경쟁력 제고

#### 4) 자율형 창의 R&D 성과 극대화 시스템 구축(연계사업)

##### ■ 필요성 및 목적

- 지역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이 필수적이거나, 높은 비용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소규모 기업에서 자체 역량으로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
- 포항지역내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도 기술을 사업화 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인해 사업화를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러한 기술들을 실질적인 제품 출시까지 이끌어줄 정책적 지원이 요구
- 이러한 점에서 포항지역내 우수한 R&D 역량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창조산업화 지원을 위해서는 자율형 창의 R&D 성과 극대화시스템 구축 필요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 2018년
- 사업비 : 20억원 (국비 10, 지방비 10)
- 대상지역 : 포항지역 내 대학 및 중소기업

##### ■ 사업내용

- R&D 지원 프로그램 방식의 다양화
  - 선개발 후포상형 R&D, Grant형 R&D, 애플형 R&D
  - 각 산업별 기술형 맞춤형 R&D 지원 프로그램 적용
- R&D 기관의 지역 중소기업에 기술 이전 및 상용화 촉진
  - R&D기관 국가공모 신규사업 과제발굴 지원
  - R&D기관 기술사업화 예산지원 사업
  -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과관리제도 도입
    - ※ 나노플랫폼 촉진 활용사업 : 중소기업 지원 범용 플랫폼 기술 선정
    - 그린에너지 선도사업 발굴 육성 사업(TP) : 지원 대상 중소기업 선정
    - 에너지부품소재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POMIA)
- 지역 내 R&D 지원기관 통합시스템 구축

- R&D 기관이 보유한 장비, 공간, 기술 등을 중소기업에 우선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R&D 기관 특허, 장비, 기술 등 DB화

#### ■ 기대효과

- 포스텍, 한동해 등 지역대학, 지원기관 등을 중심으로 세계적 수준의 연구역량 지원하여 산업적 성과 극대화 → 국가 및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
- 포항시의 높은 수준의 연구역량을 활용하여 아이디어에서 창업 및 제품화까지 전주기적인 지원으로 기술의 고부가가치화 실현 가능

### 3. 창조경제 기반 창조기업 육성

#### 1) 창조경제 강소기업 육성(선도사업)

##### ■ 필요성 및 목적

- ‘포스코 중심의 철강산업’ +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강소기업’의 시너지 효과로 세계경제 환경의 변화에 흔들림 없는 지속성장 가능한 산업구조 구축
- 지역 내 우수한 인재와 R&D 인프라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작지만 강한 기업, 강소기업 육성으로 포항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 협력, 융합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R&D기관과 강소기업을 하나로 밀착
  - 기술개발, 창업지원, 금융 및 펀드조성으로 강소기업 지속성장 생태계 조성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 2020년
- 사업비 : 40억원 (국비 20, 지방비 20)
- 사업대상 : 포항지역내 기술주도형 강소기업

### 포스텍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를 강소기업으로 육성

- 2012년 7월에 설립한 포스텍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인 'POSTECH 홀딩스'를 통한 대학 보유기술의 사업화 촉진
- 매년 2개 이상의 자회사를 설립하여 2020년까지 총 20개의 자회사 육성 계획
- 2,200여건의 지식재산권과 매년 500여건 이상의 신기술 활용

#### ■ 사업내용

-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
  - 강소기업 육성과 거점지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제도적 뒷받침 마련
- 강소기업 육성지원 센터 설립
  - 지역 전략산업 연계 중소기업의 강소기업화
  - 대중소기업 협력을 통한 강소기업화 등
- 창조경제기반 자립형 본 글로벌(Born-Global) 기업 육성
  - 자사의 뛰어난 제품 경쟁력을 앞세워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기업
- 창조경제기반 기업-연구소-지원기관 등 연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 기대효과

- 기존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R&D기관 간 협의체 구성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연계장치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창조경제의 핵심인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리딩 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및 지역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선도
- 국가적 차원이 아닌 시 자체적으로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를 선제적으로 조성하여 강소기업 유치, 지원, 인프라에 관한 종합적 계획을 통해 정책효과 극대화

## 2) 창조경제기반 중소기업 창조역량 강화(연계사업)

#### ■ 필요성 및 목적

- 포항의 기존 철강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고, 글로벌 신성장 동

력 창출을 위해서는 창조경제에 기반 한 전반적 산업구조 재편이 반드시 필요

- 한중FTA 체결 등 FTA 환경 변화에 따른 세계 경제 시장 재편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글로벌 시장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지역 중소기업의 창조역량 강화가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
- 지역차원에서 정부의 창조경제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서는 R&D, IT 등 기존 창조적 역량을 기반으로 지역 내 중소기업의 창조역량 강화 지원이 매우 필요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 2018년
- 사업비 : 20억원
- 지원대상 : 포항지역 내 중소기업

### ■ 사업내용

- 중소기업 기술 및 경영 닥터 사업단 구성 및 운영
  - ‘중소기업 기술 및 경영 닥터제’를 통한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 및 경영 지원
  - 지역 내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일사천리 중소기업 기술 혁신지원 및 경영 지원을 통한 FTA 환경변화에 대응한 적극적 해외진출 시장 확대
- 뿌리산업의 강소기업 집중 육성 프로그램 운영
  - 중소기업의 기반산업이 되는 뿌리산업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기초혁신역량 강화
- 대·중견기업 은퇴 전문직 근로자 연계 기술전수 사업
  - 대·중견기업의 퇴직 전문은퇴인력을 활용한 중소기업 실버 멘토 운영
  - 기존 중소기업 애로기술 지원을 위한 전문기술 전수
- 중소기업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
  - IT융합부품, 차세대 부품, 고부가신소재 등
- IT기반 제조업+SW산업 융합화
  - IT+의료, 교육, 금융, 유통, 교통, 생활용품, SW 등

&lt;표 7-2&gt; 성장단계별 경영닥터 관련 세부 사업내용 (안)

구 분	사업내용
맞춤형 코디네이트	· 입주기업 기업분석보고서 작성·유지 · 입주기업과 공동으로 기업발전전략수립
시제품 제작 지원	· 재료비, 설계 및 디자인비, 금형제작비, 시험검사비 지원
입주기업 마케팅 지원	· 입주기업 기술·제품 전시회 참가비 지원 · 입주기업 홍보 카달로그 제작 지원
컨설팅 및 제품인증 지원	· 이노비즈, ISO 2000 등 각종 인증 획득을 위한 컨설팅 및 인증료 지원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 지적재산권 확보(특허·실용신안 출원·등록, 상표등록 등)를 위한 경비지원 · 지식재산권 확보 전략 수립 계획 작성 지원 등
창업보육 기업인의 밤	· 우수기업 대표·지원인력 시상 · 창업보육센터 현황 및 입주기업 소개, 저명인사 강의 등

자료 : 대구경북연구원, 대구경북 중장기발전계획: 산업부문, 2011

### ■ 기대효과

- 지역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혁신역량 강화 및 신속하고 체계적인 기업애로 처리 등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장래 성장 동력 확보 가능

## 3) 국내외 글로벌 강소기업 유치 및 지원(연계사업)

### ■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중국 등 동남아시아 지역의 생산비용 증가로 생산기지로서의 매력도 감소하면서 미국, 한국 등으로 새로운 생산기지의 이전을 검토 중
  - 특히 FTA 체결이후 미국, 한국 등 새로운 생산기지로 부각되면서 중국에 진출한 많이 기업들이 본국으로 이전하고 있는 상황
- 세계적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보유한 강소기업의 유치는 창조경제를 견인할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이러한 점에서 포항이 보유한 R&BD 역량을 활용한 산학연관 혁신주체별 차별화된 강소기업 유치 전략 수립을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을 적극 유치할 필요

### 포스텍 기업연구소 유치 실적

- 포스텍 연계 성장기업 협의체
  - 포스텍 전체 동문기업 수는 2012년 기준 총 100여개 기업으로 총 매출액 8,000억 원, 고용인원 5,000명 수준
  - 2012년 7월 기준 APGC에 가입한 기업은 52개로 이중 서울·경기권 28개, 포항 22개, 기타 지역 2개 기업이 활동 중
  - 제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등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
  - 기술벤처로 창업자의 전공을 기반으로 직·간접적으로 모교 포스텍 교수·연구진과 연결된 벤처·강소기업
- 기업연구소 누적 유치계획
  - 2014년 12월까지 포항에 APGC 기업연구소를 50개까지 유치 계획
  - 2025년까지 누적 기업연구소를 154개 유치하여 누적 고용인원 7만명, 누적 매출액 21조원 계획
  - 2035년까지 누적 기업연구소를 400개 유치하여 누적 고용인원 24만명, 누적 매출액 80조원 계획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 2018년
- 사업비 : 30억원 (국비 15, 지방비 15)
- 사업대상 : 지역 내 강점 연계 글로벌 강소기업

<표 7-3> APGC 기업연구소 누적 유치계획(안)

구분	2014년	2018년	2025년	2035년
기업수	50개	84개	154개	400개
고용인원	2,500명	22,200명	70,000명	240,000명
매출액	4,000억원	6,000억원	21조원	80조원

자료: APGC(2013), 「포항 강소기업 육성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

#### ■ 사업내용

- 포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거점 지정을 위한 투자유치 제도 개선 필요
  - 투자환경 변화에 따른 투자기업 지원기준 개정으로 기업유치 활성화 도모
- 글로벌 강소기업 지방투자유치공사 설립 및 운영
  - 글로벌 강소기업 투자 유치 의향 조사 : KOTRA 등과 연계
  - 글로벌 강소기업 유치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 : 컨설팅, 마케팅 등
  - 글로벌 강소기업 유치 지원 사업

- 해외 연구소, 대학 기술개발 동향 파악, DB 구축
- 글로벌 강소기업 유치전략 마스터플랜 수립
  - 글로벌 강소기업 유치전략을 위한 개념적 틀 마련
  - 강소기업 유치를 위한 비전, 목표, 전략 등 세부 계획을 수립
  - 지역 산학연관 공동참여를 통한 구체적 실행프로그램의 마련
    - ※ 포항시, 포항TP, 지역대학(포스텍, 한동대), 지역연구기관, 지역기업 등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 기관별 R&D 전략 수립 등 협력형 기업유치 프로그램 수립
- 글로벌 강소기업 투자 유치 전략 마련
  - 우수한 입지조건을 갖춘 저가 산업용지 공급 + 기업 입지 인센티브
  - 글로벌 전문(기술선도)기업 집적화 및 선도기술형 산업클러스터 형성
  - 강소기업 유치 시, 포항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한 공동 전략 마련
  - 지역내 글로벌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연계한 우수 기업 유치
- 글로벌 강소기업 유치관련 정보수집체계 구축
  - 세계적 수준의 강소기업 유치를 위한 대상기업의 기초정보 사전수립 체계 구축
    - ※ 불특정 다수 대상 홍보나 투자설명회에서 벗어나 특정사업군별로 타깃기업(Target Company)을 대상으로 유치활동 전개를 위한 DB 구축, 전략적 접근방법 시도
  - 관련 강소기업 자료 수집을 위하여 지역내 강소기업군,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대책 지원대상 기업군, 세계 주요 강소기업 연계 네트워크 구축 등
- 산학연관 참여 강소기업 투자유치 세일즈 팀 구성, 유치사업 추진
  - 포항지역의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투자유치 세일즈팀 구성
  - 강소기업 유치 활동 독려, 민간기관이 강소기업 유치시 투자비에 비례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여 제공
- 강소기업 지정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강소기업 지정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유예 등 인센티브 제공
  - 지방세 정기조사, 취약분야 특별조사 등에 대한 강소기업 부담 최소화
- 지역 기업 연계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 투자유치 활성화
  - 향우회, 외부전문가, 유관기관(KOTR, KITIA, 경상북도 서울센터 등), 지원기관(포항상의, 중기진흥공단, 경제진흥원 등), 협의체(APGC,기업협의회 등) 활성화

### ■ 기대효과

- 국내외 글로벌 강소기업 유치를 지역 산업과 연계 협력 강화, 자체 산업 역량 제고 및 일자리 창출 선도
- 국내외 글로벌 강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신성장산업 육성 기반 구축 및 소득 창출

## 4) 중소기업 애로기술 지원 및 업종전환 유도(연계사업)

### ■ 필요성 및 목적

- 중소기업 애로기술 및 경영활동 지원에 있어 포스텍, 한동대 등 지역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자원의 활용을 통한 기업 맞춤형 실질적 지원책이 요구
- 창조경제를 견인할 중소기업 핵심기술에 기반 한 유망제품을 중심으로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R&D 및 경영 지원체제 구축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필요
- 최근 포항지역 내 기업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기존 철강산업 중심의 단일 산업 구조에서 소재, 바이오, 자동차부품 등 다원화된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다각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 2018년
- 사업비 : 25억원 (국비 10, 지방비 10, 민자 5)
- 사업대상 : 포항지역 내 한계 중소기업

### ■ 사업내용

- 중소기업 애로기술 지원 및 업종전환지원센터 운영
  - 포항시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중소기업지원센터 등과 연계
  - 기존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
    - ※ 한계 중소기업 구조전환, 폐업 관련 일괄 컨설팅, 애로사항 멘토링 제도, 기업 맞춤형 솔루션 제공, 중소기업-대학-연구기관간 R&D 연계, 제조현장 창조기술 지원

- 중소기업 산업현장 요소애로기술 지원(제2의 도약 지원)
  -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 혁신기업형 기술개발 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특허기술거래 지원 및 첨단장비활용 기술개발 사업 등 연계
- 전환기 중소기업 융합기술 지원(구조전환지원)
  - 포항시 기술이전센터 운영 확대, 타 기업 연계형 기술개발 지원, 기관연계형 기술개발 사업 등 추진
- 중소기업 디자인 경쟁력 강화 사업
  - 중소기업 디자인 거점센터 사업 : 대경디자인센터 연계
  - 지역 우수기업 제품 브랜드화 및 디자인기반 기술개발 지원

#### ■ 기대효과

- 중소기업 애로기술 지원 및 업종전환 지원을 통한 창조경제기반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에 기여
- 중소기업 현장지원 강화를 통한 보다 실질적인 기업 지원책 마련, 지역경제 활성화

## 4. 창조생태계 구축

### 1) 창조경제 선도지역진흥재단 설립(선도사업)

#### ■ 필요성 및 목적

- 창조경제 선도지역의 효율적 추진 위해서는 창조경제 선도지역진흥재단 설립을 통한 재정지원 확보가 매우 중요
- 이러한 점에서 창조경제 선도지역진흥재단 설립을 통해 창조경제 선도지역의 실질적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반 확보

제40조(설립) ① 선도지역 육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선도지역에 선도지역진흥재단을 설립한다.  
 ② 진흥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재단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 2020년
- 사업비 : 비예산
- 대상지역 : 포항시 포스텍 지구 내

## ■ 사업내용

- 창조경제 선도지역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방안 마련
  - 창조경제 선도지역 활성화를 위한 앵커기관으로 역할
  - 창조경제 선도지역진흥재단의 구체적 역할, 예산확보 방안 등 제시
- 창조경제 산학연관 통합형 거버넌스 및 창조기업 육성을 위한 전담기구로서 역할
  - 연구개발 관련 시설 및 기자재 취득, 개발, 공급 및 관리
  - 산업 및 지원 시설 매각, 임대, 사후관리 등 전반적 관리
  - 선도지역 기반시설 구축 및 정주환경 정비 등

## ■ 기대효과

- 선도지역진흥재단 설립을 통한 창조경제 선도지역 사업의 실질적 추진근거 마련

## 2) 창조 금융생태계 구축(연계사업)

### ■ 필요성 및 목적

- 지역경제의 중추인 중소기업의 조속한 활력 회복 및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 중시의 창조적 금융생태계 구축 필요
  - 중소기업지원 정책자금의 역할, 정체성, 목적 및 대상을 보다 명확히 설정 필요
  - 정책자금이 매출규모가 크고 업력이 긴 성숙기업에게 배분되고 정책자금 지원시 여전히 담보력을 중시하는 대출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노력이 필요
- 지역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활동 강화 및 창조산업화를 위한 용자가 아닌 투자 중심의 다양한 정책금융지원 필요
  - 초기 실패에 대한 위험부담에서 벗어나 기술형 창업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이 용자가 아닌 투자 중심으로도 전환

※ 포스코 동반성장금융 프로그램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 기술 개발을 위한 상생협력지원펀드, 협력기업지원펀드 운영 중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 2018년
- 사업비 : 10억원 (국비 5, 지방비 5)
- 사업대상 : 지역 중소기업 및 금융기관

## ■ 사업내용

- 기존 금융지원프로그램 연계 지원 강화
  - 중소기업 경영안정화 금융지원 :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이차보전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자금지원(경북중기진흥공단), 중소기업 신용보증지원(경북신용보증재단) 등 연계
  - 중소기업 수출 및 경쟁력 강화사업자금 지원 : 중소기업 수출지원(해외시장 개척),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교육,마케팅 등) 등 연계
  - 테크노파크 등을 통한 국가 출연 R&D성 정책자금에 대한 정보 공유, 중소기업 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정책 금융 활용에 대한 컨설팅 제공
  - 포스코가 운영 중인 동반성장 금융프로그램을 지역 중소기업이 활용하는 프로그램 도입
  - 지방은행의 지역 밀착형 현장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조기 발굴 지원, 각 금융기관의 '기술금융'제도를 적극 활용
- 글로벌 기술주도형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 펀드 조성
  - 지역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원할 지역 펀드 조성(지역 기관이 출자), 모태펀드를 활용하여 규모를 확대하고 위험부담 감소
  -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펀드, DVB(Death-Valley Bridge) 펀드, 모태펀드 등 다양한 목적의 펀드 조성
- 중소기업 자금지원 강화
  - 중소기업 육성 기금 및 클라우드 펀딩 사이트 구축(예, 실리콘 벨리 Kickstarter.com) : 투자자들이 자기책임하에 기술력을 평가하여 자유롭게 투자

### ■ 기대효과

-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동반성장 금융 프로그램 지원 강화를 통해 R&D 사업화 촉진 및 중소기업의 우수 인력 확충에 기여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을 통한 신사업 창출 확산 및 성장가속화 유망 중소기업의 사업화 자금조달 지원 및 역외 기업의 지역 유치 확대

## 3) 과학·문화·예술이 융합된 창조도시공간 조성(연계사업)

### ■ 필요성 및 목적

- 창의적 공간으로서 창조경제 선도지역 조성을 위해서는 과학, 문화, 예술이 어우러진 창조적 공간 창출이 매우 중요
- 최근 포항 KTX 개통과 더불어 향후 포항-울산간 고속도로 개통(2015)을 적극 활용하여 최고 수준의 어메니티 조성 및 도시 경쟁력 확보에 주력할 필요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 2020년
- 사업비 : 20억원 (국비 10, 지방비 10)
  - HW 사업의 경우 민자 및 중앙 부처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대상지역 : 포항지역 전역

### ■ 사업내용

- 우수한 교육 여건 마련 및 외국인 진료병원 지정·운영 : 외국인 자녀 교육 시설 확충 및 의료 서비스 기능 확충이 중요
  - 세계적인 R&D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해외 첨단인력 유치를 위해 외국인학교 설립으로 연구인력 자녀교육시설 확충
  - 해외 첨단인력 유치를 위해 편리한 의료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외국인 진료병원 및 약국 지정
- 외국인학교 설립 및 운영지원
  - 해외유수의 연구기관, 기업체 및 첨단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주거의 편의성

과 함께 교육환경이 중요한 입지여건으로 작용함.

- 유치한 연구인력 자녀들의 교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외국인학교를 설립함.
- 외국인 교원을 통해 전 과목을 영어로 수업하고 국제공통 대학입학 자격이 주어지는 IB(AP)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교육의 틀을 국제화 함.
- 재원조달은 민관 합작투자 방식이나 지방채 발행,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병행

#### ○ 외국인 진료병원의 지정 및 운영

- 유치병원 후보군(예 : 존스홉킨스, Boston General Hospital, 메이오클리닉 등 세계유수병원 대상)을 선정해 유치
- 국내병원과 기존 의료인 교류·연구협력 관계를 투자협력 관계로 발전
- 병원건물·시설은 Project Financing 등으로 구체적 확보방안 강구
- 선도지역 내 병원 및 의원, 약국을 외국인 진료 지정의료기관으로 지정

#### ○ 글로벌 정주환경 조성

- 고품격 주거 기능: 우수인력 거주를 위한 다양한 주거유형과 품격 높은 정주공간 조성
- Leisure Complex 기능: 문화·여가생활을 지원하고 구성원들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복합형 스포츠 레저시설 도입
- Ubiquitous 친환경 기능: U-City 모델(통신망, 서비스모델, 통합기능 등)을 적용하여 과학시설, 비즈니스시설, 문화시설별로 U-인프라 구축

#### ○ 창조적 도시공간 조성

- 오페라, 연극 등 여러 분야를 공연할 수 있는 대형 공연장을 건립하여 도시를 상징할 수 있도록 랜드마크(land mark)로 조성
- 공원, 광장,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공용 편의시설들을 연계 통합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 ○ 여가 공간 조성 확대

- 역사, 문화와 첨단이 공존하는 도시 조성이 필요하며, 도심재생 프로그램 추진, 다양한 도시개발 기법을 활용한 다수 시범 지구 사업 추진, 도시 빈 공간 녹지화, 걷기 편한 도시 만들기, 포항운하를 활용한 도시공간 개발
- 운하 주변부와 수변 공간의 조화로운 개발을 통해 포항만의 개성을 창출하고 단기간의 이슈로 머물지 않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

○ 환동해 문화 중심 도시 건설

- 기업, 연구소,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해서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환동해 문화 중심도시로 도약할 필요
- 문화 예술 기반 시설 확충, 테마형 전통문화 아이템 발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행사 개최, 지역 문화예술 역량 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
- 경주 문화재와 포항 IT기술을 접목하여 사이버관광단지를 조성, 모노레일, 유람선을 운행 등 추진(UX 연구소 설립)<sup>26)</sup>

■ 기대효과

- 포항지역 내 과학, 문화, 예술, 환경 등이 어우러진 우수한 정주환경 조성으로 글로벌 기업 유치 및 지역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
- 지역 내 전반적 어메니티 및 정주환경 개선에 따른 도시 경쟁력 확보 가능

4) 창조경제기반 글로벌 시장개척 프로그램 개발(연계사업)

■ 필요성 및 목적

- FTA 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 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적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이 필요
- 지역 중소기업들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해외 마케팅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글로벌 해외시장 개척 지원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필요
- 중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 진출이 필수적이거나 지역 여건상 프로그램과 전문가가 미흡
- 지역 중소기업이 해외 현지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한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 2018년
- 사업비 : 10억원 (국비 5, 지방비 5)

26) UX 연구소란 User Experience(사용자 경험)의 약자임.

- 사업대상 : 포항시 기술주도형 강소기업 대상

## ■ 사업내용

- 창조경제 국제협력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
  - 기존 포항 수출지원센터를 확대하여 연계 운영, KOTRA와 연계하여 국내외 동향 및 해외시장 공동개척단 운영 등 실질적 교류 협력 프로그램 발굴 및 추진
- 창조경제기반 해외시장 개척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 단순 수출지원업무 뿐만 아니라 KOTRA와 연계하여 국내외 동향 및 해외시장 공동개척단 운영 등 실질적 글로벌 마케팅 지원
  - KOTRA 종합무역정보와 같은 시장 정보, 기술정보, 전시회 정보를 지역 중소기업에 효율적으로 제공
  - CES, SEMA, IFA 등 국제전시회를 지속적으로 참가하여 세계 시장 및 기술동향을 기획조사하고 지역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글로벌 기술사업화 아이템을 발굴하여 신사업 전략기획 및 지원
  - 해외시장 전문 마케팅을 업체와 연계하여 지역 업체 대상으로 맞춤형 해외 시장 컨설팅 실시
  - 공동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국제박람회 부스 참여 지원, 순회 수출상담회 개최, 특정 분야의 해외 바이어를 국내에 초청하는 상담회 개최
  - 국가에서 설치하여 운영 중인 글로벌 거점(해외 중소기업지원센터, 해외IT지원센터 등)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사업 확대
- 창조경제기반 글로벌 시장개척 및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 포스텍, 한동대 등 지역대학의 R&D 및 기술사업화 사업, 산학연협력사업, KOTRA, 중소기업청 지원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최적의 글로벌 시장개척지원 프로그램으로 디자인하는 지식서비스 제공
  - 미국, 유럽, 러시아 등 해외 기술 도입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술교류회 행사 개최, 포스텍의 기술거래 인프라를 활용 → 해외시장 정보 네트워크 구축

## ■ 기대효과

- 창조경제기반 지역의 강소기업의 취약한 상품·기술기획 기능 확보를 통해 글로벌 기술사업화 실현 및 신규 사업 진출 가능성 확보

- 창조경제기반 해외시장 진출 맞춤형 세부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지역 강소 기업과 대학이 상호협력 강화 및 지역차원에서 창조경제 구체화 가능

---

## 참 고 문 헌

---

- 경상북도, 2013, 「경북통계연보」
- 경상북도, 2014, 「동해안 연구개발특구 지정논리 연구보고서」
- 김병태, 2014, 「창조경제 선도지역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 대구경북연구원
- 대구경북연구원, 2010, 「뉴디자인 대구경북 : 산업부문, 과거와 현재」
- 대구경북연구원, 2010, 「뉴디자인 대구경북 : 산업중장기발전방향」
- 대구경북연구원, 2010, 「뉴디자인 대구경북 : 동해안권 중장기 발전계획(I)」
- 대구경북연구원, 2010, 「뉴디자인 대구경북 : 동해안권, 과거와 현재」
- 미래창조과학부, 2013,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방향」
- 미래창조과학부, 2013, 업무보고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2014, 제2차 연구개발특구육성 종합계획 변경(안)
- 미래창조과학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www.ntis.go.kr](http://www.ntis.go.kr)
- 법제처종합법령정보센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법제처종합법령정보센터, 「창조경제 선도지역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신훈규, 2014, 「강소기업 육성 추진계획」, 창조도시 포항 세미나
- 이민화·차두원, 2013, 「창조경제」, 북콘서트
- 이석희·나중규, 2014, 「방사광가속기 연관산업 비즈니스타운 조성 기본구상」, 대구 경북연구원
- 전국경제인연합회, 2010, 「의원입법 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지역발전위원회, 지역발전포털(<http://www.redis.go.kr>), 2015. 2
- 지역발전포털(<http://www.redis.go.kr>)
- 차두원 외, 2013, 「창조경제 개념과 주요국 정책 분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통계청 e-지방지표(<http://kosis.kr/>)
- 통계청, 2013, 「지식재산통계연보」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2015. 3
- 포항시, 2009, 「글로벌 포항비전 2020」
- 포항시, 2013, 「포항통계연보」
- 포항시, 2013, 「포항문화비전 2022」

- 포항시, 2014, 「창조도시포항 미래발전전략」
- 포항시, 2014, 「포항통계연보」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3, 「2013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3, 「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 한국은행 포항본부, 2013, 「포항지역 연구개발(R&D)의 경제효과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부 록

1. 창조경제 선도지역 특별법안
2. 특별법안 검토보고서
3. APGC 설문지 및 조사결과



## 창조경제 선도지역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이병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678
----------	-------

발의연월일 : 2014. 5. 19.

발 의 자 : 이병석·박명재·정희수

강석호·이만우·이철우

황진하·김태환·강길부

정수성·이노근·장윤석

김재원·한선교·정문헌

김무성·황영철·이완구

정의화·서용교·이종훈

이채익·정갑윤·김장실

박창식·강은희·이에리사

이군현·정우택·이상일

이종진 의원(31인)

### 제안이유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개인의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를 활성화하여 경제성장률보다는 고용률을 지향하고,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을 추구해야 함.

새로운 경제체제인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개인, 1인 창조기업, 벤처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이 복합된 생태계를 기반으로 상생과 협력의 선순환 경제를 실천할 수 있는 창조경제 선도지역을 조성하여 그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선도지역을 지정하고 이를 육성·지원함에 필요한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기술주도형 강소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선도지역을 조성함으로써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기술주도형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창조경제의 정의를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가치로 두고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과 융합하여 신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산업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 및 국가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경제체제로 함(안 제2조).
- 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창조경제선도지역육성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도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선도지역 지정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등 사유가 있으면 선도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마.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선도지역의 육성을 위하여 선도지역육성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창조경제선도지역육성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함(안 제7조).
- 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 사. 선도지역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속으로 창조경제선도지역육성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 아. 선도지역에서의 창조경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과 기술주도형 중소기업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둠(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 자. 선도지역의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동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특례, 글로벌 연구소 특화단지 조성, 창조경제 특성화 대학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둠(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 차. 창조경제 기반 구축 및 국제적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입주기관에 대한 세제 및 자금 지원, 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외국인 진료병원 등의 지정·운영, 교육·문화예술·관광시설 지원 등의 규정을 둠(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 카. 선도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지정취소 및 대체 지정, 실시계획의 승인, 허가 등의 의제, 개발사업의 착수,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비용의 부담에 관한 규정을 둠(제21조부터 제28조까지).
- 타. 선도지역의 관리를 위하여 선도지역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의 용도를 주거구역, 상업구역, 녹지구역,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산업시설구역으로 구분함(안 제29조 및 제30조).
- 파.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 입주하려는 자의 입주승인, 입주기관의 부지의 양도 제한, 경매 등에 따른 건축물 등의 취득, 건축 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둠(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하. 선도지역 육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선도지역에 선도지역진흥 재단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40조).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병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창조경제 선도지역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선도지역을 조성함으로써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기술주도형 강소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조경제”란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가치로 두고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과 융합하여 신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산업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 및 국가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경제체제를 말한다.
2. “창조경제 선도지역”이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창조경제를 선도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지역으로서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점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3. “기능지구”란 창조경제 선도지역(이하 “선도지역”이라 한다) 안에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 개발연구 및 사업화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4. “기술주도형 강소기업”이란 선도지역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에 기반을 두고 기술집약도가 높은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5.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말한다.
6. “공공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국립연구기관
  -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7. “입주기관”이란 제31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입주승인을 받은 자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선도지역이 창조경제 성과를 창출 및 확산시키는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선도지역의 지정 및 육성과 관련하여 이 법에 따른 각종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도지역을 지정·육성하는 경우 이미 구축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등 창조경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고, 창조경제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이 법 중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례를 정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7조에 따른 선도지역육성종합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장 창조경제 선도지역 및 기능지구의 지정 등

제5조(선도지역 및 기능지구의 지정)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선도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청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제9조에 따른 창조경제선도지역육성위원회의 심의·의결

② 선도지역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연구소·기업의 집적(集積)·연계되어 있을 것

2. 제1호의 기관이 산출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벤처기업의 창업을 하기에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

3.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기반이 구축되어 활용이 가능한 지역일 것

4. 창조경제를 지원할 광역교통망·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5. 그 밖에 글로벌 연구소의 집적 등 전문인력 확보, 지속발전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선도지역의 개발연구 및 사업화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능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 ④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 중 기능지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해당 지역을 기능지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선도지역 및 기능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⑦ 제2항 각 호에 따른 구체적 요건 및 제3항에 따른 기능지구 지정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선도지역의 지정해제)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선도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도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지정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선도지역 지정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선도지역이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 2.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이나 선도지역사업 시행자의 사업 참여기피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선도지역을 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
-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선도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제5조제1항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선도지역의 지정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도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선도지역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선도지역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선도지역육성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선도지역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선도지역의 대학·연구소·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및 지식재산권 관리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선도지역의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선도지역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 간 교류와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선도지역의 체계적인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외국인의 투자 유치 및 정주(定住) 여건의 조성에 관한 사항
7. 창조경제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8.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능적·공간적 연계성 강화에 관한 사항
9.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확대 및 재원의 조달·운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선도지역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종합계획은 제9조에 따른 창조경제선도지역육성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변경된 종합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과학기술 진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제5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제9조에 따른 창조경제선도지역육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관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창조경제선도지역육성위원회) ① 선도지역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속으로 창조경제선도지역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선도지역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선도지역의 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5. 선도지역의 지정 및 육성에 필요한 재정지원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선도지역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 간의 의견조정  
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선도지역의 지정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선도지역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장 창조경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

제10조(창조경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기반 구축)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선도지역에서 이루어진 창조경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선도지역에서 이루어진 창조경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거래 시장 개설,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 등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선도지역의 대학·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창조경제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취득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선도지역의 대학·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거래 시장과의 연계체계 등 필요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선도지역의 대학·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기업이 창조경제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한 성공 사례를 발굴하여 포상하고, 법률·회계·엔지니어링 및 경영 자문 등 기업경영 활동과 관련한 서비스업을 육성하는 등 선도지역의 과학기술혁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기술주도형 강소기업의 지정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기술주도형 강소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분야의 국내외 특허권을 보유할 것
2. 제1호에 따른 특허권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할 것
3. 연간 총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 및 제2호에 따른 생산·판매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4. 선도지역에 입주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주도형 강소기업의 지정 절차와 그 밖에 기술주도형 강소기업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기술주도형 강소기업의 지정 취소)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술주도형 강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휴업·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업 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주도형 강소기업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3조(기술주도형 강소기업 지원)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술주도형 강소기업을 활성화하고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기술주도형 강소기업 지원을 위한 창의적 인재 양성
2. 기술주도형 강소기업 사업모델의 개발과 확산
3. 기술주도형 강소기업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활용 지원
4. 기술주도형 강소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 시장개척 지원
5. 기술주도형 강소기업 발굴을 위한 이종(異種) 분야 간 교류의 촉진
6. 기술주도형 강소기업을 발굴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 및 용자
7. 기술주도형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금 조성 등 자금지원 확대
8. 그 밖에 기술주도형 강소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술주도형 강소기업 지원 사업의 범위·대상·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공동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① 선도지역에서 창조경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의 필요성과 세부내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글로벌 연구소 특화단지 조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창조경제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선도지역에 글로벌 연구소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글로벌 연구소 유치 및 연계 사업
2. 글로벌 연구소와 선도지역 대학 및 연구소 간 교류 확대
3. 창조경제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선도사업 발굴 및 지원

제16조(창조경제 특성화 대학의 지정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선도지역에 있는 대학·대학원 및 대학부설 연구소 등을 창조경제 특성화 대학·창조경제 특성화 대학원 및 창조경제 특성화 대학부설연구소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창조경제 특성화 대학·대학원 또는 대학부설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창조경제 특성화 대학·대학원·대학부설연구소의 지정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장 창조경제 기반 구축 및 국제적 비즈니스 환경 조성

제17조(입주기관에 대한 세제 및 자금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능지구에 입주하는 국내외 투자기업 및 연구기관(이하 “투자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투자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투자기관에 임대하는 부지의 조성,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기관에 대하여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18조(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도지역에 있는 외국인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아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도지역에 있는 국내대학이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의 공동운영 및 인적·물적 교류를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외국인 진료병원 등의 지정·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선도지역의 외국인에게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국인 진료병원 및 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진료병원 및 약국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 제20조(교육·문화예술·관광시설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도지역에 각급 학교, 문예회관·도서관·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관광·숙박·위락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교육·문화예술·관광시설”이라 한다)이 우선 설치 또는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선도지역에 교육·문화예술·관광시설을 설치하거나 선도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인허가 등을 할 수 있다.

## 제5장 선도지역 개발사업의 시행

제21조(선도지역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① 선도지역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3. 제40조에 따른 선도지역진흥재단
4. 선도지역 개발사업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 또는 그 시설을 설치하고 부지를 조성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선도지역을 개발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6. 선도지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선도지역 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정하여지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선도지역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도지역 개발사업의 일부를 선도지역에 입주할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 지정이나 제23조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토지의 매수 등이 지연되어 시행기간 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제21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4.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23조제1항에 따른 선도지역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5.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대체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1조를 준용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대체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선도지역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의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체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 규모와 내용, 사업 시행기간 및 재원 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제40조에 따른 선도지역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이라 한다)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사업시행자와 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4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① 시·도지사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 승인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되는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5(허가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제23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제24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

- 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 허가 또는 협의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신고
  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8.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9.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0.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2.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1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5.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 해당한다)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1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17.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 설립의 인가 및 신고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8.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과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20.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2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22.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2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24.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2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26.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과 같은 법 제39조의9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의 승인
- ② 시·도지사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의 다음 날에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제26조(선도지역 개발사업의 착수) ① 선도지역 개발사업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사업 착수 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사업 착수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착수기한 이내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 착수기한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 제27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도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와 용수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선도지역에 포함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제3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보는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및 도시

첨단산업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비용의 부담) ① 선도지역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도지역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항목과 그 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장 선도지역의 관리

제29조(선도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도지역 관리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 및 협의 절차를 생략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도지역 관리계획(이하 “선도지역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도지역 관리의 기본방향
2. 선도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선도지역 안의 토지의 용도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4. 용수, 에너지, 통신, 교통 및 유통 시설 등 선도지역의 기반시설의 설치
5. 녹지 및 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되어 고시된 선도지역 관리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관계 서류의 사본과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토지의 용도 구분 등) ①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른 토지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거구역: 선도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주거와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곳
2. 상업구역: 선도지역 안의 상업 및 업무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
3. 녹지구역: 선도지역 안의 쾌적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곳
4.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교육·연구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와 관련된 시설과 건축물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입주기관 사이의 정보 교류와 연구기기의 공동 활용 등을 통하여 교육과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

하여 필요한 곳

5. 산업시설구역: 선도지역 안의 기술주도형 강소기업 등의 생산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곳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구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도지역관리계획으로 세분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1조(입주승인) ①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입주승인을 받아야 한다. 입주승인 사항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은 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2조(부지의 양도제한 등) ① 입주기관이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건축물등을 양수·임차·사용대차 또는 전차(轉借)하거나 건축물등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 받으려는 자는 미리 제31조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건축물등의 양도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부지에 대한 양도가격: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가. 부지의 취득가격

나. 부지의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의 생산자물가 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2. 시설 또는 건축물에 대한 양도가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 평가한 금액

④ 제3항에 따른 취득가격·취득일 등 양도가격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경매 등에 따른 건축물등의 취득 등) 경매에 의하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입주기관으로부터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건축물등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31조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입주승인의 취소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입주승인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설 또는 건축물의 준공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입주기관이 제31조를 위반하여 입주승인 사항의 변경을 승인받지 아니한 경우
  5.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등을 양도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된 입주기관은 그 남은 업무의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의 수행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35조(건축물등의 양도명령)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된 입주기관에 대하여는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관이 소유하는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건축물등을 양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입주기관이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제36조(건축 허가 등의 제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서의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 허가 등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1조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입주승인 사항의 변경을 승인받지 아니한 자
  2. 제34조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된 입주기관
- 제37조(산업단지 등에 관한 특례) ① 선도지역이 지정되어 고시되면 그 내용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 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선도지역은 진흥재단이 관리한다. 다만, 진흥재단은 선도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지역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의 국가산업단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산업단지관리공단
- ③ 진흥재단은 선도지역의 관리를 위하여 업무처리규정을 작성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산업시설구역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지역을 관리하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재단과 선도지역의 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8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선도지역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9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선도지역의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선도지역 지정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2. 「주택법」 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4. 그 밖에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시·도지사는 선도지역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장 창조경제 선도지역진흥재단

제40조(설립) ① 선도지역 육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선도지역에 선도지역진흥재단을 설립한다.

② 진흥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재단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정관) ① 진흥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진흥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사업) ① 진흥재단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도지역의 개발 및 관리·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토지·건물, 연구개발 관련 시설 및 기자재에 관한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
  - 나. 용수·에너지·정보통신·교통 및 유통 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
  - 다. 학교와 병원 등 선도지역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한 교육·보건의료·문화·체육·복지 시설의 유치·설치 및 관리·운영
  - 라. 연구개발 성과물의 전시·홍보, 과학기술 인식 향상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유치
  - 마. 선도지역관리계획의 수립 지원 및 그 집행에 관한 업무
  - 바.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과 산업시설구역에서의 매각, 임대, 그 사후관리 및 입주에 관한 업무
  - 사. 선도지역 구조 고도화에 관한 업무
    - 아. 환경친화적 선도지역의 구축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업무
    - 자. 그 밖에 입주기업체·입주기관의 활동지원 등 선도지역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2. 선도지역의 연구개발과 그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선도지역 육성사업의 추진에 대한 지원
  - 나. 창조경제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 다. 대학·연구소 및 기업 간의 교류·협력 강화
  - 라. 기업 등에 대한 창업 및 경영 지원 서비스 제공
  - 마.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지원
  - 바. 연구개발 전문 인력과 사업화 지원 인력의 양성 및 교육
  - 사. 선도지역의 기술 및 시장정보 체계화
    - 아. 해외 고급 인력의 유치 지원
    - 자. 창조경제 기반 신제품 개발이나 신산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위탁하는 업무

- ② 선도지역의 특성화·차별화된 발전을 지원하고 선도지역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선도지역별로 지원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 ③ 진흥재단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 기관 또는 단체에 근무하는 연구원 및 전문가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연구원 또는 전문가 등을 파견한 소속 대학,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파견된 소속 연구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 신분상·급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제43조(임원) ① 진흥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②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임면(任免)한다.
  - ③ 이사와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④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⑥ 임원 가운데 결원이 있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거나 선임하되, 그 임기는 임명 또는 선임된 날부터 계산한다.

- 제44조(이사회) ① 진흥재단의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진흥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5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진흥재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출연 및 보조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2조에 따른 진흥재단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제47조(지도와 감독) 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진흥재단을 지도하고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및 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진흥재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48조(「민법」의 준용) 진흥재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

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장 보칙

제49조(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선도지역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5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진흥재단의 임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9장 벌칙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제32조제2항 및 제33조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입주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입주한 자 또는 승인받지 아니하고 입주승인사항을 변경한 자
2. 제45조를 위반하여 진흥재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

제5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제1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등을 양도한 자
2.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한 입주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흥재단의 설립준비)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진흥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진흥재단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진흥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 당시 진흥재단의 이사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2주 이내에 진흥재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은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창조경제 선도지역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제정안 제40조(설립)에서 선도지역진흥재단을 설립하여, 선도지역의 개발 및 관리·운영 사업, 선도지역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사업 등 제42조(사업)에 규정된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46조(출연 및 보조금)에서 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제42조에 규정된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원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된다<sup>27)</sup>.

한편 제정안 제9조(창조경제선도지역육성위원회)에서 선도지역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무원 및 민간으로 구성된 창조경제선도지역육성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회의참석 수당 및 자료검토비 등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단서 중 제3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 3. 미첨부 사유

제정안에서 규정한 각종 사업에 대한 구체적 계획 등을 추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현재의 시점에서 동 제정안 시행에 따른 소요비용은 기술적으로 추계가 곤란하다. 다만 동 제정안에서 규정한 사업과 유사한 사례인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을 정리하여 보여줌으로서 제정안 시행에 따른 소요비용을 대략적으로 추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27) 본 추계에서 제정안 제7조(선도지역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진흥재단에서 수행한다고 가정하며, 동 계획에는 제정안 제10조(창조경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기반 구축), 제13조(기술주도형 강소기업 지원), 제15조(글로벌 연구소 특화단지 조성), 제16조(창조경제 특성화 대학의 지정 등), 제17조(임주기업에 대한 세제 및 자금 지원 등), 제18조(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제20조(교육·문화예술·관광시설의 지원), 제26조(선도지역 개발사업의 착수) 및 제28조(비용의 부담)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 가. 동 제정안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비교

동 제정안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동 제정안과 기존 법률 비교표

	동 제정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선도지역을 조성함으로써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기술주도형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역지정	제5조(선도지역 및 기능지구의 지정)	제4조(특구의 지정 등)
계획수립	제7조(선도지역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6조(특구육성종합계획)
구역개발	제21조(선도지역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제15조(글로벌 연구소 특화단지 조성)	제6조의2(특구개발계획) 제18조(핵심분야별 전문 연구생산 집적지 육성)
위원회의 설치	제9조(창조경제선도지역육성위원회)	제7조(연구개발특구위원회)
사업화기반구축	제10조(창조경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기반 구축)	제8조(특구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기반 구축)
지원대상	제11조(기술주도형 중소기업의 지정 등)	제9조(첨단기술기업의 지정 등) 제9조의3(연구소기업의 설립 등)
재단설립	제40조(설립) (※선도지역진흥재단)	제46조(설립)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재단사업	제42조(사업) 선도지역의 개발 및 관리·운영과 관련된 사업 선도지역의 연구개발과 사업화 촉진 사업 그 밖의 위탁사업	제48조(사업) 특구의 개발 및 관리·운영과 관련된 사업 특구의 연구개발과 그 사업화 촉진 사업 특구와 관련된 투자유치사업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수익사업 그 밖의 위탁사업
자금조달 및 투자	없음	제64조(자금의 차입 등) 제65조(사업에 대한 출자 등) 제66조(채권의 발행 등)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동 제정안은 지원대상을 기술주도형 중소중소기업<sup>28)</sup>으로 정한 반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첨단기술기업<sup>29)</sup>, 연구소기업<sup>30)</sup> 등으로 지정하고 있다.

28) 「창조경제 선도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4. “기술주도형 중소기업”이란 선도지역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에 기반을 두고 기술집약도가 높은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2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3. “첨단기술기업”이란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그런데 제정안에서 정의한 “기술주도형 중소기업”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첨단기술기업의 성격을 비교한 결과 뚜렷한 차이점을 발견하기 힘든 점이 있다. 따라서 동 제정안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특구 이외의 지역에 별도의 선도지역을 지정하여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는 법률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추계에서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 중인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소요예산과 유사한 규모가 동 제정안의 시행에 따라 소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나. 연구개발특구사업 현황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특구사업”은 2005년 1월 제정된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추진하고 있으며, 동 법은 2012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등이 변경되었다. 법률 제정당시에는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개발사업이 추진되었으며, 2011년 1월 대구 및 광주를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고, 2012년 11월에는 부산을 추가로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다.

[표] 연구개발특구육성 사업 예산: 2010~2014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연구개발특구육성(R&D)	33,116	33,116	34,706	34,706	38,706
연구개발특구육성	10,602	13,502	29,046	52,909	16,839
추가연구개발특구육성(R&D)	-	10,000	14,000	27,000	30,000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투자지원	-	-	10,000	10,000	5,000
합 계	43,718	56,618	87,752	124,615	90,545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으로 추진 중인 4개 사업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아래의 표에서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R&D)은 대덕지구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추가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R&D)은 대덕지구 이외 부산, 대구 및 광주 지구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연구개발특구육성 및 연구개발특구기술사업화투자지원사업의 경우 4개 지구를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3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6. “연구소기업”이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특구 안에 설립된 기업으로서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된 기업을 말한다.

[표] 연구개발특구육성 사업의 주요내용: 2014년 기준

	연구개발특구육성(R&D)	연구개발특구육성	추가연구개발특구육성(R&D)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투자지원
주요 내용	연구성과사업화 벤처생태계 조성 글로벌 교류협력 및 특구네트워크 강화	글로벌 환경구축 특구진흥재단 운영지원	연구성과사업화 벤처생태계 조성	연구개발특구기술 사업화 투자지원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볼 때, 제정안에 따른 선도지역에 대한 예산지원액은 추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의 3분의1과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및 연구개발특구기술사업화 투자지원사업의 4분의1 정도의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으며, 1개 선도지역에 대한 지원액은 연평균 201억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표] 1개 선도지역에 대한 예산 지원규모 추정값: 2014년 기준

(단위: 백만원)

	연구개발특구육성(A)	추가연구개발특구육성(R&D)(B)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투자지원(C)	합 계
2013~2014년 평균예산	34,874	28,500	7,500	-
1개 선도지역 평균지원액	8,719(=A/4)	9,500(=B/3)	1,875(=C/4)	20,094

주: 동 금액은 국비지원액만 고려하여 추정한 값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4. 작성자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1과  
과            장      김    중    화  
예    산    분    석    관      김    태    완  
(02-788-4649, tanzania@assembly.go.kr)

창조경제 선도지역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서

이 병 석 의 원 대 표 발 의 ( 2 0 1 4 . 5 . 1 9 )

2014. 11.

미 래 창 조 과 학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정 창 모

## 1. 제안개요

### 1. 제안경위

- 가. 발 의 자 : 이병석의원 등 31인
- 나. 발의연월일 : 2014. 5. 19
- 다. 회부연월일 : 2014. 5. 20

### 2. 제안이유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개인의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를 활성화하여 경제성장률보다는 고용률을 지향하고,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을 추구해야 함.

새로운 경제체제인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개인, 1인 창조기업, 벤처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이 복합된 생태계를 기반으로 상생과 협력의 선순환 경제를 실천할 수 있는 창조경제 선도지역을 조성하여 그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선도지역을 지정하고 이를 육성·지원함에 필요한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기술주도형 강소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선도지역을 조성함으로써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기술주도형 강소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창조경제의 정의를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가치로 두고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과 융합하여 신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산업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 및 국가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경제체제로 함(안 제2조).
- 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창조경제선도지역육성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도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선도지역 지정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등 사유가 있으면 선도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마.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선도지역의 육성을 위하여 선도지역육성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창조경제선도지역육성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함(안 제7조).
- 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 사. 선도지역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속으로 창조경제선도지역육성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 아. 선도지역에서의 창조경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과 기술주도형 중소기업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둠(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 자. 선도지역의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동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특례, 글로벌 연구소 특화단지 조성, 창조경제 특성화 대학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둠(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 차. 창조경제 기반 구축 및 국제적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입주기관에 대한 세제 및 자금 지원, 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외국인 진료병원 등의 지정·운영, 교육·문화예술·관광시설 지원 등의 규정을 둠(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 카. 선도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지정취소 및 대체 지정, 실시계획의 승인, 허가 등의 의제, 개발사업의 착수,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비용의 부담에 관한 규정을 둠(제21조부터 제28조까지).
- 타. 선도지역의 관리를 위하여 선도지역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의 용도를 주거구역, 상업구역, 녹지구역,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산업시설구역으로 구분함(안 제29조 및 제30조).
- 파.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 입주하려는 자의 입주승인, 입주기관의 부지의 양도 제한, 경매 등에 따른 건축물 등의 취득, 건축 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둠(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 하. 선도지역 육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선도지역에 선도지역진흥재단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40조).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병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II. 검토의견

### 1

#### 제정안의 총괄적 검토

- 이 법안의 입법취지는 창조경제의 구현을 위하여 창조경제 선도지역을 지정하여 기술주도형 강소기업을 육성·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려는 것임.
- 현재 세계 경제는 그 부가가치의 창출이 노동과 자본에서 비롯되었던 실물 중심의 산업경제 체제를 거쳐 정보·지식 중심 경제로 전환됨에 따라 혁신적인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과 아이디어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는 창조경제(Creative Economy)로 경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음.
- 이에 우리 정부도 창조경제와 관련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창조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벤처·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미래 유망 신기술·신산업 발굴·육성을 통한 신시장 개척을 지향하고 있으며, 창조경제 문화 확산 및 지역으로의 창조경제 확산 등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창조경제’라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지역으로 확산하고자 창조경제 선도지역을 지정하고, 선도지역 내의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며, 기술주도형 강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동 제정안의 입법 취지는 시의적절하며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기존 법률 중에는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도록 특정 지역을 지정·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기존 법률이 다수 있는 바, 동 제정안이 규율하고자 하는 내용과 이들 기존 법률이 규율하고 있는 내용의 중복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예컨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연구소·기업의 집적(集積)·연계된 지역 등을 지정하여 산·학·연 연구개발 촉진,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록 규정하고 있고,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기초연구와 비즈니스를 융합·발전시키기 위하여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를 연계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지정하여 지원하고, 거점지구에 산업시설용지 조성 등과 같은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서는 정부로 하여금 정보통신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산업입지를 조성하고 정보통신산업 기반시설의 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인이 공동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우선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서는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및 소프트웨어진흥단지를 지정하여 소프트웨어기술의 진흥 및 소프트웨어산업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특히, 동 제정안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그 법체계 및 내용이 유사한데, 이들 법률을 목적, 지원대상, 특정 지역 지정요건 등으로 구분하여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음.

<제정안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 비교>

구 분	창조경제 선도지역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기존법)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기술주도형 강소기업 육성</li> <li>○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학·연 연구개발 촉진 및 상호 협력 활성화</li> <li>○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 지원</li> <li>○ 국가기술 혁신 및 국민경제 발전</li> </ul>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기술·ICT 관련 대학·연구기관·기술주도형 강소기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분야 관련 대학·연구기관·첨단기술기업</li> </ul>
특정 지역 지정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조경제 선도지역 주요 지정요건</li> <li>1.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연구소·기업의 집적(集積)·연계되어 있을 것</li> <li>2. 제1호의 기관이 산출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벤처기업의 창업을 하기에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 등 (상세한 지정요건은 대통령령에 위임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특구 주요 지정요건</li> <li>1.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연구소 및 기업이 집적(集積)·연계되어 있을 것</li> <li>2. 제1호의 기관이 산출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벤처기업의 창업을 하기에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 등 (상세한 지정요건은 대통령령에 위임함)</li> </ul>
사업화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조경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 기술주도형 강소기업 지정</li> <li>○ 글로벌 연구소 특화단지 조성</li> <li>○ 창조경제 특성화 대학의 지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구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 첨단기술기업 지정, 연구소기업 설립</li> <li>○ 핵심분야별 전문연구생산 집적지 조성</li> </ul>

창조경제 선도지역 조성  
기본계획 수립

구 분	창조경제 선도지역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기존법)
개발사업	○선도지역 개발사업 시행	○특구개발사업 시행
위원회 설치	○창조경제선도지역육성위원회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재단설립	○선도지역진흥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 제정안과 기존법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차이점을 보면, 제정법은 창조경제 선도지역 내의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 제고를 위해 ‘기술주도형 강소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기존법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첨단기술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임.
- 제정안 제2조제4호<sup>31)</sup>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술주도형 강소기업’은 선도지역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에 기반을 두고 기술집약도가 높은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이고,
- 기존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sup>32)</sup>에서 정의하고 있는 ‘첨단기술기업’은 특구(대덕지구, 부산지구, 광주지구, 대구지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임.
- 그러나 ‘기술주도형 강소기업’과 ‘첨단기술기업’이 첨단기술을 주도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상호 큰 차별성이 없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동 제정안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특구 이외의 지역에 별도의 창조경제 선도지역을 지정하고 그 선도지역 내의 첨단기술을 주도하는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는 특별법으로도 볼 수 있음.
- 따라서 지원하고자 하는 지역만 다를 뿐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방법이 유사하다는 측면을 고려해 볼 때, 기존 법령의 개정으로도 동 제정안의 입법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임.

31) 「창조경제 선도지역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제2조(정의)

4. “기술주도형 강소기업”이란 선도지역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에 기반을 두고 기술집약도가 높은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3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3. “첨단기술기업”이란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 참고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sup>33)</sup>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요건 기준을 보면, 특구로 지정하려는 지역에는 3개 이상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한 40개 이상의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이 있어야 하고, 또한 학사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이공계 학부를 둔 경우만 해당)이 3개 이상 있어야 하는 등 그 지정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음. 이에 창조경제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지정요건 기준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봄.
-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동 제정안에 대해서는 창조경제 선도지역을 지정하고 육성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 논의와 더불어 기존 법령의 개정으로도 동 제정안의 입법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입법정책적 논의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봄.

3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연구개발특구의 지정요건)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의 구체적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다.

1. 특구로 지정하려는 지역에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있을 것
- 가. 국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분원(分院)을 포함한다] 3개 이상을 포함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40개 이상
-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사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이공계 학부를 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대학"이라 한다) 3개 이상
2. 대학·연구소 및 기업 상호간 협의기구가 있을 것
3. 해당 지역 또는 인근에 대량생산을 위한 산업단지가 있을 것
4. 연구개발투자비 및 특허등록의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을 것
5. 교통·통신·기반시설 및 생활 여건 등에서 외국과의 교류 협력이 쉬울 것
6. 해당 지역에 있는 연구기관이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 2 제정안의 구성 체계

- 제정안은 9장 53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사항은 ‘창조경제’의 정의, ‘창조경제 선도지역’의 정의, 창조경제 선도지역 및 기능지구 지정, 창조경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기술주도형 강소기업 지원, 국제적 비즈니스 환경 조성, 선도지역의 관리, 창조경제 선도지역진흥재단 설립 및 사업 등이 있음.

### < 법안의 주요 내용 >

창조경제 선도지역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비 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선도지역을 조성함으로써 기술주도형 강소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함
제2조(정의)	○창조경제, 창조경제 선도지역, 기능지구, 기술주도형 강소기업 등을 정의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선도지역육성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을 제외한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함
제2장 창조경제 선도지역 및 기능지구의 지정 등 제5조(선도지역 및 기능지구의 지정)	○미래부 장관은 관할 시·도지사 의견청취, 관계부처 협의, 창조경제선도지역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창조경제 선도지역을 지정 ○선도지역의 개발연구 및 사업화 등을 수행하기 위해 기능지구 지정
제7조(창조경제선도지역육성종합계획 수립 등)	○미래부 장관은 5년마다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계획을 종합하여 수립
제9조(창조경제선도지역육성위원회 설치)	○선도지역의 지정·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미래부 소속으로 설치 ※ 위원회 구성 : 위원장(미래부 장관)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관계부처 차관 및 민간위원)
제3장 창조경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 제10조~제16조 연구성과 사업화 및 기술주도형 강소기업 지원 관련	○미래부 장관은 연구성과 사업화 기반 구축, 기술주도형 강소기업 지정·지원, 공동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규정, 글로벌 연구소 특화단지 조성, 창조경제 특성화 대학 지정·지원
제4장 창조경제 기반 구축 및 국제적 비즈니스 환경 조성 제17조~제20조 창조경제 선도지역 내 입주 지원 및 거주환경 조성	○국가·지자체는 입주기관에 대한 세제·자금 지원, 외국인 학교 설립·운영 지원, 외국인 진료병원 등의 지정·운영, 교육·문화예술·관광시설 지원
제5장 선도지역 개발사업의 시행 제21조~제28조 개발사업자 지정, 시·도지사가 실시계획 승인 및 각종 허가 등의 의제	○미래부 장관은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시·도지사가 실시계획 승인 ○승인된 실시계획에 대해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등 각종 허가·인가·지정 등의 의제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비용의 부담
제6장 선도지역의 관리 제29조~제39조 창조경제 선도지역의 관리	○미래부 장관은 관리계획 수립 및 입주승인 ○토지용도는 주거구역, 상업구역, 녹지구역,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산업시설구역으로 구분 ○선도지역을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

창조경제 선도지역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비 고
제7장 창조경제 선도지역진흥재단 제40조~제48조 창조경제 선도지역진흥재단 설립 및 사업, 임원	단지로 의제 ○선도지역 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선도지역에 선도지역진흥재단 설립 ※ 사업 : 선도지역 개발·관리·운영, 선도지역 내 연구개발 및 연구성과 사업화, 미래부장관·지자체장이 위탁하는 사업 ※ 임원 : 이사장(미래부장관 임명) 1명 포함 15명 이내 이사, 감사 1명 ○국가·지자체가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
제8장 보칙 제49조~제50조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9장 벌칙 제51조~제53조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부칙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진흥재단의 설립준비

### 가. '창조경제' 정의 (안 제2조제1호)

- 제정안 제2조제1호는 '창조경제'를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가치로 두고 과학 기술, 정보통신기술과 융합하여 신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산업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 및 국가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경제체제로 정의하고 있음.
- 창조경제의 개념과 관련하여서는 그 개념의 모호성과 관련한 지적이 계속 되어 왔는데<sup>34)</sup>, 동 제정안에 정의된 내용을 포함하여 매우 다양하게 정의 되고 있는 실정임.
- 참고로, 영국의 존 호킨스(John Howkins) 교수는 “The Creative Economy, 2001”에서 창조경제란 새로운 아이디어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유통업, 엔터테인먼트산업 등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고,
- UNCTAD(국제연합무역개발협력회)에서 발간한 '창조경제보고서 2010'에 따르면, 창조경제란 경제 성장과 발전을 가져다줄 수 있는 창조자산에 기반을 둔 진화하는 개념이라고 한 바 있음<sup>35)</sup>.
- 한편, 창조경제 추진 관련 각국의 사례를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지식기반의 창조산업을 창출하려는 노력은 하나의 공통된 현상으로 창조경제를 핵심 가치로 하는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임.
- 예컨대, 영국은 전략산업의 핵심 분야로 문화 영역을 강조하면서 창조기업과 클러스터 집중 육성 및 스타트업 지원, 고부가 콘텐츠의 해외 진출 확장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는 창업을 중시하는 가운데 창업미국(Startup America), 특허개혁, 청정에너지, 무선 이니셔티브, K-12 교육 등 5개 이니셔티브<sup>36)</sup>를 제시하면서 정부 운용방식 개혁과 창의성을 활용

34) 창조경제의 개념 모호성과 다의성과 관련하여서는, 2013년도 국정감사(국정감사결과보고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4.7.17), 창조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회의(창조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2014.3.3) 등에서 논의된 바 있음.

35) UNCTAD(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국제연합무역개발협력회)가 발간한 '창조경제보고서 2010'에 따르면, The “creative economy” is an evolving concept based on creative assets potentially generating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Creative Economy Report 2010, UNCTAD).

36) 미국 혁신전략(2011) 5개 이니셔티브

한 경제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핀란드의 경우도 창업을 중시하면서 창업·벤처 지원 시스템 구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 관련 추진 전략 및 주요 과제를 보면, ‘창조경제 생태계 구축’,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 ‘창조경제 기반 강화 및 창조문화 확산’이라는 세 가지 추진전략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음.

<창조경제 추진 전략 및 주요 과제>

추진 전략	주요 과제
① 창조경제 생태계 구축	① 벤처·중소기업 성장기반 확립 (현장 수요 과제 개선, 금융지원 강화, 재도전·재창업 환경 개선 등) ② 벤처·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R&D 지원 강화, 동반성장 환경 조성, 인력채용 지원) ③ 기술사업화 촉진 및 지식재산 보호체계 강화 ④ 글로벌 진출 강화
②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	① 융합성과 창출 및 주력·전통산업 고도화 ② SW·콘텐츠 및 인터넷 신산업 육성 ③ 미래 유망 신기술·신산업 발굴·육성 ④ 신시장 창출을 위한 규제 개선
③ 창조경제 기반 강화 및 창조문화 확산	①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 ② 도전정신·기업가정신 고취 ③ 아이디어 제안·공유·실현 체계 구축 ④ 공공정보 개방 확대 및 이용 활성화 ⑤ 지역으로의 창조경제 확산 (창조경제혁신센터 <sup>37)</sup> 구축·운영)

-창업 미국(Startup America): 전국에 기업가정신을 고취시키고, 광범위한 경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성장 신생기업을 육성하는 등 2개의 10억 달러 이니셔티브로 신생기업에 투자하고 규제환경을 개선하여 대학 실험실의 획기적 연구 이전을 촉진

-특허 개혁 아젠다 : 혁신적 제품의 시장 진출 지연과 고임금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특허 처리기간을 35개월에서 20개월로 단축하고, 우수 특허가 12개월 내 시장에 출시될 수 있는 모델을 제시(three-track model)

-청정에너지 : 청정에너지 기술개발 가속화를 위해 2035년까지 국가전력 80%를 청정에너지원으로 제공하는 청정에너지 기준을 제안하고, 2012년 예산안에 에너지첨단연구기획국(ARPA-E)의 기금을 확대 반영

-무선 이니셔티브 : 5년 이내 국민 98%가 초고속 무선망을 이용하게 하고, 전국에 정보교환이 가능한 공공안전망을 구축

-K-12 교육 개선 : 파괴적 교수법 혁신과 초중고교육 개선을 위해 2012년 교육선진연구과제원(ARPA-ED)을 설립하고 향후 10년간 10만명 규모의 STEM 교사를 양성

37)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운영 사업은 창조경제를 지역으로 확산·실현하기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2015년도 상반기까지 17개 광

- 이와 같이 창조경제는 강조하는 추진 전략에 따라 정책 영역을 달리하여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동 제정안이 정의하고 있는 ‘창조경제’는 과학 기술, 정보통신기술과 융합하여 신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만들어 국가 경쟁력을 제고 하려는 것으로 동 제정안에서 정의하고자 하는 ‘창조경제’의 개념에 ‘창조문화 확산’이라는 영역까지를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 따라서 제정안의 ‘창조경제’ 개념 정의는 현재 정부가 창조경제 활성화라는 기치 아래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및 사업보다도 그 적용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창조경제’라는 용어 사용에 있어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창조경제’라는 용어의 개념이 다양하게 정의되어질 수 있고, 계속 진화하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으며, 또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영역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면, 해당 용어를 동 제정안에서 정의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참고로, ‘지식기반경제<sup>38)</sup>’라는 용어는 기존 법률에서 그 개념을 정의하지 않은 채 「산업발전법」 제1조 및 제3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제2항 등에서 해당 용어를 사용한 입법례가 있음<sup>39)</sup>.
-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창조경제의 정의와 관련하여서는 동

역시·도에 설치하여, 지역의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와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혁신과 창조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전진 기지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사업임.

38) ‘지식기반경제’란 199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용어로, 지식의 창출에 바탕을 둔 경제 또는 경제구조를 말하는데, 국제기구나 국가에 따라 개념에 대한 정의가 약간씩 다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지식기반경제를 ‘직접적으로 지식과 정보를 생산·배포하는 산업에 기반을 둔 경제’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는 ‘산업 전반에 걸쳐 지식을 생산·분배·이용함으로써 경제를 발전시키고, 부를 창출하며, 고용을 확대하는 원동력이 되는 경제’로 각각 정의하고 있음.(출처 : 두산백과사전)

39) 「산업발전법」 제1조 ( 목적 ) 이 법은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대응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 산업발전시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촉진(이하 생략)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조 ( 목적 ) 이 법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엔지니어링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산업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창의적인 지식기반사회의 실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저탄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 (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의 촉진 ) ② 정부는 정보통신·나노·생명공학 기술 등의 융합을 촉진하고 녹색기술의 지식재산권화를 통하여 저탄소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신속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제정안에서 창조경제의 개념을 좀 더 확대하여 정의하는 방안과 ‘지식기반 경제’와 같이 전혀 정의하지 않은 채로 ‘창조경제’를 제정안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봄.

#### 나. 기능지구 명칭 관련 (안 제2조제3호)

- 제정안 제2조제3호<sup>40)</sup>의 ‘기능지구’는 창조경제 선도지역 안에서도 특별히 첨단기술개발연구 및 사업화 등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기능지구’로 지정한 지역을 의미함.
- 그러나 ‘기능지구’라는 용어는 기존법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sup>41)</sup>에서 ‘기능지구’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의 지역으로서 거점지구와 연계하여 응용연구, 개발연구 및 사업화 등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을 의미하고 있음.
- 따라서 ‘기능지구’라는 동일한 용어가 각기 다른 법률에서 각각 다른 의미로 사용되게 된다면, 국민의 법률생활에 있어 불필요한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바, 제정안의 ‘기능지구’는 일례로 ‘연구 및 사업지구’와 같이 다른 용어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 다. 창업지원 등 규정 보완 관련 (안 제5조제2항, 제42조제1항)

- 동 제정안은 개인, 1인 창조기업, 벤처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이 상생과 협력의 선순환 경제를 실천할 수 있는 창조경제 선도지역을 조성하는 것을 그 핵심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업과 관련한 지원 내용은 기존의 다른 입법례에 비추어 보면 매우 미흡하게 규정되어 있는 실정임.
- 예를 들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있어서 창업과 관련

40) 「창조경제 선도지역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제2조(정의)

3. “**기능지구**”란 창조경제 선도지역(이하 “선도지역”이라 한다) 안에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 개발연구 및 사업화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4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3. “**기능지구**”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지역으로서 거점지구와 연계하여 응용연구, 개발연구 및 사업화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한 조항을 살펴보면, 첫째, 연구개발특구 지정과 관련한 특구 지정요건으로 벤처기업이 창업하기에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제4조제2항제2호), 둘째, 특구육성종합계획에 첨단기술기업의 창업 촉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제6조제2항제4호), 셋째, 신기술창업 전문회사에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제9조의3제1항제3호), 넷째,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이 최대 6년간 연구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하도록 휴직하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9조의5제1항), 다섯째, 연구개발특구 내의 대학에 창업과정 개설 및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제10조제2항제2호), 여섯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투자하는 투자조합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조합원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17조제2호), 일곱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사업에 교수·연구원 등에 대한 창업 지원(제48조제1항제2호라목)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반면에, 동 제정안에서 창업과 관련한 조항을 살펴보면, 첫째, 선도지역 지정요건으로 벤처기업이 창업하기에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제5조제2항제2호), 둘째, 선도지역진흥재단 사업의 하나로 기업 창업 및 경영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제42조제1항제2호라목)는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을 뿐임.
- 따라서 동 제정안 경우, 창업지원과 관련한 사항으로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휴직 및 겸직 허용 등 창업 지원과 관련한 조항을 보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봄.
- 또한, 개인, 1인 창조기업, 벤처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이 상생하고 협력하는 창조경제 선도지역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 안의 대·중소기업은 물론 산·학·연 간 연계 협력이 필요할 것임. 이를 위해 창조경제 선도지역의 지역 혁신주체들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공동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협의체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보는 바, 이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 신설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봄.
- 참고로, 유사 입법례를 보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sup>42)</sup>의 경우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공동발전방안을 협의하기 위하

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음.

## 라. 국·공유재산 특례 관련 (안 제17조)

- 제정안 제17조제3항<sup>43)</sup>은 선도지역 내의 기능지구에 입주하는 국내외 투자기업 및 연구기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국유재산 임대료를,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제정안과 같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도지역 내의 기능지구에 입주하는 국내외 투자기업 및 연구기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둔다면, 공유재산의 임대료가 감면되어 상당한 규모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봄.
- 한편, 국유재산특례의 신설과 관련하여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5조<sup>44)</sup>는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국유재산특례의 목적’, ‘적용대상’,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 ‘사용허가 또는 대부의 기간’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동 제정안에는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 사용허가 기간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고 있지 않은 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상 특례 신설 기준에 부합되는지에 대해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 더욱이, 국유재산특례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국유재산의 적절한 관리와 국가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별표]에

4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 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공동발전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회의 업무·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3) 「창조경제 선도지역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제17조(입주기관에 대한 세제 및 자금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능지구에 입주하는 국내외 투자기업 및 연구기관(이하 “투자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투자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투자기관에 임대하는 부지의 조성,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기관에 대하여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4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5조(국유재산특례의 요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국유재산특례의 목적, 적용대상,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 사용허가 또는 대부의 기간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규정된 법률에 따라서만 국유재산특례가 가능하도록 제한<sup>45)</sup>하고 있으며, “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sup>46)</sup> 관련 [별표]의 개정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

- 따라서 개별법상의 국유재산특례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함께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동 제정안은 이병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75호, 2014. 5. 19)의 소관 상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감안하여 심의하여야 할 것인 바, 동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담 당 자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입법조사관 신 종 숙
연 락 처	02-788-2638 (FAX 02-788-3360)

45)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별표]에 따른 특례 규정을 보면,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 등 171개 법률의 198개 특례 규정이 열거되어 있음.

4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국유재산특례는 「국유재산법」 및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 『창조경제 선도지역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APGC 설문조사

ID  
□□

안녕하십니까?

지난 2014년 4월, 이병석 국회의원은 「창조경제 선도지역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선도지역을 조성함으로써 세계적인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기술주도형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포항을 창조경제 선도지역으로 지정 신청”하기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활성화”를 앞당길 거점지구 및 선도 모델 정립을 위해 경상북도로부터 ‘창조경제 선도지역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포스텍을 중심으로 한 포항이 대한민국의 창조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최적지라는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APGC(Association of POSTECH Grown Companies, 포스텍 동문기업 협의체)로부터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고견이 <창조경제 선도지역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자료 및 응답내용은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철저히 보장됩니다.

□ 문 의 : 대구경북연구원 박현정 책임연구원 ☎ 053) 770-5074 e-Mail : phj221@gmail.com

※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체크(V) 하거나 직접 서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 현황

1. 기업명		
2. 현 소재지		
3. 기업 설립일		
4. 기업 업종	제조업( ), 서비스업( )	IT( ), BT( ), NT( ), ET( ), CT( ), ST( ), 기타( )*
5. 연구개발 전담부서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비해당( )	
6. 상근 직원 수	총 인력 : ( )명	연구개발 인력 : ( )명
7. 매출액/2014년	( ) 백만 원	
8. 기업 소유형태	① 소유 ② 임대 ③ 소유+임대 ④ 기타 ( )	
9. 벤처기업/이노비즈기업	벤처기업 : 인증( ), 비해당( )	이노비즈기업 : 인증( ), 비해당( )

\* 미래유망 신기술(6T) 분류 :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기술), NT(나노기술), ET(환경·에너지기술), CT(문화기술), ST(우주항공기술)

## APGC 활동 및 제휴·협력 현황

10. APGC 가입 시기는 언제입니까? \_\_\_\_\_년 \_\_\_\_월

11. APGC 가입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포스텍 동문과 네트워크 ② 포스텍 교수님 멘토링 ③ 포스텍 창업지원 시스템 공유  
④ 포스텍 석박사 인력 활용 ⑤ 포스텍 연구장비 활용 ⑥ 기타 ( )

12. 기업 창업 시 주된 펀딩 소스는 어디였습니까?

- ① VC(Venture Capital) ② 중앙정부 ③ 지방정부 ④ 금융권 ⑤ 기타 ( )

13. 기업 창업 시 창업지는 어디입니까?

- ① 포항(포스텍 내) ② 포항 외 (※ 도시명 : \_\_\_\_\_ )

↓↓↓

<추가 질문> 만약 창업지와 현 소재지가 다르다면, 현 위치로 이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VC ② 인력확보 ③ 연구기반 ④ 산업기반 ⑤ 정주여건 ⑥ 기타 ( )

14. 기업 창업 초기 가장 애로사항은 무엇이였습니까?

- ① 부지확보(건물, 사업장 등) ② 투자자금 ③ 우수인력 확보 ④ 핵심기술 실증 및 평가  
⑤ 각종 규제 ⑥ 사업화 모델 개발 ⑦ 마케팅 활로 개척 ⑧ 기타 ( )

15. 최근에 수행을 완료했거나, 현재 수행 중인 연구개발 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 파트너 별 기술사업화 건수”를 적어 주십시오.

연구개발 파트너	단독	대학		정부 및 국가기관	민간 연구기관	중소 벤처기업	대기업	해외 외국계기업	기타
		포스텍	기타						
기술사업화 (건수)	( )	( )	( )	( )	( )	( )	( )	( )	( )



『창조경제 선도지역 조성』 관련 문항

※ 『특별법』이 통과되면 포항을 “창조경제 선도지역”으로 포스텍을 “기능지구”로 지정한 후, “기술주도형 강소기업 지원” 등 포항을 대한민국 창조도시 선도지역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창조경제 선도지역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술주도형 강소기업을 활성화하고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기술주도형 강소기업 지원을 위한 창의적 인재양성 2. 기술주도형 강소기업 사업모델의 개발과 확산 3. 기술주도형 강소기업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활용 지원 4. 기술주도형 강소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 시장개척 지원 5. 기술주도형 강소기업 발굴을 위한 이종(異種) 분야 간 교류의 촉진 6. 기술주도형 강소기업을 발굴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 및 용자 7. 기술주도형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금 조성 등 자금지원 확대 8. 그 밖의 기술주도형 강소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술주도형 강소기업 지원 사업의 범위·대상·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특별법』 전체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8. 포항이 창조경제 선도지역으로 지정된다면, 다음 각 항목별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요 정책 과제	전혀 안됨	안됨	보통	약간 도움	매우 도움
(1) 강소형 기술기업 중심 벤처창업 활성화	①	②	③	④	⑤
(2) 중소기업 기술혁신 및 중견기업 육성	①	②	③	④	⑤
(3) 대기업 기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방안 마련	①	②	③	④	⑤
(4) 창조경제 지원을 위한 융합형 창의인재양성	①	②	③	④	⑤
(5) 창조경제 생태계 구축을 통한 선순환 경제 실현	①	②	③	④	⑤
(6) 기타 ( )	①	②	③	④	⑤

19. 포항이 실리콘밸리처럼 창업 생태계가 활성화 되어, 국내 창조경제 선도지역으로 발전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 선택 : \_\_ , \_\_ )

- ① 인재 양성
- ② 혁신적 기업가 정신 함양
- ③ 자금지원 강화 (예 : 엔젤펀드 및 VC 등)
- ④ 창업환경 인프라 (예 : 네트워킹 지원, 액셀러레이터, 인큐베이터 등)
- ⑤ 창업지원 서비스 (예 : 법률, 회계, 경영, 컨설팅 등)
- ⑥ 정주여건 개선
- ⑦ 기타 ( )



**23. 특별법 통과 후, 포항이 “창조경제 선도지역”으로 조성된다면 귀사의 『지사(혹은, 연구소)』를 선도지역으로 이전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1년 이내 : \_\_ , 3년 이내 : \_\_ , 5년 이내 : \_\_ , 기타 : \_\_ 년 이내 )  
 ② 없다 (※ 구체적인 이유는? \_\_\_\_\_ )

<b>&lt;추가 질문①&gt; 이전 의사가 있다면, 동반 유치되기를 희망하는 지사 혹은 연구소들은 무엇입니까?</b>
☞ 업체명 :

<b>&lt;추가 질문②&gt; 이전 의사가 없다면,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면 이전을 고려할 수 있으십니까?</b>
☞ 직접 기술 :

**24. 귀사의 경영 상 가장 애로사항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1순위 : \_\_ , 2순위 : \_\_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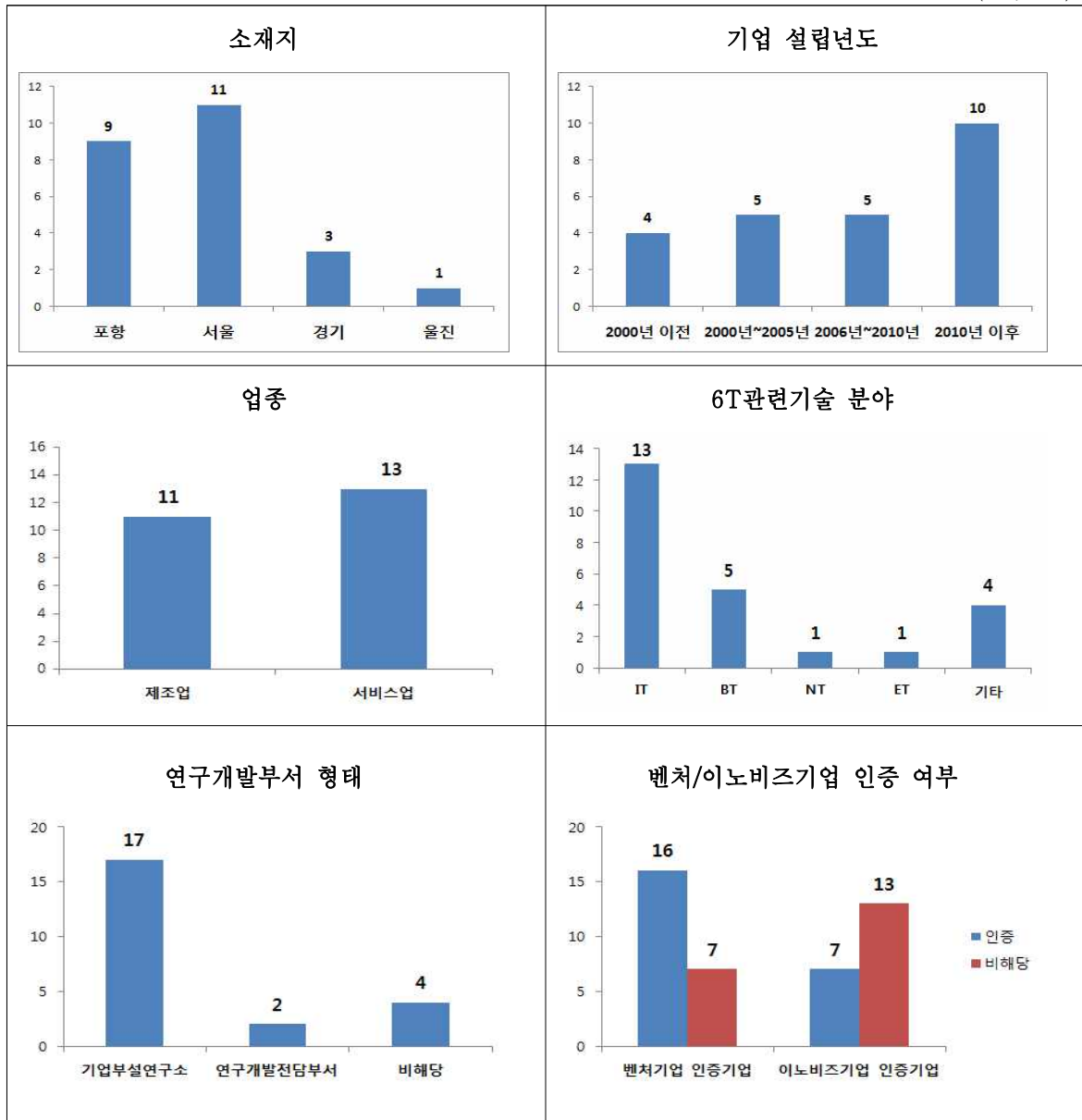
- ① 추가적인 신기술개발에 어려움을 느낀다.  
 ②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하기가 어렵다.  
 ③ 새로운 국내 판로개척이 어렵다.  
 ④ 해외시장 개척이 어렵다.  
 ⑤ 필요인력의 확보 및 유지관리가 어렵다.  
 ⑥ 자금조달·운용 등 자금관리가 어렵다.  
 ⑦ 기술유출·디자인도용·상표도용 등을 막기가 어렵다.  
 ⑧ 인터넷 활용, 전자상거래 등 경영정보화가 어렵다.  
 ⑨ 업계 내의 과당경쟁 및 덤핑으로 어렵다.  
 ⑩ 거래기업의 휴·폐업으로 자금회수가 어렵다.  
 ⑪ 법률, 회계, 세무 관련 지식이 부족해 어렵다.  
 ⑫ 사업장을 설립(또는 증설)할 곳이 마땅치 않아 어렵다.  
 ⑬ 조직관리가 어렵다.  
 ⑭ 낮은 수익률 및 마진율로 어려움을 겪는다.  
 ⑮ 환율 변동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  
 ⑯ 특허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⑰ 기타 ( \_\_\_\_\_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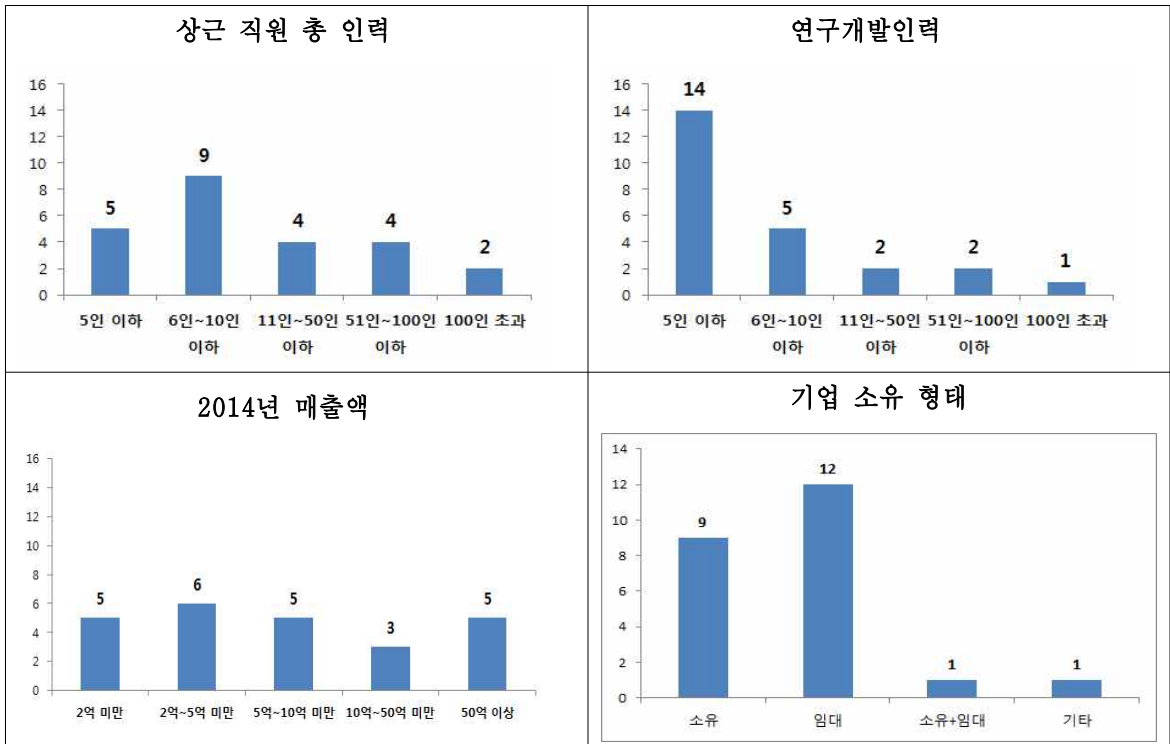
25. 귀사의 운영 상 애로사항 해결과 창조경제 선도지역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정책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APGC 설문조사 결과

### ■ APGC 일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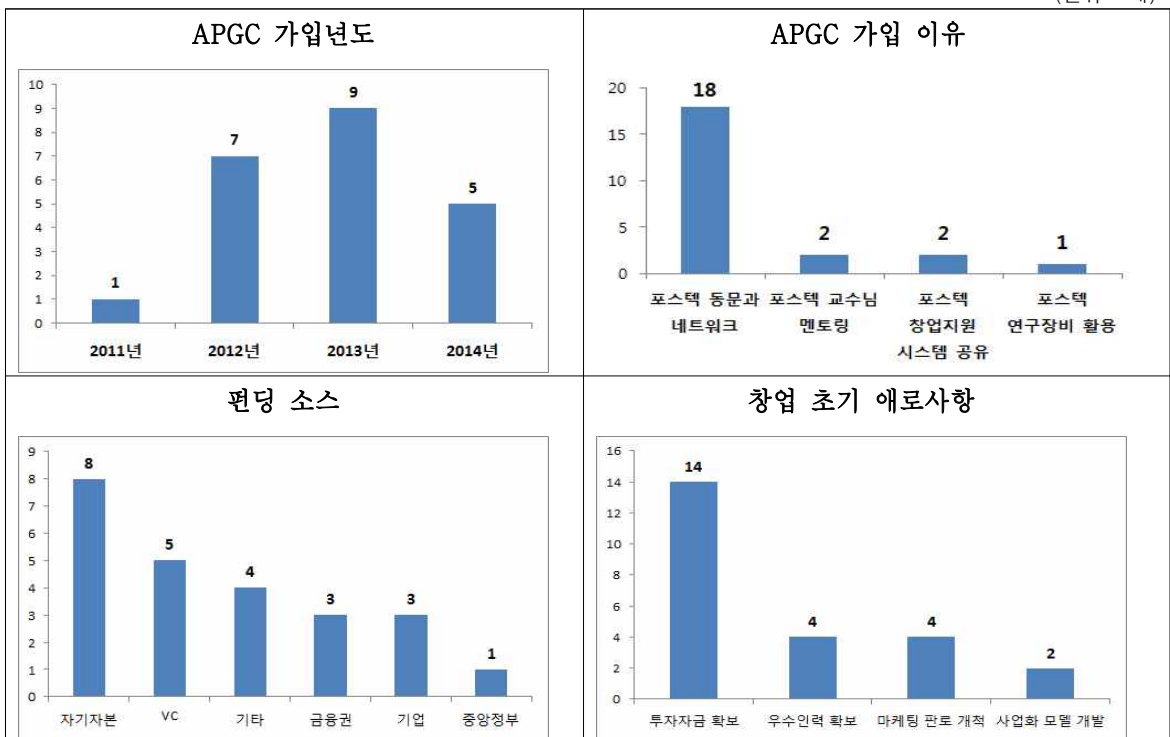
(단위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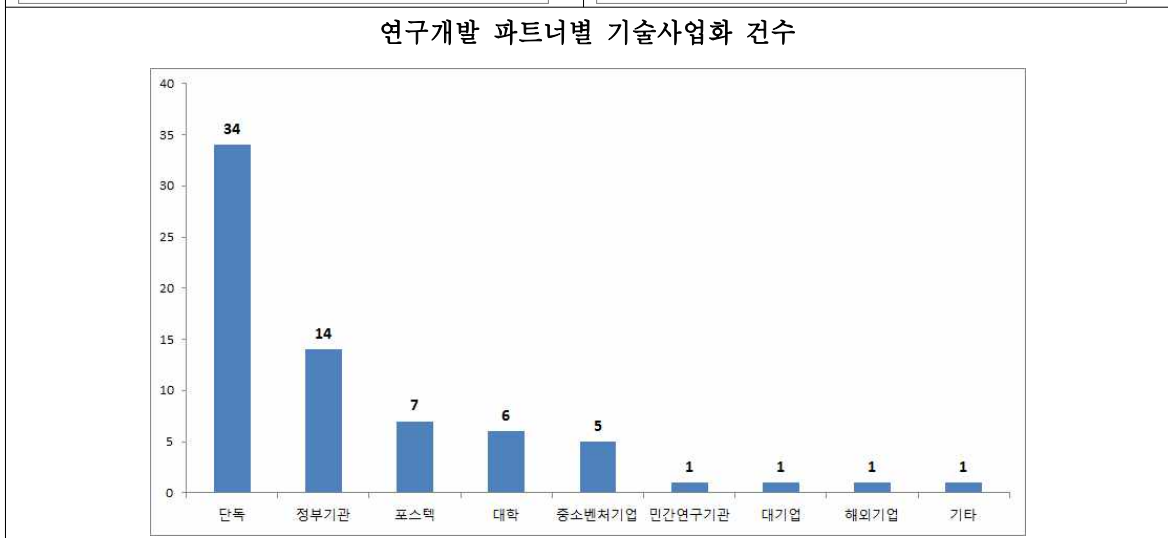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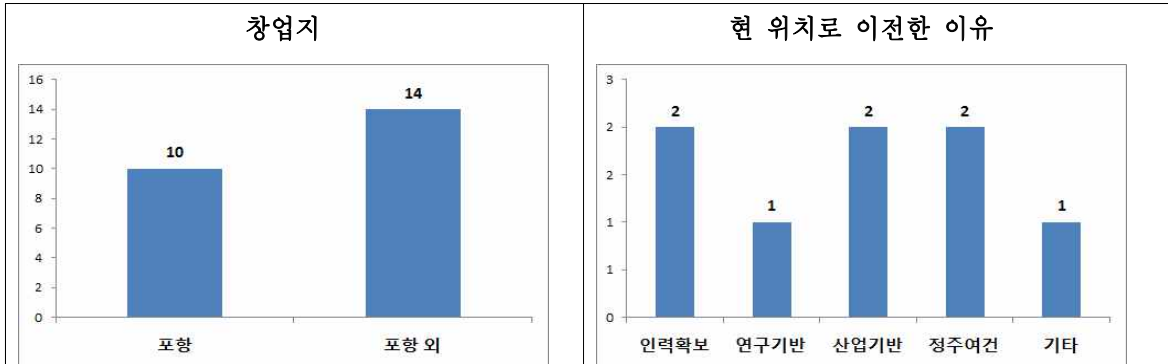


■ APGC활동 및 제휴·협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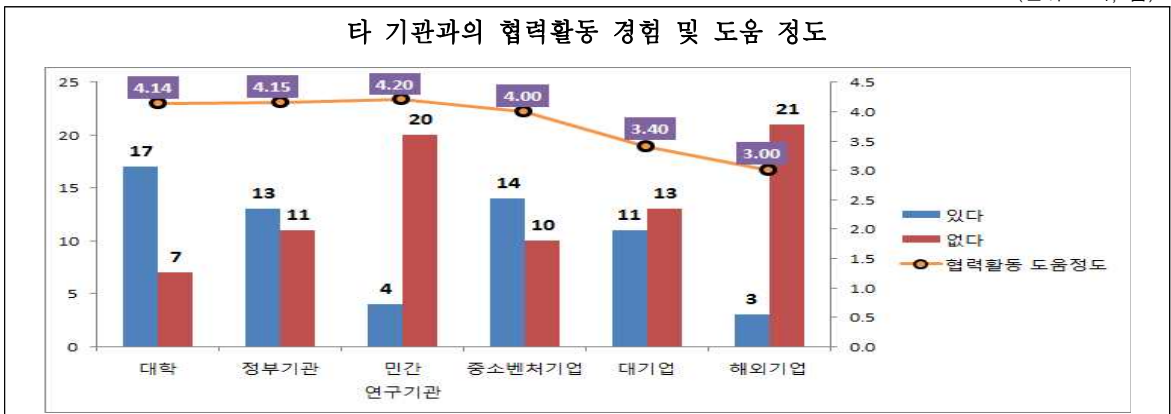
(단위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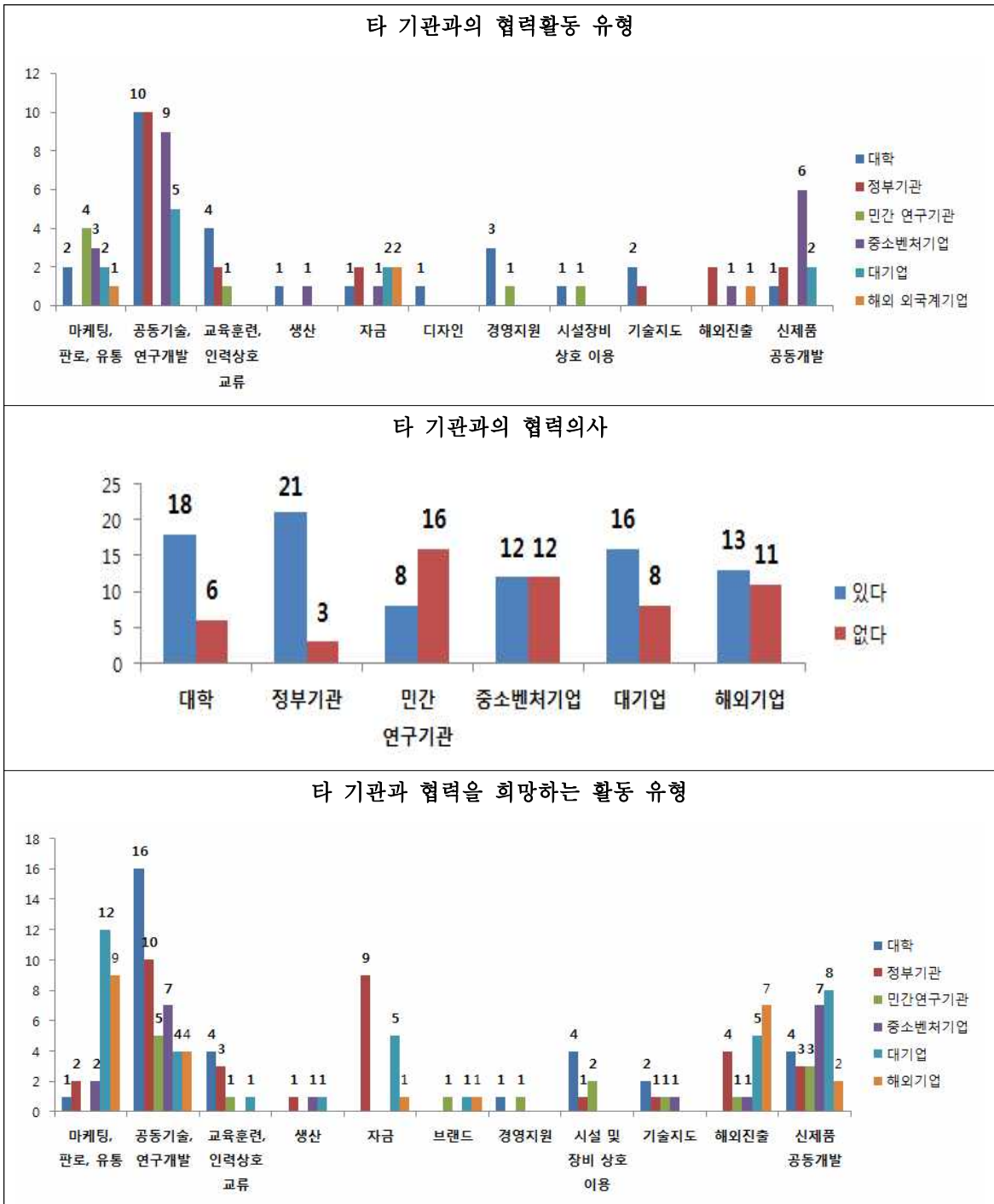


창조경제 선도지역 조성  
기본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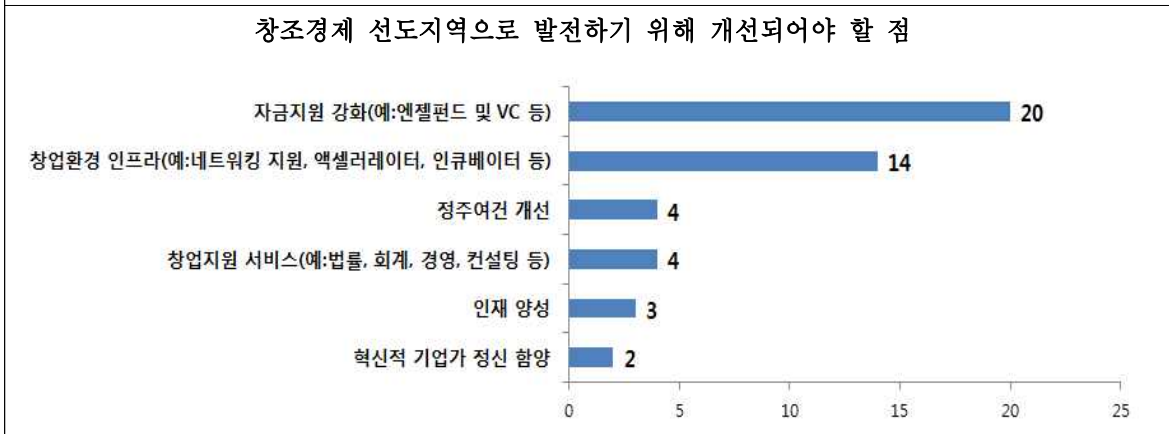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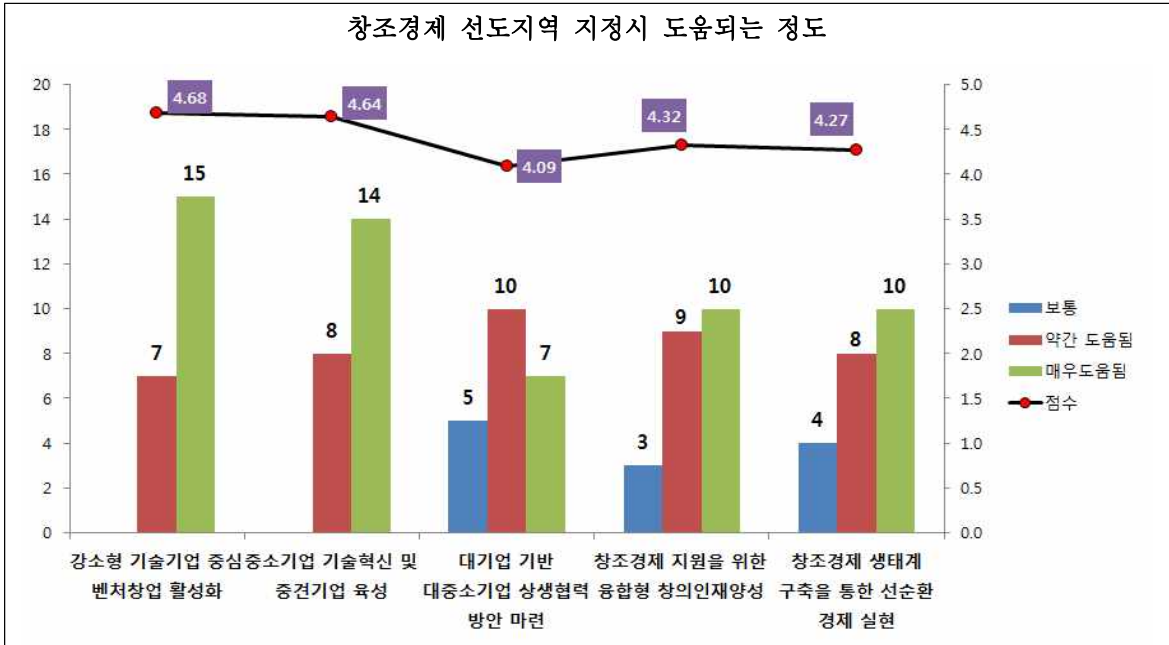
(단위 : 개,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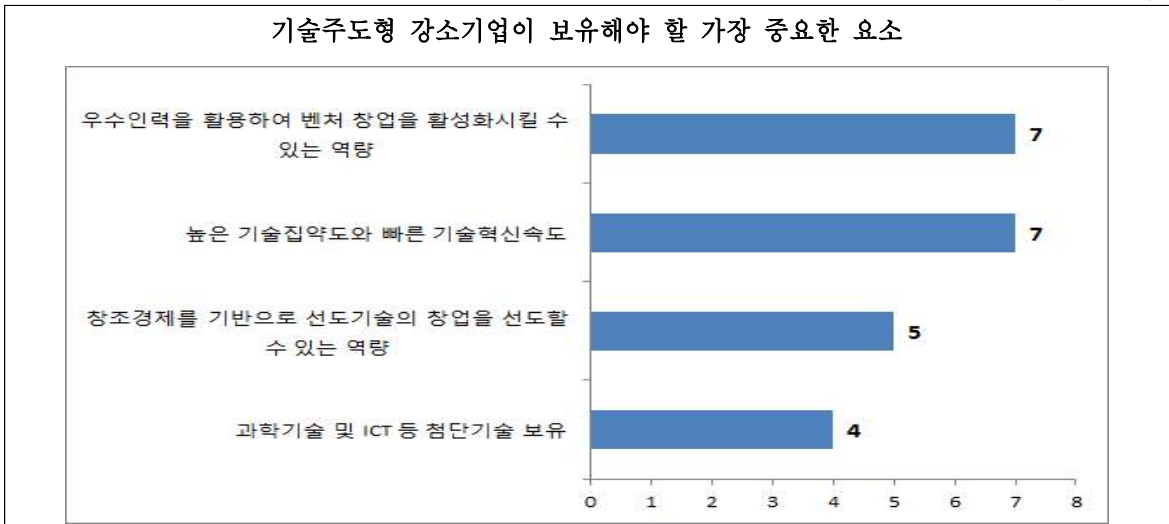


■ 창조경제 선도지역 조성 관련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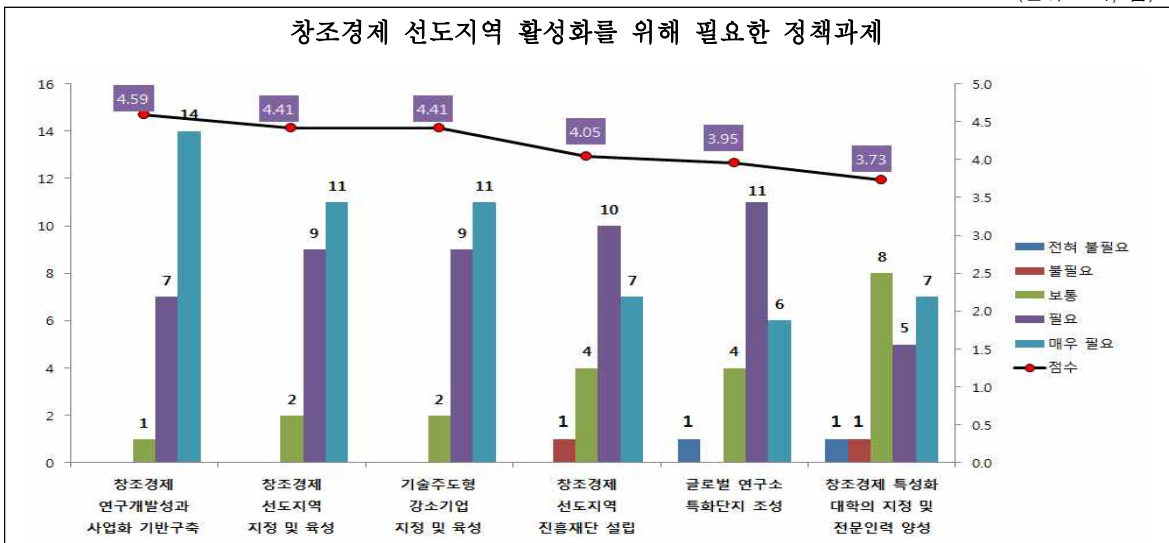
(단위 : 개,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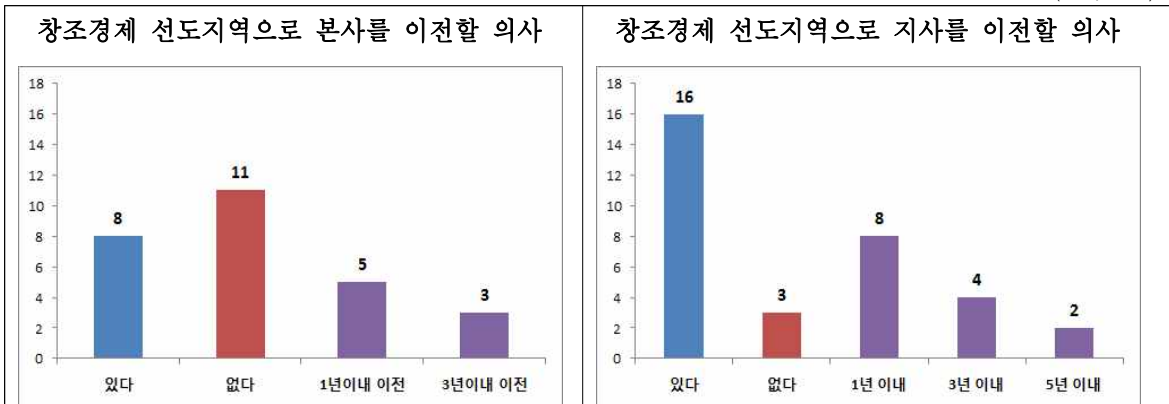
(단위 : 개)



(단위 : 개, 점)



(단위 : 개)



■ 경영상의 애로사항

(단위 : 개)

